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 술 보 증 기 금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2026.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 1

1. 세 입 ····· 1
2. 세 출 ····· 2
3. 기 금 ····· 3
4. 총수입·총지출 ····· 4
5. 예비비: 해당없음 ····· 4
6. 재무제표 ····· 5

Ⅱ. 검토의견 ····· 13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사업 분석 ····· 13

(1) 정책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정책금융사업 구조의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15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 27

[일반회계] ····· 27

1. 세입결산 ····· 27
2. 세출결산 ····· 29
3. 재무제표 ····· 3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6

1. 세입결산 ····· 46
2. 세출결산 ····· 48
3. 재무제표 ····· 5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55

1. 세입결산 ····· 55
2. 세출결산 ····· 55
3. 재무제표 ····· 57

Ⅱ. 검토의견 ····· 61

[일반회계] ····· 61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61
   (1) 협약지연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업 실집행 부진사업 개선 필요 ····· 65
   (2) R&D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67
   (3) R&D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73
   (4) R&D 성과지표 측정대상 사업 범위 확대 필요 ····· 75
2. 과징금(56-565) ····· 77
   (1) 징수결정액을 고려한 과징금 세입예산 증액 계상 및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78
3.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85
   (1) 추경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 86
4.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1232-301) ····· 93
   (1)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과다예측 지양 및 출연금의 객관적 추계체계 마련 필요 ····· 94
5.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101
   (1) 사업결과물 유지의무 기한과 활용 점검기한 일치 필요 ····· 102

6.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111-312) ····· 106
(1) 지역 제조데이터 플랫폼과 '제조AI24' 간 연계·통합 방안 마련 필요 ···· 107
(2)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회계연도 내 사업 운영 필요 ····· 109
(3) 당해연도 예산투입과 연동되지 않은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 111
7.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 114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의 법적근거 미흡 ····· 115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R&D)(2136-501) ····· 121
(1) 자체수입이 없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재검토 필요 ····· 122
9.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129
(1) 수출지원기반활용 보조사업 보고 및 정산의 적시성 제고 필요 ····· 129
10.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136
(1) 종합적인 사업효과 파악이 가능한 적정 성과지표 발굴 필요 ····· 137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834-305) ····· 143
(1)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1357 콜센터 힐링캠프 예산 집행 문제 ····· 144
(2) 자산취득비 집행의 연도말 편중 지양 ····· 149
1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835-301) ····· 152
(1) 운영비 비중 절감 및 사업전달체계 개편 필요 ····· 153
(2) 공급기업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58
13.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160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속적 정책패키지 연계강화 필요 ··· 160
14.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166
(1) 수도권 중심 운영사 편중 완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균형발전 지원 필요 ····· 167
(2)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 활성화를 통한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 171
15.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5134-301) ····· 175
(1) 부산 스타트업파크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1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4154-301) ····· 181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집행부진 개선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82
2.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 187
(1) 실집행부진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 18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 199
1. 총 괄 ····· 199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202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204
4. 재무제표 ····· 207

Ⅱ. 검토의견 ····· 212
1. 기타민간이자수입(75-74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212
(1) 융자사업 대출채권의 회수율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213
2.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 218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수요예측 오차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219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223
(1) 추경편성한 스케일업 펀드 집행부진 ····· 224
(2) 한국벤처투자 관리보수 체계의 적정성 재검토 및 배당정책 개선 필요 ··· 229
4. 전북연수원 건립(5451-309), 전남연수원 건립(5451-311) ····· 233
(1) 착공 지연사업에 대한 차년도 집행분 선금지급 문제 ····· 234

기술보증기금

Ⅰ. 기술보증기금 결산 개관 ····· 241

1. 총 괄 ····· 241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244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246
4. 재무제표 ····· 249

Ⅱ. 검토의견 ····· 256

1. 민간출연금(59-594) ····· 256
   (1) 반복되는 계획 대비 실적 괴리 해소를 위한 수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57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262
   (1)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및 채권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262
3.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267
   (1) 보증사고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268
4.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2441-303) ····· 274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필요 ····· 27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 285

1. 총 괄 ····· 285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288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289
4. 재무제표 ····· 292

Ⅱ. 검토의견 ····· 302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302

(1)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수요 예측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 303

(2) 특례보증 집행시기 미반영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대규모 불용 ····· 307

2.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4131-316) ····· 313

(1) 공통: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 314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318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 319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325

(1)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보조금 교부관리 개선 필요 ····· 326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332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간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333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 부진 ····· 339

6.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 ····· 344

(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질적 성과 개선 필요 ····· 345

7. 소상공인 지원(융자)(4151-301) ····· 353

(1) 소상공인지원(융자) 공통: 연례적 자체변경 지양 및 소요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 354

(2) 상생성장지원자금: 면밀한 사업설계 및 수요예측 필요 ····· 358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365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366

3. 중소기업 현황 ····· 368
4. 창업기업 현황 ····· 371
5. 벤처기업 현황 ····· 372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 373
7. 소상공인 현황 ····· 374
8. 전통시장 현황 ····· 376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6.6월 기준) ····· 377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6년 6월 기준) ····· 381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 38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 (C-A)
일반회계	249,821	178,788	176,039	61	2,688	△73,78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960	22,573	22,337	-	236	1,377
합 계	270,781	201,361	198,376	61	2,924	△72,405

주: 2024년부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총괄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세입 처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2,707억 8,100만원이며, 2,013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1,983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고, 61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29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변동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불용액
		전년 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일반회계	6,171,533	1,111	3,018,353	1,344 △1,344	-	9,190,997	9,185,063	437	5,49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14,809	-	-	20,846 △20,846	-	414,809	413,982	-	82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35,711	-	-	-	-	35,711	35,711	-	-
합 계	6,622,053	1,111	3,018,353	22,190 △22,190	-	9,641,517	9,634,756	437	6,324

주: 총계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약 9조 6,415억 1,700만원이었고, 이 중 약 9조 6,34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4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약 63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3. 기　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지출액	2025년			증감	
		당초 (A)	수정 (B)	지출액 (C)	(C-B)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309,555	11,559,453	12,600,621	12,715,699	115,078	0.9
기술보증기금	4,288,086	3,308,026	3,378,026	4,291,482	913,456	27.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403,501	7,085,996	11,385,812	11,582,986	197,174	1.7
합　계	24,001,142	21,953,475	27,364,459	28,590,167	1,225,708	4.5

주: 총계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며, 각 기금별 지출액 규모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약 12조 7,156억 9,900만원, 기술보증기금 약 4조 2,914억 8,2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약 11조 5,829억 8,600만원 등 총 28조 5,901억 6,700만원임.

4.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 기준 결산액은 9조 8,624억원으로 전년대비 974억원(1.0%) 증가하였고,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20조 9,006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9,531억원(39.8%) 증가하였음.

총수입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A)	2025 예산	2025 결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20,904	249,821	176,039	△44,865	△2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524	20,960	22,337	△8,187	△26.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912,260	5,486,742	5,743,581	831,321	1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601,314	3,663,313	3,920,470	△680,844	△14.8
합 계	9,765,002	9,420,836	9,862,427	97,425	1.0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A)	2025 예산	2025 결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027,738	3,572,446	3,566,512	538,774	1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1,870	414,809	413,982	22,112	5.6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73,077	35,711	35,711	△37,366	△51.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496,195	7,270,234	7,245,145	748,950	1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958,596	9,675,438	9,639,195	4,680,599	94.4
합 계	14,947,476	20,968,638	20,900,545	5,953,069	39.8

5. 예비비: 해당없음

6.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유동자산		**473,933**		**483,1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26		1,694	
2. 금융상품	30,308		44,806	
3. 투자증권	35,135		34,621	
4. 정부출자금	71,589		63,589	
5. 대여금	325,559		330,225	
6. 미수채권	1,368		1,710	
7. 기타금융자산	7,148		6,546	
Ⅱ. 유·무형자산		**15,078**		**14,264**
1. 일반유형자산	14,894		14,083	
2. 무형자산	184		181	
Ⅲ.기타자산		**85**		**158**
1. 재고자산	10		11	
2. 선급비용	9		6	
3. 선급금/단기	-		-	
4. 선급법인세	66		129	
5. 부가세대급금	-		-	
6. 기타의기타자산/단기	-		12	
자산계		**489,096**		**497,613**
부채				
Ⅰ.차입부채		**465,624**		**457,036**
1.차입금	220,053		209,414	
2.기타차입부채	245,571		247,622	
Ⅱ.충당부채		**16,395**		**13,733**
1. 보증충당부채	15,600		12,993	
2. 기타충당부채	795		740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5		2024	
Ⅲ.기타부채		2,170		1,939
1. 선수수익	2,166		1,935	
2. 선수금	4		4	
부채계		484,189		472,708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6,210		126,21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28,816)		(107,578)
Ⅲ.순자산조정		7,513		6,274
순자산계		4,907		24,905
부채와순자산계		489,096		497,613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총자산은 48조 9,096억원으로, 전기 49조 7,613억원 대비 8,517억원(1.7%)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무제표(요약)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자 산	부 채	비 고
□ 총 계(A)	48,909,665	49,761,316	
① 일반회계	612,001	625,746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790	44,127	
③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4,000	214,000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3,179,442	14,593,570	
⑤ 기술보증기금	4,980,322	4,937,437	
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9,857,110	29,346,436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37,330**	**(16,558)**	**120,772**	**96,980**	**(22,595)**	**74,385**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3,757	(36)	3,721	2,605	(23)	2,582
2. 중소기업행정지원	17	-	17	17	-	16
3. 기술금융지원	18,862	(4,107)	14,755	14,958	(3,949)	11,009
4. 창업환경조성	21,626	(4,548)	17,078	21,530	(5,353)	16,177
5. 벤처기업활성화지원	338	(47)	291	112	(23)	89
6.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6,123	(4,507)	11,616	12,480	(4,943)	7,536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7,475	(21)	17,454	15,359	(36)	15,324
8. 지역중소기업육성	1,967	(185)	1,782	1,954	(195)	1,759
9.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53,642	(3,058)	50,584	23,311	(8,032)	15,279
10. 동반성장지원	389	-	389	357	-	357
11. 중소기업육성지원	1,396	-	1,396	1,364	-	1,364
12. 중소기업인력지원	1,738	(49)	1,689	2,933	(40)	2,893
Ⅱ.관리운영비			**3,470**			**3,294**
1.인건비			2,202			2,107
2.경비			1,268			1,187
(1)출연사업비			72			51
(2)기타이전비용			-			-
(3)운영비			756			718
(4)감가상각비			182			190
⑸기타국가운영비용			258			228
Ⅲ.비배분비용			**5,620**			**5,188**
1.기타이전비용			3			6
2.이자비용			5,366			5,117
3.자산평가손실			1			9
4.기타국가운영비용			250			56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Ⅳ.비배분수익			**5,169**			**5,308**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652			268
2.이자수익			1,176			1,557
3.배당수익			47			52
4.자산처분이익			1,578			1,245
5.자산평가이익			-			-
6.기타국가운영수익			1,716			2,186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24,693**			**77,558**
Ⅵ.비교환수익 등			**9,900**			**8,857**
1.부담금수익			7,628			7,357
2.제재금수익			17			25
3.기타이전수익			2,254			1,47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14,793**			**68,702**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14조 6,42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3조 1,62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1조 4,793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6,210**	**(101,516)**	**6,364**	**31,057**
1. 보고금액	126,210	(101,516)	6,364	31,057
Ⅱ.재정운영결과		**68,702**		**68,702**
Ⅲ.재원의조달및이전		**62,640**		**62,640**
1. 재원의조달		65,956		65,956
(1) 국고수입		65,721		65,721
(2) 제재금수익		15		15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7		57
(5) 기타재원조달		163		163
2. 재원의이전		3,316		3,316
(1) 국고이전지출		2,514		2,514
(2) 무상이전지출		802		802
Ⅳ.조정항목			**(90)**	**(90)**
1. 투자증권평가손익			(12)	(12)
2. 파생상품평가손익			(47)	(47)
3. 기타순자산의증감			(30)	(30)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26,210**	**(107,578)**	**6,274**	**24,906**
Ⅵ.당기 기초순자산	**126,210**	**(107,578)**	**6,274**	**24,906**
1. 보고금액	126,210	(107,578)	6,274	24,906
Ⅶ.재정운영결과		**114,794**		**114,794**
Ⅷ.재원의조달및이전		**93,556**		**93,556**
1. 재원의조달		96,583		96,583
(1) 국고수입		96,348		96,348
(2) 국고이전수입		-		-
(3) 사회보험수익		-		-
(4) 부담금수익		-		-
(5) 제재금수익		19		19
(6)기타이전수익		216		216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2. 재원의이전		3,027		3,027
(1) 국고이전지출		1,984		1,984
(2) 세출예산지출액		-		-
(3) 기타이전비용		1,043		1,043
Ⅸ.조정항목			**1,239**	**1,239**
1. 투자증권평가손익			1,209	1,209
2. 자산재평가이익			(25)	(25)
3. 보험수리적손익			-	-
4. 기타순자산의증감			55	55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26,210**	**(128,816)**	**7,513**	**4,907**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4,907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2조 4,906억원 대비 1조 9,999억원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제재금수입·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9조 3,556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11조 4,794억원,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027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15,775,253**	**-**
1. 국가채권현재액	14,802,172	-
2. 국유재산현재액	950,358	-
3. 물품현재액	22,723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48,909,665**	**48,418,917**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33,134,411**	**48,418,917**
1. 보고대상기관차이(A)	34,837,432	26,312,643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1,774	22,005,323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906,014)	108,631
4. 대상차이(D)	201,219	(7,680)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자산 : 34,837,432,194,666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9,857,110,129,493원
  2) 기술보증기금 : 4,980,322,065,173원
- 부채 : 26,312,642,745,270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4,469,841,625,511원
  2) 기술보증기금 : 1,842,801,119,759원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자산 : 1,774,448,110원
  1) 미수재재금수익 : 1,774,448,110원
- 부채 : 22,005,323,000,000원
  1) 정부내장기예수금 : 21,399,323,000,000원
  2)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 : 606,000,000,000원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1,906,013,695,785원
  1) 미수이자수익 : 7,564,938,880원
  2) 기타의미수금 : 18,247,618,360원
  3)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 : (-)1,654,550,237원
  4)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 (-)859,658,748원
  5)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 (-)11,269,837,847원
  6) 단기일반융자금대손충당금 : (-)9,705,380,673원
  7)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36,663,018,060원
  8) 기타의선급비용 : 33,276,645원
  9) 구상채권대손충당금 : (-)34,023,067,660원
  10) 장기일반융자금대손충당금 : (-)545,549,677,697원
  11)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300,096,198,310원
  12) 유형자산 : 7,956,095,452원
  13) 장기기타의선급비용 : 5,764,110원
- 부채 : 108,631,165,417원
  1) 기타의미지급금 : 9,840,000원
  2) 선수금 : 378,198,170원
  3) 미지급이자비용 : 99,527,017,288원
  4) 기타의미지급비용 : 410,394,880원
  5) 기타의선수수익 : 85497,445원
  6) 퇴직급여충당부채 : 7,686,717,824원
  7) 보증충당부채 : 533,499,810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201,219,342,582원
  1) 한국은행국가예금 : 11,345,310원
  2) 국고예금 : 2,033,797원
  3) 기타의기타금융자산 : 1,100,726,055원
  4) 건설중인토지 : 197,715,943,066원
  5) 건설중인건물 : 2,332,804,904원
  6) 건설중인입목 : 44,000,000원
  7) 건설중인사무용기기 : 58,980원
  8)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 17,250원
- 부채 : (-)7,680,281,074원
  1) 부가세예수금 : 1,082,880원
  2) 기타예수금 : 5,353,870원
  3) 퇴직연금운용자산 : (-) 7,686,717,824원

⑤ 기타차이
- 원단위 조정 8원

Ⅱ. 검토의견

[총 론]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사업 분석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다수 운영 중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개 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사업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차보전사업은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 1개 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사업 등 총 2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운영 중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자사업 계획현액은 총 9조 4,492억 6,000만원이고, 이 중 9조 4,134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58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진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35,800	1,835,800	-	1,835,800	1,835,800	-	-	1,605,800
	창업기반지원	1,335,800	1,535,800	-	1,535,800	1,535,800	-	-	1,305,800
	개발기술사업화	300,000	300,000	-	300,000	300,000		-	30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82,450	482,450	-	482,450	482,450	-	-	316,378
	내수기업수출기업화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	-	100,000
	수출기업글로벌화	182,450	282,450	-	282,450	282,450	-	-	216,378
	신성장기반자금	1,311,110	1,311,110	-	1,311,110	1,311,110	-	-	1,081,110
	혁신성장지원	690,750	690,750	-	690,750	690,750	-	-	510,750
	제조현장스마트화	466,610	466,610	-	466,610	466,610	-	-	416,610
	Net-Zero 유망기업	93,750	93,750	-	93,750	93,750	-	-	93,750
	스케일업금융	60,000	60,000	-	60,000	60,000	-	-	6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00	550,000	-	550,000	550,000	-	-	250,000
	재도약지원자금	750,100	750,100	-	750,100	750,100	-	-	612,500
	사업전환자금	350,000	350,000	-	350,000	350,000	-	-	312,500
	재창업자금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	-	100,000
	구조개선전용자금	200,100	200,100	-	200,100	200,100	-	-	200,100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98,500	198,500	-	198,500	198,500	-	-	198,500
	매출채권팩토링*	59,000	59,000	-	59,000	59,000	-	-	59,000
	동반성장네트워크론*	139,500	139,500	-	139,500	139,500	-	-	139,500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100,000	-	100,000	100,000	-	-	-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4,220,000	-	4,220,000	4,184,200	-	35,800	3,362,000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00	1,797,000	-	1,797,000	1,771,764	-	25,236	1,220,000
	특별경영안정자금	1,600,000	1,665,500	-	1,665,500	1,654,965	-	10,535	1,350,000
	성장기반자금	850,000	753,100	-	753,100	753,076	-	24	792,000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00	4,400	-	4,400	4,395	-	5	-
계					9,447,760	9,413,456		35,804	

*내역사업 예산 중 민간융자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이차보전사업의 계획현액은 총 637억 4,600만원이고, 이 중 571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6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이차보전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진기금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75,588	75,588	-	75,588	68,615	-	6,973	73,783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58,496	58,496		58,496	51,879	-	6,617	56,484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10,940	825,646	-	825,646	825,646	-	-	168,128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이차보전*	-	5,250	-	5,250	5,250	-	-	9,625
계					63,746	57,129		6,617	

* 폐업 및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내역사업 예산 중 이차보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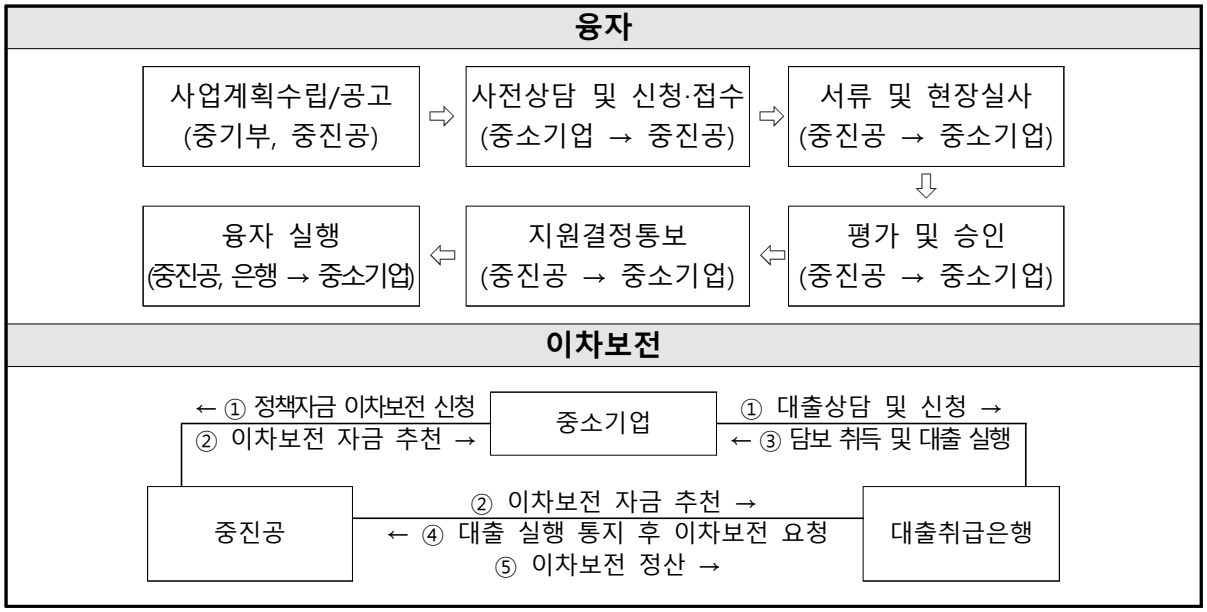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정책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정책금융사업 구조의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창업, 성장, 혁신, 경영안정 등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융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1] 이와 별도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차보전사업도 시행되고 있음.

1) 박재성, 「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반영한 금융지원 성과 분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12, p.2.

중진기금 정책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추진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이차보전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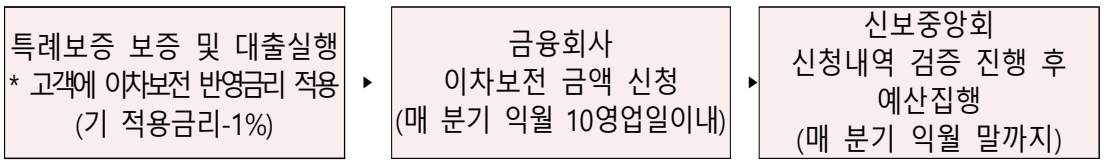
○ **(지원방식)** 이차보전지원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해당 특례보증* 및 대출실행과 동시에 금리 감면(-1%p)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 **(정산방식)** 이차보전사업은 **"분기별 이자 사후정산방식"**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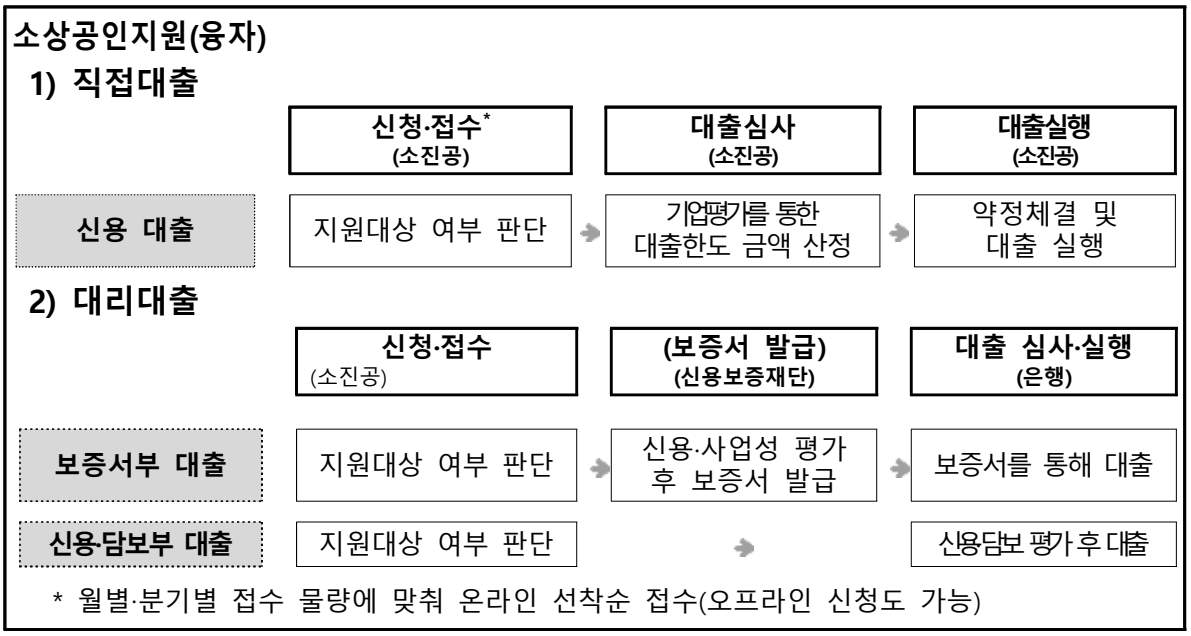
* 분기별 정산시점에 직전 분기까지 발생한 차주별 이차보전금 리스트를 은행이 계산·취합하여 중앙회에 청구하고, 중앙회가 이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

< 지원 절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기금 정책자금 융자 사업 추진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사업은 융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 7개 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사업 등 총 8개 세부사업 아래 19개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차보전사업 역시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 1개 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사업 등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즉, 유사한 정책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여러 세부사업과 그 하위 내역사업으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정책수요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금융사업의 세분화된 운영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목적, 자금용도, 지원한도, 금리, 우대조건 및 신청절차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의 차이와 지원요건을 일일이 비교·검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임.

중진기금 융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기준금리 + 0.5%p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제조현장 스마트화)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기준금리	10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Net-Zero 유망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준금리+ 0.5%p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중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기업당 60~120억원	(신규) 5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융자)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기준금리+ 0.5%p	10억 (3년간 15억)	운전:5년(2)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 1년) 중소기업	기준금리	5억원	운전:5년(2)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중소기업	기준금리	3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기업,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기준금리 △0.3%p	3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10년(4) 운전:6년(3)
밸류체인 안정화자금(융자) (매출채권 팩토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포함)	기준금리+0.5%p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30~90일
밸류체인 안정화자금(융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 중소기업	기준금리 △0.3%p	15억원	30~365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기준금리 △0.3%p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개발기술사업화)	특허·실용신안, 정부 R&D 개발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기준금리	30억원 (운전 5억원)	시설:10년(4) 운전:5년(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기금 융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일반자금(운전))	업력 무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7천만원	5년(2년)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청년고용연계자금(운전))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직접)신용취약자금(운전))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3천만원	5년(2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직접)재도전특별자금(운전))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7천만원	5년(2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1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 직접)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고정 2.0%	1억원	5년(2년)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운전))	장애인기업	고정 2.0%	1억원	7년(2년)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환대출(운전))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	고정 4.5%	5천만원	10년 (비거치 또는 2년)
성장기반자금 (대리)소공인특화자금(운전, 시설))	업력 무관 소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시설 8년(3년) 운전 5년(2년)
성장기반자금 (직접)혁신성장촉진자금(운전, 시설))	(혁신형)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등 (일반형) 스마트기술 도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등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혁신형) 시설 10억원 운전 2억원 (일반형)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시설 8년(3년) 운전 5년(2년)
성장기반자금 (직접)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운전, 시설))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5억원 (투자금 5배 이내)	8년(3년)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
상생성장지원자금 (직접상생성장지원자금(운전, 시설))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시설 8년(3년) 운전 5년(2년)
	TOPS 프로그램 수혜기업		시설 10억원 운전 2억원	

* '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1분기) 2.98%, (2분기) 2.79%, (3분기) 2.68%, (4분기) 2.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기금 이차보전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이차보전 율
신성장 기반자금(융자)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시설 도입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운용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3년 만기 일시상환	3%p: 중점 지원분야,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기업 2%p: 그 외
신성장 기반자금(융자) (제조현장 스마트화)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신성장 기반자금(융자) (Net-Zero 유망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 글로벌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개발기술 사업화)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따라, 기선정된 과제 중 당초 협약금액 대비 계속·종료비가 감액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약 변경 후 '감액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발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R&D 지원 전문기관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	최대 5.5%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이차보전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주채무(대출)실행 건
이차보전율	연 1% (고정)
지원기간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최대 7년
지원금액	주채무잔액 × 1% × 지원기간(일)/365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정책금융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는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브로커, 컨설팅 업체, 알선업자 등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 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2)]

아울러 사업별로 신청요건, 지원방식 및 절차가 상이하여 동일한 기업이 여러 사업을 검토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세분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정책 홍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간 중복과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이 정책목적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자금 정보를 획득하고 적합한 자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올해부터 기업

2) 홍석희, "“수수료 8% 뜯깁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판 키운 건 '복잡한 절차'였다", 헤럴드경제, 2025.12.2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45208)

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의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서비스'[3]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아울러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추천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길잡이 서비스'를 금년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목적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정비하는 등 정책자금 체계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의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4]

중소벤처기업부 지출효율화(안)

구 분		AS-IS		TO-BE
보조사업	▶	■ 관성적 추진, 위기대응 사업 多	▶	■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
기술개발 (R&D)	▶	■ 뿌려주기식 소액사업 위주	▶	■ 사업화 중심의 R&BD 활성화 및 민관협력을 통한 R&PD 촉진
정책금융	▶	■ 다수의 세부사업 운영 ■ 직접융자 중심 지원	▶	■ 사업 통폐합으로 정책 이해도 ↑ ■ 이차보전으로 민간 금융 유도
정보시스템	▶	■ 개별 사업마다 운영	▶	■ 시스템 통폐합 및 통합 유지보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기업이 작성한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적합자금을 탐색하여, 기업별 맞춤형 자금을 추천·안내해 주는 서비스

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2일 개최한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융자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이차보전 확대를 통하여 민간 금융 활용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출효율화를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을 완화하고 정책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지출효율화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249,821	178,788	△71,033	
재산수입	57,255	53,545	△3,710	
- 토지대여료	-	0.2	0.2	지방청 행정재산(토지) 대여에 따른 수입
- 건물대여료	343	427	84	지방청 행정재산(건물) 대여에 따른 수입
- 기타관유물대여료	6	2	△4	관사 대여에 따른 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56,906	53,117	△3,789	출연·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경상이전수입	192,470	125,186	△67,284	
- 과태료	600	281	△319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징계부과금	-	0.7	0.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 과징금	370	3,259	2,889	출연·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과징금
- 가산금	-	5	5	과징금·과태료 등의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91,500	121,641	△69,859	출연·보조금 사업의 정산·환수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	46	△19	
- 기타잡수입	65	46	△19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 기타영업외잡수익	-	0.05	0.05	기타 영업의 차액
관유물매각대	31	9	△22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1	9	△22	노후자산 및 불용물품 매각 수요 감소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498억 2,100만원으로 1,787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세입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1,216억 4,1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531억 1,700만원) 등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249,821**	**178,788**	**176,039**	**61**	**2,688**	-
토지대여료	-	0.2	0.2	-	-	-
건물대여료	343	427	427	-	-	-
기타관유물대여료	6	2	2	-	-	-
기타재산이자수입[5]	56,906	53,117	53,117	-	-	-
과태료	600	281	203	-	7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등 78
징계부과금	-	0.7	-	-	0.7	징계부가금 0.7
과징금	370	3,259	1,568	-	1,691	보조, 출연사업 제재부가금 등 1,691
가산금	-	5	0.6	-	5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 가산금 5
기타경상이전수입[6]	191,500	120,641	120,667	61	913	출연·보조사업 미환수금 등 913
기타잡수입	65	46	46	-	-	-
기타영업외잡수익	-	0.05	0.05	-	-	-
고정자산매각대	31	9	9	-	-	-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98억 2,100만원으로 1,787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에 해당하는 1,760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5%에 해당하는 26억 8,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주요 미수납 과목으로는 과징금(16억 9,1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9억 1,300만원), 과태료(7,800만원) 등이 있으며 주로 납부자의 경영상황 악화 및 징수유예에 따른 분할 납부,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음.

5)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6)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약 6조 1,715억 5,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약 9조 1,909억 9,700만원이며, 이 중 약 9조 1,850억 6,300만원이 지출되고 약 4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54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6,171,553**	**1,111**	**3,018,333**	**1,344 △1,344**	**-**	**9,190,997**	**9,185,063**	**437**	**5,497**
<무역및투자유치(113)>	**230,990**	**-**	**99,800**	**105 △105**	**-**	**330,790**	**330,625**	**-**	**165**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3100)	**230,990**	**-**	**99,800**	**105 △105**	**-**	**330,790**	**330,625**	**-**	**165**
수출지원기반활용 (3131-301)	127,560	-	89,800	-	-	217,360	217,349	-	11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3133-301)	82,058	-	10,000	105 △105	-	92,058	91,904	-	154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ODA) (3133-305)	19,792	-	-	-	-	19,792	19,792	-	-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 촉진(3133-307)	1,580	-	-	-	-	1,580	1,580	-	-
<산업·중소기업일반(116)>	**3,151,489**	**-**	**2,633,686**	**1,129 △1,129**	**-**	**5,785,175**	**5,780,571**	**29**	**4,575**
□중소기업행정지원(7200)	**166,624**	**-**	**-**	**1,129 △1,129**	**-**	**166,624**	**162,020**	**29**	**4,575**
인건비(2개 사업) (7201-110, 7209-130)	114,003	-	-	-	-	114,003	110,970	-	3,033
기본경비(87개 사업) (7211-25개, 7224-59개, 7,225-3개)	30,386	-	-	854 △854	-	30,386	29,559	29	78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7232-503)	11,156	-	-	267 △267	-	11,156	10,909	-	247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7233-301)	4,076	-	-	8 △8	-	4,076	3,781	-	295
관사구입및임차(7241-304)	710	-	-	-		710	665	-	45
청사시설관리(7241-306)	6,293	-	-			6,293	6,136	-	157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2,984,865**	**-**	**2,633,686**	**-**	**-**	**5,618,551**	**5,618,551**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전출(8208)	1,457,941	-	335,000	-	-	1,792,941	1,792,941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전출(8208)	1,526,924	-	2,298,686	-	-	3,825,610	3,825,610	-	-
<창업및벤처(118)>	**813,538**	**-**	**54,000**	**-**	**-**	**867,538**	**867,535**	**-**	**3**
□창업환경조성(5100)	**780,842**	**-**	**54,000**	**-**	**-**	**834,842**	**834,839**	**-**	**3**
창업저변확대(5132-301)	20,318	-	-	-	-	20,318	20,318	-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403,567	-	54,000	-	-	457,567	457,564	-	3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186,281	-	-	-	-	186,281	186,281	-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2-324)	1,561	-	-	-	-	1,561	1,561	-	-
중소기업재기지원(5133-301)	16,629	-	-	-	-	16,629	16,629	-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R&D)(5133-302)	1,333	-	-	-	-	1,333	1,333	-	-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5134-301)	87,238	-	-	-	-	87,238	87,238	-	-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5134-311)	50,410	-	-	-	-	50,410	50,410	-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505	-	-	-	-	13,505	13,505	-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5134-6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00)	**32,696**	**-**	**-**	**-**	**-**	**32,696**	**32,696**	**-**	**-**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231-301)	28,282	-	-	-	-	28,282	28,282	-	-
벤처캐피탈선진화 (5231-302)	3,533	-	-	-	-	3,533	3,533	-	-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5231-307)	881	-	-	-	-	881	881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1,975,536**	**1,111**	**230,847**	**110 △110**	**-**	**2,207,494**	**2,206,331**	**408**	**754**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00)	**60,000**	**-**	**170,000**	**-**	**-**	**230,000**	**230,000**	**-**	**-**
신용보증기금출연 (1231-881)	-	-	100,000	-	-	100,000	100,000	-	-
기술보증기금출연 (1231-882)	40,000	-	70,000	-	-	110,000	110,000	-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232-882)	20,000	-	-	-	-	20,000	20,000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00)	**1,586,323**	**-**	**60,847**	**-**	**-**	**1,647,170**	**1,647,166**	**-**	**4**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11-303)	236,076	-	50,847	-	-	286,923	286,919	-	4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2111-304)	10,888	-	-	-	-	10,888	10,888	-	-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2111-305)	5,836	-	-	-	-	5,836	5,836	-	-
혁신제품 지정사업(2111-308)	400	-	-	-	-	400	400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111-312)	6,000	-	-	-	-	6,000	6,000	-	-
기술혁신기반조성 (2131-302)	13,359	-	-	-	-	13,359	13,359	-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2134-301)	3,146	-	-	-	-	3,146	3,146	-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567,983	-	10,000	-	-	577,983	577,983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7)	36,199	-	-	-	-	36,199	36,199	-	-
공정·품질기술개발(R&D)(2134-305)	4,675	-	-	-	-	4,675	4,675	-	-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596,010	-	-	-	-	596,010	596,010	-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2134-347)	51,690	-	-	-	-	51,690	51,690	-	-
건강기능식품개발지원사업(R&D)(2134-344)	1,200	-	-	-	-	1,200	1,20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R&D)(2134-342)	39,817	-	-	-	-	39,817	39,817	-	-
다자간반중소제조사업개발기술개발(R&D)(2134-348)	1,650	-	-	-	-	1,650	1,650	-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2135-503)	3,362	-	-	-	-	3,362	3,36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2160-301)	8,032	-	-	-	-	8,032	8,032	-	-
□지역중소기업육성(3300)	**18,395**	**-**	**-**	**-**	**-**	**18,395**	**18,346**	**-**	**49**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3335-304)	18,395	-	-	-	-	18,395	18,346	-	49
□동반성장지원(4200)	**38,926**	**-**	**-**	**-**	**-**	**38,926**	**38,904**	**-**	**22**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4241-301)	17,844	-	-	-	-	17,844	17,822	-	22
여성기업육성(4234-302)	10,485	-	-	-	-	10,485	10,485	-	-
장애인기업육성(4234-303)	10,597	-	-	-	-	10,597	10,597	-	-
□중소기업육성지원(4800)	**139,509**	**-**	**-**	**110 △110**	**-**	**139,509**	**139,175**	**-**	**334**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834-305)	10,997	-	-	20 △20	-	10,997	10,977	-	20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4853-301)	61,386	-	-	-	-	61,386	61,377	-	9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마케팅지원사업 (4835-305)	21,827	-	-	-	-	21,827	21,793	-	34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5,703	-	-	10 △10	-	5,703	5,662	-	41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4837-301)	16,957	-	-		-	16,957	16,957	-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4838-301)	4,193	-	-	80 △80	-	4,193	4,066	-	127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4838-471)	14,404	-	-	-	-	14,404	14,400	-	4
중소기업협동조합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4842	4,042	-	-	-	-	4,042	3,944	-	98
□중소기업인력지원(5400)	**132,383**	**1,111**	**-**	**-**	**-**	**133,494**	**132,740**	**408**	**346**
산학협력인력양성 (5431-301)	52,347	-	-	-	-	52,347	52,215	-	13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5431-302)	19,347	-	-	-	-	19,347	19,347	-	-
마이스터고육성 (5441-301)	25,068	1,111	-	-	-	26,179	26,122	-	57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5441-302)	1,556	-	-	-	-	1,556	991	408	157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5613	34,065	-	-	-	-	34,065	34,065	-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 산 액	7,090,786	8,689,816	4,962,237	6,193,643	6,171,533
전 용 액	2,430 △2,430	101,015 △101,015	2,188 △2,188	1,787 △1,787	1,344 △1,344
이 용 액	-	-	-	-	-
예 비 비	4,046,857	1,378,500	-	-	-
전 년 도 이 월 액	8,121	258	3,270	-	1,111
추 경	10,513,041	38,180,528	-	-	3,018,353
예산현액	21,658,805	48,249,102	4,965,506	6,193,643	9,190,997
지 출 액	21,646,677	48,240,022	4,955,839	6,107,172	9,185,063
다음연도 이 월 액	258	3,269	-	1,111	437
불 용 액	11,870	5,810	9,668	85,361	5,497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1,111	- 마이스터고육성(1,111)
합 계	1,111	

2025년도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은 약 11억 1,100만원으로,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에서 공공건축 관련 법률에 따른 설계 진행을 위한 법정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11억 1,100만원이 2024년도에서 이월되었음.

② 이 용: 해당없음

③ 이 체: 해당없음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경비 등	±854	- 기본경비(±854)
사업비	±490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05) -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267)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8)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20) - 공공구매제도운영(±10)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80)
합 계	±1,344	

2025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약 13억 4,400만원으로, 기본경비 등 부족액 마련을 위해 8억 5,400만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비목 변경 등을 위해 4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음.

⑤ 추 경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3,018,333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2,298,686)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335,000) - 신용보증기금출연(100,000) - 수출지원기반활용(89,800) - 기술보증기금출연(70,000) - 창업사업화지원(54,000)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50,847)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0,00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10,000)
합 계	**3,018,333**	

202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약 3조 183억 3,300만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금 2조 2,986억 8,600만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금 3,350억원, 신용보증기금출연 1,000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경비	29	- 기본경비(글로벌성장정책관)(29)
사업비	408	-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408)
합 계	**437**	

2025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700만원으로, 기본경비(글로벌성장정책관) 2,900만원,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4억 800만원 등을 용역 잔금 집행을 위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831	- 본부인건비(1,935) - 국립마이스터고인건비(1,098) - 기본경비(798)
사업비 집행잔액	1,666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295) -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247) - 청사시설관리(157) -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157)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54) - 산학협력인력양성(132)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127)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98) - 마이스터고육성(57)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49) - 관사구입및임차(45) - 공공구매제도운영(41) - 마케팅지원사업(34)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22)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20) - 수출지원기반활용(1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9)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4)
합 계	**5,497**	

202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54억 9,7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8억 3,1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16억 6,6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73**		**106**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2		28	
3. 기타금융자산	71		78	
Ⅱ.유·무형자산		**6,047**		**6,151**
1. 일반유형자산	6,032		6,119	
2. 무형자산	15		32	
Ⅲ.기타자산		**-**		**-**
1. 선급비용	-		-	
2. 선급금/단기	-		-	
자산계		**6,120**		**6,257**
부채				
Ⅰ.차입부채		**4**		**2**
1. 기타차입부채	4		2	
Ⅱ.충당부채		**-**		**-**
1. 기타충당부채	-		-	
Ⅲ.기타부채		**1**		**1**
1. 선수수익	1		1	
부채계		**5**		**3**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2,030**		**2,03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522**		**1,637**
Ⅲ.순자산조정		**2,563**		**2,587**
순자산계		**6,115**		**6,254**
부채와순자산계		**6,120**		**6,257**

일반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6,120억원으로 전기 6,257억원 대비 137억원(2.2%)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무형자산이 105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2025년도 총부채는 5억원으로 전기 3억원 대비 2억원(45.3%)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차입부채가 2억원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139억원(2.2%) 감소한 6,115억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31,940	-	31,940	27,939	-	27,939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3,307	-	3,307	2,134	-	2,134
2.창업환경조성	8,349	-	8,349	7,064	-	7,064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329	-	329	102	-	102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00	-	200	-	-	-
5.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6,472	-	16,472	14,255	-	14,255
6.지역중소기업육성	188	-	188	162	-	162
7.동반성장지원	389	-	389	357	-	357
8.중소기업육성지원	1,396	-	1,396	1,364	-	1,364
9.중소기업인력지원	1,310	-	1,310	2,501	-	2,501
Ⅱ.관리운영비			1,881			1,832
1.인건비			1,180			1,166
2.경비			701			666
(1)출연사업비			73			51
(2)기타이전비용			-			-
(3)운영비			412			392
(4)감가상각비			106			123
(5)기타국가운영비용			110			100
Ⅲ.비배분비용			2			14
1.기타이전비용			-			4
2기타국가운영비용			2			10
Ⅳ.비배분수익			1,712			2,208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4			4
2.이자수익			3			23
3.자산처분이익			1			1
4기타국가운영수익			1,704			2,180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2,111			27,577
Ⅶ.재정운영결과(Ⅴ-Ⅵ)			32,111			27,577

일반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3조 3,823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712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3조 2,11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2,030**	**1,913**	**2,603**	**6,546**
1. 보고금액	2,030	1,913	2,603	6,546
Ⅱ.재정운영결과		**27,577**		**27,577**
Ⅲ.재원의조달및이전		**27,301**		**27,301**
1. 재원의조달		61,306		61,306
(1) 국고수입		61,072		61,072
(2) 제재금수익		15		15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7		57
(5) 기타재원조달		163		163
2. 재원의이전		34,005		34,005
(1) 국고이전지출		2,209		2,209
(2) 무상이전지출		31,796		31,796
Ⅳ.조정항목			**(16)**	**(16)**
1. 자산재평가이익			(16)	(16)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2,030**	**1,637**	**2,587**	**6,254**
Ⅵ.당기 기초순자산	**2,030**	**1,637**	**2,587**	**6,254**
1. 보고금액	2,030	1,637	2,587	6,254
Ⅶ.재정운영결과		**32,111**		**32,11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31,996**		**31,996**
1. 재원의조달		92,085		92,085
(1) 국고수입		91,851		91,851
(2) 제재금수익		18		18
(3) 기타이전수익		216		216
2. 재원의이전		60,089		60,089
(1) 국고이전지출		1,761		1,761
(2) 기타이전비용		58,328		58,328
Ⅸ.조정항목			**(24)**	**(24)**
1. 자산재평가이익			(24)	(24)
Ⅹ.당기기말순자산(Ⅵ-Ⅶ+Ⅷ+Ⅸ)	**2,030**	**1,522**	**2,563**	**6,115**

일반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6,115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6,254억원 대비 139억원(2.2%)이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9조 2,085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3조 2,111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조 89억원, 조정항목 24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607,270	-
1. 국가채권현재액	918	-
2. 국유재산현재액	583,630	-
3. 물품현재액	22,722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612,001	512
Ⅲ. 차이내역(Ⅱ-Ⅰ=A+B+C+D+E)	4,731	512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1,775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536)	8,192
4. 대상차이(D)	3,492	(7,680)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자산 : 1,774,448,110원
  1) 미수제재금수익/단기 : 1,774,448,110원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536,660,740원
  1)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 (-)1,654,550,237원
  2) 기타유동자산 : 33,276,645원
  3) 유형자산 : 1,078,848,742원
  4) 기타의선급비용/장기 : 5,764,110원
- 부채 : 8,192,450,149원
  1) 기타의미지급금/단기 : 9,840,000원

2)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 410,394,880원
3) 기타의선수수익/단기 : 85,497,445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7,686,717,824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3,492,054,201원
1) 국고예금 : 2,033,792원
2) 기타의기타금융자산/장기 : 1,100,726,055원
3) 기타투자자산 : 1,260,475,752원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2,376,881,134원
5) 선급금 : 12,413,220원
- 부채 : (-)7,680,373,474원
1) 예수금 : 6,344,350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7,686,717,824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20,960	22,573	1,613	
기타재산이자수입	2,460	4,262	1,802	출연·보조금 사업 발생이자 증가
과징금	-	76	순증	출연·보조금 사업 과징금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8,500	18,235	△265	출연·보조금 사업 반환금 감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09억 6,000만원으로 225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세입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182억 3,5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42억 6,200만원)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20,960	22,573	22,337	-	236	
기타재산이자수입[7]	2,460	4,262	4,187	-	75	사업 정산 이자 75
과징금	-	76	76	-	-	-
기타경상이전수입[8]	18,500	18,235	18,074	-	161	사업 집행 잔액 161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09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억 1,300만원이 증가한 225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9.0%에 해당하는 223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음.

7)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8)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4,148억 900만원 중 4,139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414,809**	**-**	**-**	**20,846 △20,846**	**-**	**414,809**	**413,982**	**-**	**827**
□지역자율계정	**155,065**	**-**	**-**	**19,166 △19,166**	**-**	**155,065**	**155,063**	**-**	**1**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85,699	-	-	-	-	85,699	85,699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4154-301)	46,985	-	-	19,166 △19,166	-	46,985	46,985	-	-
상권활성화 사업(자율)(4154-305)	22,381	-	-	-	-	22,381	22,380	-	1
□지역지원계정	**240,925**	**-**	**-**	**-**	**-**	**240,925**	**240,880**	**-**	**46**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7,110					7,110	7,108	-	2
산학연CollaboR&D(R&D)(2151-302)	56,966	-	-	-	-	56,966	56,966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2151-310)	7,618	-	-	-	-	7,618	7,618	-	-
지역특화산업육성(3336-302)	85,081	-	-	-	-	85,081	85,081	-	-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04)	8,150	-	-	-	-	8,150	8,150	-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3336-334)	613	-	-	-	-	613	613	-	1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3336-341)	21,560					21,560	21,560	-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3336-347)	3,783					3,783	3,740	-	43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3339-305)	30,857	-	-	-	-	30,857	30,857	-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3339-306)	8,926	-	-	-	-	8,926	8,926	-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R&D)(3339-310)	10,261	-	-	-	-	10,261	10,261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088**	**-**	**-**	**1,680 △1,680**	**-**	**11,088**	**11,088**	**-**	**-**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7251-301)	1,725	-	-	-	-	1,725	1,725	-	-
창업인프라지원(제주) (5151-301)	100	-	-	-	-	100	100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3336-302)	5,013	-	-	-	-	5,013	5,013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R&D)(3336-304)	700	-	-	-	-	700	700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 (4154-301)	2,580	-	-	1,680 △1,680	-	2,580	2,580	-	-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4154-305)	970					970	970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731**	**-**	**-**	**-**	**-**	**7,731**	**6,951**	**-**	**780**
창업인프라지원(세종) (5154-301)	50	-	-	-	-	50	50	-	-
지식산업센터(세종) (5154-302)	3,805	-	-	-	-	3,805	3,805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336-302)	2,796	-	-	-	-	2,796	2,796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3336-320)	300	-	-	-	-	300	300	-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4156-305)	780	-	-	-	-	780	-	-	780

(2) 예산변경 내역 : 전용 외 해당사항 없음

①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20,846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19,166)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1,680)
합 계	±20,846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액은 약 208억 4,600만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비목 오편성 조정을 위해 전용하였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827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780)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43) - 창업인프라지원(2)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1) - 상권활성화 사업(자율)(1)
합 계	827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은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등 집행잔액 8억 2,7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유동자산		**2**		**1**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2		1	
Ⅱ.유·무형자산		**666**		**440**
1.일반유형자산	666		440	
Ⅲ.기타자산		**-**		**-**
자산계		**668**		**441**
부채				
Ⅰ.차입부채		**-**		**-**
1. 기타차입부채	-		-	
Ⅱ.충당부채		**-**		**-**
Ⅲ.기타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668**		**441**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668**		**441**
부채와순자산계		**668**		**4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668억원으로 전기 441억원 대비 227억원(51.4%)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3,915	(223)	3,692	3,645	(296)	3,349
1.중소기업행정지원	17	-	17	17	-	16
2.창업환경조성	968	(7)	961	819	(40)	779
3.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646	(20)	626	413	(36)	377
4.지역중소기업육성	1,780	(186)	1,594	1,792	(195)	1,597
5.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504	(10)	494	604	(25)	579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1.기타국가운영비용			-			-
Ⅳ.비배분수익			1			-
1.기타국가운영수익			1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691			3,34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3,691			3,3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3,91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24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3,69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177	-	177
1. 보고금액	-	177	-	177
Ⅱ.재정운영결과		3,349		3,349
Ⅲ.재원의조달및이전		3,614		3,614
1. 재원의조달		3,919		3,919
(1) 국고수입		3,919		3,919
(2) 제재금수익		1		1
2. 재원의이전		305		305
(1) 국고이전지출		305		305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	441	-	441
Ⅵ.당기 기초순자산	-	441	-	441
1. 보고금액	-	441	-	441
Ⅶ.재정운영결과		3,691		3,69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3,917		3,917
1. 재원의조달		4,140		4,141
(1) 국고수입		4,139		4,140
(2) 제재금수익		1		1
2. 재원의이전		223		223
(1) 국고이전지출		223		223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기말순자산(Ⅵ-Ⅶ+Ⅷ+Ⅸ)	-	667	-	6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667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441억원 대비 226억원(51.4%)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은 재정운영결과 3,691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23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140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236**	**-**
1. 국가채권현재액	236	-
2. 국유재산현재액	-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66,790**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66,555**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	-
4. 대상차이(D)	66,556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해당없음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1,401,430원
  1)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단기 : (-)1,401,430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66,556,000,005원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원
  2)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66,556,000,005원
- 부채 : 92,400원
  1) 기타유동부채 : 92,400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외수입 징수 등 총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내역이 없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57억 1,1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35,711**	**-**	**-**	**-**	**-**	**35,711**	**35,711**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35,711**	**-**	**-**	**-**	**-**	**35,711**	**35,711**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00)	**35,711**	**-**	**-**	**-**	**-**	**35,711**	**35,711**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134-302)	25,692	-	-	-	-	25,692	25,692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134-303)	2,609	-	-	-	-	2,609	2,609	-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R&D)(2134-352)	4,069	-	-	-	-	4,069	4,069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2134-354)	3,341	-	-	-	-	3,341	3,341	-	-

(2) 예산변경 내역: 해당없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해당없음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140		2,140
1.정부출자금	2,140		2,140	
Ⅱ.유·무형자산		-		-
Ⅲ.기타자산		-		-
자산계		2,140		2,100
부채				
Ⅰ.차입부채		-		-
Ⅱ.충당부채		-		-
Ⅲ.기타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2,140		2,140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2,140		2,140
부채와순자산계		2,140		2,14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2,140억원으로 전기 2,140억원과 동일함.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357	-	357	691	-	691
1.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357	-	357	691	-	691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Ⅳ.비배분수익			-			-
1.기타수익			-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57			69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357			69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357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재정운영결과 357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2,100	-	2,100
1. 보고금액	-	2,100	-	2,100
Ⅱ.재정운영결과		691		691
Ⅲ.재원의조달및이전		731		731
1. 재원의조달		731		731
(1) 국고수입		731		731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	2,140	-	2,140
Ⅵ.당기 기초순자산	-	2,140	-	2,140
1. 보고금액	-	2,140	-	2,140
Ⅶ.재정운영결과		357		357
Ⅷ.재원의조달및이전		357		357
1. 재원의조달		357		357
(1) 국고수입		357		357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기말순자산(Ⅵ-Ⅶ+Ⅷ+Ⅸ)	-	2,140	-	2,14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2,140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2,140억원과 동일함.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357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57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214,000**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214,000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214,000**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4. 대상차이(D)	-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차이 없음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은 일반회계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총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집행액의 경우 일반회계는 12개 사업 1조 3,542억 1,500만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는 4개 사업 357억 1,1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7개 사업 1,370억 2,500만원으로, 전체 R&D 사업예산 총 1조 5,269억 5,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중기부 R&D 사업 총괄 결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 수	2025년도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A)							
일반회계	12	1,344,215	1,354,215	-	-	1,354,215	1,354,215	-	-	1,999,856
소특회계	4	35,711	35,711	-	-	35,711	35,711	-	-	10,593
지특회계	7	137,025	137,025	-	-	137,025	137,025	-	-	185,472
계	23	1,516,951	1,526,951	-	-	1,526,951	1,526,951	-	-	2,195,9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수행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년에 신규로 착수한 과제 2,836개, 계속과제 6,339개 등 총 9,175개 과제를 수행했고, 그중 3,357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완료과제 중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과제는 206개임.

2025년도 중기부 R&D 과제수행 현황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수행 현황					
			대상과제수(a)		수행과제수(b)			
			2025 신규	계속(2024년 이전 선정)	완료과제수			미완료 과제수
					보통 이상	미흡 이하	계	
일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80	474	1	-	1	553
		시장확대형	511	785	110	5	115	1,181
		시장대응형	255	446	94	3	97	604
일반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350	1,386	1,186	68	1,254	482
		전략형	-	128	118	6	124	4
		TIPS	700	1,617	160	71	231	2,086
일반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20	-	-	-	-	20
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489	403	20	423	66
		네트워크형	-	11	9	1	10	1
일반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	144	123	5	128	16
일반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	-	243	39	-	39	204
일반	건강기능식품개발지원사업	-	-	18	10	-	10	8
일반	중소벤처기업구조혁신지원R&D	고도화R&D	-	10	9	1	10	-
		재구축R&D	-	9	5	-	5	4
일반	K-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	-	-	-	-	-	-	-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수행 현황					
			대상과제수(a)		수행과제수(b)			
			2025 신규	계속(2024년 이전 선정)	완료과제수			미완료 과제수
					보통 이상	미흡 이하	계	
일반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	1	-	-	-	1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	1	-	-	-	1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	1	-	-	-	1
		중소기업연구인력현장맞춤형양성지원	-	4	-	-	-	4
소특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특)	강소기업100	-	78	31	-	31	47
		소부장 전략	-	65	61	-	61	4
		소부장 일반	-	78	67	1	68	10
소특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특)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39	31	3	34	5
소특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수요기반기술이전	-	38	32	-	32	6
지특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534	138	436	16	452	220
		산연협력	228	57	192	5	197	88
지특	지역선도기업육성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38	-	-	-	-	38
		지역기업 역량강화	76	-	-	-	-	76
지특	지역특화산업육성+	-	-	24	24	-	24	-
지특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	-	2	2	-	2	-
지특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	-	1	1	-	1	-
지특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	-	-	5	4	1	5	-
지특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8	5	3	-	3	10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31	41	-	-	-	72
지특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1	1	-	-	-	2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	4	-	-	-	-	4
계			2,836	6,339	3,151	206	3,357	5,818

주 1.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통합하여 사업 수 산정
2. 기평비(일반·소특·지특) 3개와 기관운영사업(일반) 1개는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수행현황과 비교해보면, 완료과제 수는 2024년에 비해 약 400건 감소했고, 완료과제 중 미흡[9] 이하 판정을 받은 과제는 2023년 및 2024년에 비해 1.0~1.8%p 가량 감소했음.

최근 5년(2021~2025) 중기부 R&D 과제 수행현황

(단위: 건)

구분	완료과제수	보통 이상	미흡 이하	기타[1)]
2021	4,225 (100.0%)	3,961 (93.8%)	235 (5.6%)	29 (0.7%)
2022	5,597 (100.0%)	5,098 (91.1%)	259 (4.6%)	240 (4.3%)
2023	5,608 (100.0%)	5,142 (91.7%)	343 (6.1%)	123 (2.2%)
2024	5,102 (100.0%)	4,258 (83.5%)	345 (6.8%)	499 (9.8%)
2025	4,701 (100.0%)	3,569 (75.9%)	235 (5.0%)	897 (19.1%)

주 1) 과제완료 이후 최종평가 미완료, 과제포기, 중단, 조기종료 등
2) 2025년도 완료과제수 기준 위 63p표(3,357개)와의 차이는 과제 완료 이후 최종평가가 종료되지 않은 과제 등 기타과제 897개와 2025년도 예산집행 없이 단순 기간연장 협약변경 과제 447개에서 기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최종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5. <삭 제>

□ 검토의견

(1) 협약지연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업 실집행 부진사업 개선 필요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의 전체 실집행액은 1조 5,198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99.5%를 달성하여 전반적인 예산 집행 현황은 양호한 편임. 다만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부 내역사업에서 기업의 실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2025년도 중기부 R&D 사업 총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도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	집행액	실집행액 (E)	실집행률 (E/D)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A)							
1,516,951	1,526,951	-	-	1,526,951	1,526,951	1,519,848	99.5	2,195,9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신규사업인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예상보다 높은 기업들의 신청률로 인해[10] 과제선정과 협약체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과제 수행기간이 짧아져 기업의 실집행률이 62.8% 수준에 머물렀음.

또한, 신규사업인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 사업은 해외 혁신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장비 도입 수

10) 경쟁률 10.6:1 기록(20개 과제 선정에 212개 과제 신청)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계획) '25.9월 → (실제) '25.10월

행기관의 변경[11] 및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도입장비 변경[12] 등의 지연사유 발생에 따라 46.4%라는 낮은 기업의 실집행률을 기록함.

2025년도 중기부 R&D 내역사업 중 기업 실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기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5 예산액 (C)	2025 기업 실집행액 (D)	2025 기업 실집행률 (D/C*100)
신규	일반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1,650	1,036	62.8
신규	지특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	8,000	3,711	4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제 선정 및 협약 등 사업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해외 혁신기관 등 사업 참여 기관과의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등 기업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충북첨단재생바이오특구 사례
12) 강원AI헬스케어특구 사례

(2) R&D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 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3)]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료된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중 2025년 말까지 정산금이 미반납된 과제 건수는 총 780건으로, 미반납액은 386억 3,600만원에 이르고,

---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2021~2025년 R&D 종료과제의 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산학연협력기술개발 (R&D)(2151-301)	-	-	-	-	-	-	-	-	-	-	0	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2134-303)	818	16	1,029	20	1,600	22	4,933	41	1,832	39	10,212	13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2134-302)	90	5	1,350	15	968	16	2,739	45	1,778	22	6,925	103
창업성장기술개발 (R&D)(2134-309)	809	33	1,352	38	2,693	75	5,142	113	2,490	71	12,486	330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R&D)(2134-305)	182	8	132	9	81	6	158	5	49	5	602	33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R&D)(2134-321)	-	-	-	-	-	-	-	-	-	-	0	0
산학연 Collabo R&D(R&D)(2151-302)	28	5	96	7	211	12	20	2	144	8	499	34
중소기업R&D역량제고 (R&D)(2134-310)	-	-	17	2	96	5	55	2	-	-	168	9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R&D)(2134-342)	189	2	1	1	-	-	-	-	-	-	190	3
창업성장기술개발(소특) (R&D)(2134-309)	-	-	1,007	9	58	3	264	3	-	-	1,329	15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 (R&D)(2134-345)	12	1	-	-	8	3	-	-	-	-	20	4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R&D)(2134-350)	-	-	6	1	-	-	-	-	-	-	6	1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R&D)(2134-340)	-	-	21	2	11	1	-	-	-	-	32	3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 (R&D)(2134-352)	-	-	1	1	55	1	184	4	-	-	240	6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R&D)(2134-341)	-	-	223	2	-	-	-	-	-	-	223	2
예비가젤형기술개발 (R&D)(2134-346)	-	-	563	3	100	1	-	-	-	-	663	4
산학협력거점형 플랫폼 (R&D)(2151-307)	-	-	10	1	-	-	-	-	-	-	10	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R&D)(2134-318)	-	-	3	1	-	-	-	-	-	-	3	1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특) (R&D)(2134-303)	-	-	491	2	1	1	-	-	-	-	492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 혁신형기술개발(R&D)(4131-320)	-	-	147	1	-	-	-	-	-	-	147	1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R&D)(2151-306)	-	-	-	-	269	6	-	-	-	-	269	6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R&D)(2134-354)	-	-	-	-	218	2	-	-	-	-	218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특) (R&D)(2134-302)	-	-	-	-	97	2	31	1	34	2	162	5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R&D)(2134-384)	-	-	-	-	130	2	-	-	-	-	130	2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 개발 (R&D)(2134-388)	-	-	-	-	34	1	7	2	-	-	41	3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R&D)(2134-382)	-	-	-	-	264	1	-	-	-	-	264	1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 개발(R&D)(2134-371)	-	-	-	-	18	4	-	-	-	-	18	4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04)	165	7	187	7	315	11	376	4	53	1	1,096	30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 R&D(R&D)(3336-327)	-	-	-	-	3	1	-	-	-	-	3	1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20)	-	-	-	-	-	-	-	-	-	-	0	0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R&D)(2134-416)	-	-	-	-	-	-	-	-	7	1	7	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R&D)(2151-308)	-	-	-	-	114	9	-	-	-	-	114	9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R&D)(2134-398)	-	-	-	-	-	-	80	1	-	-	80	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R&D)(2134-344)	-	-	-	-	-	-	51	2	-	-	51	2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사업 (R&D)(2151-309)	-	-	-	-	-	-	110	5	-	-	110	5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R&D)(2134-408)	-	-	-	-	-	-	-	-	-	-	0	0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 (R&D)(4131-326)	-	-	-	-	-	-	-	-	-	-	0	0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R&D)(2134-405)	-	-	-	-	-	-	-	-	-	-	0	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R&D)(2134-377)	-	-	-	-	-	-	-	-	36	2	36	2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R&D)(2134-353)	-	-	-	-	-	-	-	-	-	-	0	0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R&D)(2134-378)	-	-	-	-	-	-	-	-	-	-	0	0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R&D)(2163-307)	-	-	-	-	123	3	-	-	-	-	123	3
혁신제품고도화기술개발지원사업 (R&D)(2134-429)	-	-	-	-	-	-	-	-	-	-	0	0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R&D)(3339-305)	-	-	398	1	459	5	652	5	-	-	1,509	11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R&D)(3339-310)	-	-	-	-	158	1	-	-	-	-	158	1
합 계	2,293	77	7,034	123	8,084	194	14,802	235	6,423	151	**38,636**	**780**

주: 2025.12.31.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발생액 238억 9,800만원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 489억 9,000만원 중 2025년 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은 각각 환수금 129억 6,900만원 및 제재부가금 403억 4,700만원 등 총 533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2021~2025년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연도별 환수 결정액 (a)		10,152	4,912	4,492	2,877	1,465	**23,898**
환수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1	3,991 (39.3)					3,991
	2022	4,762 (46.9)	2,369 (48.2)				7,131
	2023	5,271 (51.9)	2,516 (51.2)	1,124 (25.0)			8,911
	2024	5,576 (54.9)	2,722 (55.4)	1,897 (42.2)	171 (5.9)		10,366
	2025 (b)	5,666 (55.8)	2,583 (52.6)	2,076 (46.2)	452 (15.7)	152 (10.4)	10,929
미수납 총액 (c) = (a)-(b)		4,486	2,329	2,416	2,425	1,313	**12,969**

[해당없음]

주1: 2025.12.31.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 결정액에서 제외
주3: 소송패소로 반납한 금액을 2025년도 수납액에 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1～2025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적용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a)		304	196	967	11,927	13,994	21,602	**48,990**
제재부가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1	256 (84.2)	0 (0.0)	[해당없음]				256
	2022	304 (100)	0 (0.0)	0 (0.0)				304
	2023	304 (100)	0 (0.0)	162 (16.8)	391 (3.3)			857
	2024	304 (100)	0 (0.0)	162 (16.8)	2,072 (17.4)	319 (2.3)		2,857
	2025 (b)	304 (100)	0 (0.0)	162 (16.8)	3,720 (31.2)	2,982 (21.3)	1,475 (6.8)	8,643
미수납 총액 (c) = (a)-(b)		0	196	805	8,207	11,012	20,127	**40,347**

주1: 2025.12.31.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주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14]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동시에 협약위배, 연구결과불량 등 기존 환수금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제재부가금으로 분류 변경함.
주4: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은 '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국회는 2022년～2024년 결산 시정요구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15]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관리강화를 위해

14) 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 2021.1.1. 시행
15)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 2024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 수납 관리 강화 필요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 실시,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이 2026년 5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행기업 대상 정산 절차 교육 등 예방조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R&D 과제 수행 중간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수행기업의 경영악화나 위기징후를 상시적으로 감지·관리하는 등 선제적 예방과 상시 점검을 아우르는 실효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의안번호 제2217080호,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3) R&D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17]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완료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이후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경제적·기술적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가장 최근(2025. 11월)에 조사가 완료된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과제로부터 발생한 누적 성과는 SCI논문 497건, 특허 등 산업재산권[18] 35,675건, 사업화 성공률 57.9%, 매출액 22조 3,469억원, 수출액 3조 9,765억원, 신규고용 18만 6,254명임.

중소벤처기업부 R&D 2019~2023 종료과제의 주요 누적 성과

구분	성과	구분	성과
논문	1,895건	SCI논문	497건
산업재산권	35,675건	특허(출원+등록)	30,461건
실용신안	114건	디자인	1,906건
상표	3,194건	사업화 성공건수	10,023건
사업화 성공률	57.9%	과제매출액	223,469억원
과제수출액	39,646억원	신규고용	186,254명

주: 2019~2023년 완료과제(우수 및 보통 평가과제)로부터 2020~2024년까지 발생한 누적 성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 통합분석보고서(요약본)」를 바탕으로 작성

17)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8)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조사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자료제출로 보고서 제출의무를 갈음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응답률은 매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약 10%에 이르는 미응답 과제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 조치 없이 단순 독려에만 그치고 있음.

R&D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성과조사연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대상	대상과제수	응답과제수	응답률
2021	`16 ~ '20년 종료과제 대상	20,254	18,418	90.9
2022	`17 ~ '21년 종료과제 대상	21,003	19,212	91.5
2023	`18 ~ '22년 종료과제 대상	19,123	17,684	92.5
2024	`19 ~ '23년 종료과제 대상	19,215	17,310	90.1
2025	`20 ~ '24년 종료과제 대상	16,138	조사중	조사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법령상 규정된 사후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R&D 사업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후속 지원사업 신청 시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연계하거나 성실 제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R&D 성과활용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R&D 성과지표 측정대상 사업 범위 확대 필요[19]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누적 과제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있음. 정부지원금 투입 대비 사업화 매출액을 측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이 실용적 개발과제에 집중되어 시장 안착 및 사업화 성과의 극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돈이 되는 R&D”[20]의 실질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2	2023	2024	2025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누적 과제매출액 (억원)	Σ사업화 매출액(억원) × 기여율(35.4%) / Σ지원과제 정부지원금(10억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3.65
		실적	신규	신규	13.37	13.66
		달성률(%)	-	-	-	100.1

자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R&D사업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일부 대표사업의 종료과제 중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19) 2025년도 중기부 R&D 세부사업(23개)은 4개 프로그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인력지원, 지역중소기업육성)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고, 각 프로그램에는 R&D사업 외에 일반사업도 편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4개 프로그램 중 R&D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9월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돈이 되는 중소벤처 R&D 추진으로 시장 대응이 빠르고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함.

물론 해당 대표사업들의 예산규모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R&D사업 예산 중 89.1%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나머지 10.9%에 해당하는 R&D 사업들 역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인 만큼 성과 측정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특정 대표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산출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전반의 객관적인 성과를 왜곡하거나 부진한 사업의 성과가 가려지는 착시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처 R&D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환류하기 위해 현재 일부 대표사업에 국한된 성과지표 측정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성과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내 R&D사업 중 성과지표 포함 사업의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예산액
성과지표 측정대상 사업	3	1,210,19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내 R&D 사업[1)]	11	1,358,743
비중	27.3%	89.1%

주: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내 R&D 사업 15개 중 기평비(3개) 및 기정원 운영 사업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과징금(56-565)

□ 사업 및 결산 개요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인 과징금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임.

2025년도 예산액은 3억 7,0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32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징수결정액 중 15억 6,800만원이 수납(수납률 48.1%)되고, 미수납액은 16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과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징금	370	370	-	370	3,259	1,568	1,691	-	829

□ 검토의견

(1) 징수결정액을 고려한 과징금 세입예산 증액 계상 및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과징금 세입은 주로 R&D 연구개발비 지원자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부정사용)[21][22]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23][24]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에 기인함.

---

21)「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

최근 4년간의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과징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022년 7억 5,900만원, 2023년 7억 6,000만원, 2024년 7억 6,100만원, 2025년 3억 7,000만원으로 2024년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고 2025년에는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음.

반면, 징수결정액은 2022년 8억 8,600만원, 2023년 17억 2,200만원, 2024년 29억 4,700만원, 2025년 32억 5,9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2022년에 5,600만원, 2024년에 9억 6,000만원, 2025년에 15억 6,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전액 미수납하였음.

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2~2025년도 일반회계 과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759	759	759	886	56	7.4	6.3	830	-
2023	760	760	760	1,722	-	-	-	1,722	-
2024	761	761	761	2,947	960	126.2	32.6	1,987	-
2025	370	370	370	3,259	1,568	423.8	48.1	1,69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결산상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전년도 미수납액을 합산한 누계액으로, 전년도 미수납액이 증가할 경우 징수결정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인 점,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징수결정액이 함께 증가한 점에 기인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징금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고, 징수결정 이후 수납실적 역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도별 과징금 세입예산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일관된 편성 원칙 없이 과거 결산액의 평균, 예상 수납액, 과거 수납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산출·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2~2026년도 일반회계 과징금 편성근거 및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	759	▪ 최근 3년 결산액 평균
2023	760	▪ 최근 3년 결산액 평균
2024	761	▪ '21년~'23년 결산액 및 '24년 수납예상액(추정치) 반영
2025	370	▪ '22년~'24년 징수결정액('24년 추정치) 평균(2,438)* x (최근 3년 수납률(2%) + 예상 수납률(15%)) - 최근 3년간 수납액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계상 * '24년 징수결정액 추정치(666) + 과년도 징수결정액(1,772)
2026	829	▪ '23년~'25년 징수결정액('25년 추정치) 평균(2,543)* x (최근 연도('24년) 수납률 32.6%) - 최근 3년간 수납액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계상 * '25년 징수결정액 추정치(936) + 과년도 징수결정액(1,6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특히 2025년도 과징금 예산의 편성근거를 보면, 최근 3개년도의 징수결정액 평균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률과 예상수납률의 합을 곱하여 내역을 산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7억 6,100만원보다 크게 감액된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음.

이와 같이 과징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회계의 과징금 세입은 대부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25] 징수액으로, 사전에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의 부정사용 규모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를 예측하기 어렵고, 세입예산은 국가의 실질적인 수입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국고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납률을 반영해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연도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는 매년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운용 가능한 세출 규모를 예측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수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기반하여 세입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할 것이며, 향후 수납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세입예산 자체를 축소 편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징수 노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8.1%로, 2022년(6.3%), 2023년(0%), 2024년(32.6%)에 비하여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부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징금 징수결정 이후 실제 수납이 곤란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미납자의 상당수가 폐업하는 등 현실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과징금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정은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법령 위반 사실 확인 이후 제재 및 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체납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수납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특히, 과징금 미수납액의 체납 발생 경과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의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년 이상의 장기체납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발생 경과기간별 과징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회계	경과기간	건수	금액	비고
일반회계	**합계**	21	1,691	21건
	1년 미만	2	103	R&D 1건, 창업 1건
	1년 이상~2년 미만	-	-	-
	2년 이상~3년 미만	2	1,028	수출 2건
	3년 이상~4년 미만	-	-	-
	4년 이상~5년 미만	4	196	R&D 4건
	5년 이상	13	365	R&D 13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과징금 비목은 정부의 세입 재원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법률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는 법집행의 실효성 담보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징금 세입예산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특히,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의 경우 미수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산은닉,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납부독려, 체납자 재산조사 및 현장조사, 압류 조치 등 적시성 있는 체납관리를 통해 미수납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과 같이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미수납이 연례적인 과징금 세입예산의 낮은 수납률의 주요 원인이라면, 체납이 장기화될수록 폐업 등 수납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수납액이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체납 초기 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와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예상 규모와 최근 징수 실적, 수납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관된 세입추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매년 예상되는 징수결정액 대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과징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과징금 세입예산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의 진행 및 적시성 있는 체납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3.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사업 및 결산 개요

‘신용보증기금출연’(1976~,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26]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1,000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신용보증기금출연	-	100,000	-	-	-	100,000	100,000	-	-	80,000

26)「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검토의견

(1) 추경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관세 피해, 내수 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ex, 관세 피해기업[27], 산불·수해 등 재난 피해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신규로 편성된 예산임.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 90% 비율로 보증하여 총 3조원 규모의 보증(대출 공급액 3조 3,000억원)을 공급하는 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 2,400억원 중 약 41.7%인 1,000억원(보증배수 12.5배, 보증비율 90%)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고, 나머지 약 58.3%의 재원 1,4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였음.

27)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수출실적이 감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이 감소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 운영체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계획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의 연내 공급 현황을 보면, 2025년말 기준 실제 공급된 보증은 약 1조 6,000억원에 불과하여 계획된 보증 규모의 약 53.3%만이 연내에 실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즉, 2025년도에 연내 공급된 특례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된 목표 공급 규모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 1,400억원만으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25년도에는 정부의 추가 출연 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특례보증을 우선 공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6년도 본예산을 통해 출연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확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28]에 따라 목적적합성·시급성·연내 집행 가능성[29]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국고를 통한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강해주기 위한 목적의 보충적인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보증여력이 충분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30]

---

28)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9)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출처 :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 4., p.32.)
- 목적적합성 :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 시급성 : 다음연도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 연내집행가능성 : 연도내 집행할 수 있을 것

3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동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자체보증여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 4, pp.515~520.)

최근 5년간 신보기금의 계정별 운용현황(연말기준)

(단위: 억원, 배)

연도	구분	보증잔액	기본재산	운용배수
2021	일반보증	591,461	63,004	9.4
	유동화보증	122,875	22,709	5.4
	소상공인위탁보증	71,552	3,078	23.2
	저금리대환보증	-	-	-
	위기대응 특례보증	-	-	-
2022	일반보증	613,961	71,351	8.6
	유동화보증	152,330	25,874	5.9
	소상공인위탁보증	65,082	1,527	42.6
	저금리대환보증	2,316	6,730	0.3
	위기대응 특례보증	-	-	-
2023	일반보증	618,214	75,533	8.2
	유동화보증	141,952	35,635	4.0
	소상공인위탁보증	44,785	△1,100	-
	저금리대환보증	11,276	7,159	1.6
	위기대응 특례보증	-	-	-
2024	일반보증	624,973	75,451	8.3
	유동화보증	132,627	41,260	3.2
	소상공인위탁보증	22,459	△778	-
	저금리대환보증	14,652	5,862	2.5
	위기대응 특례보증	-	-	-
2025	일반보증	624,030	76,008	8.2
	유동화보증	118,277	49,549	2.4
	소상공인위탁보증	7,847	2,219	3.5
	저금리대환보증	12,149	3,142	3.9
	위기대응 특례보증	14,483	2,125	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2025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계정별 운용배수 및 기본재산의 현황을 보면,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은 2,125억원, 운용배수는 6.8배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 한도[31]인 20배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1) 「신용보증기금법」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잔액 변동성,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기본재산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12.5배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한 국고 출연금 1,000억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운용배수가 약 12.8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쳐, 적정 운용배수 12.5배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즉,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예외적 재정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재원이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이 일반보증보다 확대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한 사업인 만큼, 일반보증 재원인 자체재원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경우 오히려 혁신성장기업 등에 대한 일반보증 지원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경우 일반적인 보증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긴급자금을 공급하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는 프로그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원 확보 없이는 위기 확산 이전에 적시성있는 대규모 자금 집행이 어렵고, 정부출연금이 감소할수록 불가피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심사 탈락 기업이 증가하는 등 신속한 자금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추경 편성 당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하였으나, 실제 추경 확정 이후 이루어진 한미협상에서 세율이 완화(25% → 15%)됨에 따라 관세로 인한 경제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측면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만으로 연내에 공급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은 추경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조 4,000억원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규로 공급하였고, 월별 공급 추세를 감안할 때 2026년 6월 중에 당초 연간 목표치였던 3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재원에 대한 국고 출연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의 엄격한 편성 요건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반영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사한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 보증 수요와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예측함으로써 국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1232-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1997～, 출연)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예산을 출연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200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20,000	20,000	-	-	-	20,000	20,000	-	-	27,000

□ 검토의견

(1)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과다예측 지양 및 출연금의 객관적 추계 체계 마련 필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32]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33]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보험계약자, 물품판매자)이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보험임.[34]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은 이와 같은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 정부 재정을 출연함으로써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체계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출

---

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3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3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 (가입한도) 업체당 100억원까지
○ (보험료) 0.1%~5.0%(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2025년 평균 0.26%)
○ (보험금) 가입 보험금액을 최고 한도로 실제 손해금액의 최대 90%를 보상
○ (지급사유) 구매기업 부도, 폐업, 회생·파산, 매출채권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

연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인수, 보험금 지급, 홍보 등 실제 보험사업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영체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예산편성 당시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율을 2.0%로 가정하여, 보험총량(인수총량) 목표를 21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말 보험인수잔액을 5조 6,338억원, 기본재산을 4,254억원으로 각각 전망하면서,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예상 운용배수를 13.3배[35]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35) 운용배수 : 기본재산 대비 보험인수잔액의 비율

2025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예산 산출 근거

▪ 보험총량(인수총액): 21.3조원 ▪ 수입(정부출연 200억원 포함): 1,044억원 ▪ 기본재산: 4,254억원('24년말예측치 4,434억원)	▪ 인수잔액: 56,338억원 ▪ 지출('25년 보험사고율예측치 2%): 1,224억원 ▪ 운용배수: 13.3배('24년말예측치 12.7배)

주: 전년 대비 기본재산 180억원(수입 1,044억원 - 지출 1,224억원) 감소로 운용배수 상승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매출채권보험 계획 및 실적 비교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	계획 대비 증감
인수총액	213,000	222,607	9,607
인수잔액	56,338	64,219	7,881
보험사고	1,127	801	△326
사 고 율	2.0	1.2	△0.8
수 입(A)	1,044	1,092	48
정부출연금	**200**	**200**	-
보험료	607	582	△25
운용수익	153	236	83
대위권회수	76	79	3
기타수입	8	△5	△13
지 출(B)	1,224	1,069	△155
보험금지급	786	609	△177
관리업무비	324	306	△18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등	114	154	40
증 감(A-B)	△180	23	203
기 본 재 산	4,254	4,701	447
운 용 배 수	13.3	13.7	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실제 매출채권보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인수총량과 연도말 인수잔액은 각각 22조 2,607억원 및 6조 4,219억원으로 계획 대비 증가하였고, 연도말 기본재산 역시 4,701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도말 결산잉여금 23억원이 발생하였음. 이는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점에 기인하는데, 당초 예상 사고율은 2.0%였으나 실제 사고율은 1.2% 수준에 그쳐 보험사고금액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최근 10년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사고율 추이를 보면, 2016년에 2.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9년간 2.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년간 평균 사고율은 1.35%에 불과함에도, 예산편성 시 예상 사고율을 보수적으로 과다하게 예측한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매출채권보험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인수잔액	39,862	42,557	46,997	50,229	51,112	51,913	53,819	57,015	63,633	64,219
사고금액	815	607	752	852	695	492	486	790	564	801
사고율	2.0	1.4	1.6	1.7	1.4	1.0	0.9	1.4	0.9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사고율을 실제 수준보다 높게 가정할 경우 예상 보험금 지급액이 과다 계상되고, 그 결과 정부출연금 역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재정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36]는 매출채권보험 계정의 법정 운용배수를 17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13.7배 수준으로 계정을 운용하였으며, 만약 정부 출연금 200억 원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 범위 내인 14.3배로 운영이 가능[37]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더라도 금융성기금 출연금은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주체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고·대위변제율은 과거 추이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38]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법정 운용배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운용배수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연중 운용배수 변동성에 따른 연말 운용배수의 착시효과[39], 운용배수가 법정한도에 근접하는 경우 기본재산 변동의 충격이 커지는 레버리지 민감도 증가[40]로 인한 관리여력 약화,

---

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37) 2025년 결산 기준 매출채권보험계정 기본재산 4,701억 원에서 정부 출연금 200억 원을 제외한 4,501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38) 기획재정부,「2025년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4. 5, p.266.

39)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결산시기 운용배수는 연도말 수치로, '25년 월별 운용배수 추이를 검토해 보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용배수(배)	13.7	14.0	15.9	14.6	14.8	14.3	14.6	14.5	14.9	14.8	14.4	13.7

자료 : 신용보증기금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수준의 적정 운용배수를 책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적정 운용배수는 10~12배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신용보증기금 측의 설명과 같이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적정 운용배수를 10~12배 수준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일정 수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실제 사고율, 보험금 지급 규모 및 계정 운용실적이 당초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적정 운용배수의 설정 근거와 정부출연금 규모의 산정 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운용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인 추계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운용배수와 정부출연금 규모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재정투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40) '레버리지 민감도'란 운용배수가 높을수록 기본재산 변동의 충격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동일한 기본재산을 가정하는 경우 운용배수가 큰 경우에 기본재산 변동 시 운용배수의 변동 폭이 더 커지게 됨.

구분		CASE 1	CASE 2
인수잔액		1,000억원	3,000억원
기본재산		200억원	
운용배수(A)		5.0배	15.0배
상황		기본재산 30억원 감소시	
	기본재산	170억원	
	운용배수(B)	5.88배	17.65배
운용배수 변동분(B-A)		0.88배	2.65배

자료 : 신용보증기금

필요한 재원의 적정한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015~, 출연 및 보조)은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DX(디지털 전환)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15년 4월 산업통상부에서 8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업의 중복 지적을 해소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일원화하며, 민간·지역 중심의 보급체계 마련 등 조기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음.

2025년도 예산현액은 2,869억 2,300만원이며, 이중 2,869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36,076	286,923	-	-	-	286,923	286,919	-	4	402,056
제조혁신구축지원	221,166	270,141	-	-	-	270,141	270,137	-	4	317,290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11,910	13,782	-	-	-	13,782	13,782	-	-	12,126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3,000	3,000	-	-	-	3,000	3,000	-	-	8,140

□ 검토의견

(1) 사업결과물 유지의무 기한과 활용 점검기한 일치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을 사업종료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시설물은 10년, HW·SW는 5년, 센서는 3년의 존속기한을 부여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추진기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41)]

또한, 사업 결과물의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등이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42)]

---

4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7조(존속기한 및 자료제출 의무) ①도입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총괄기관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본 조 제①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 : 10년
2.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등 솔루션 등 : 5년
3. 센서 등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추진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⑥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제출 시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 활용실태점검을 통해 사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시스템 활용점검

(단위: 건)

지원년도	지원과제수(A)	로그기록 제출 대상과제(B)	활용과제	활용점검 대상과제
2022	5,105	2,226	1,997	229
2023	2,518	390	363	27
2024	2,620	331	301	30
합계	10,243	2,947	2,661	286

주: 1. 로그기록 제출 대상과제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과제 중 ①대중소상생형, ②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③실패과제, ④제출의무경과과제 등을 제외한 과제를 의미
2. 활용점검 대상과제 : 로그기록 제출의무 대상 과제 중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로그기록을 미등록한 과제를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로그기록 제출 대상과제[43] 중 로그기록을 미등록한 과제에 대하여는 활용점검을 실시하여 로그기록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수기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시스템 활용의무 이행이 단기간 내 해결 불가능할 경우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4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기계장치, HW/SW, 솔루션 등은 성질상 모두 로그기록 관리가 가능하나, 민간주도 사업인 대중소상생형 등의 경우 주관기업인 대기업의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해 로그기록 제출 과제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외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의 과제는 별도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하지 않으므로 로그기록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로그기록 제출 제외과제

(단위: 건)

지원년도	로그기록제외	대중소상생	수준확인	진행중	실패, 포기등
2022	2,879	1,081	1,606	21	171
2023	2,128	853	1,250	2	23
2024	2,289	320	1,533	407	29
합계	7,296	2,254	4,389	430	22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활용점검 연도별 주요조치결과

(단위: 건)

지원년도	API 정상전환[1)]	수기등록[2)]	연동예정	특별점검[3)]	해약[4)]
2022	145	25	20	32	7
2023	21	3	1	1	1
2024	21	9	0	0	0
합계	187	37	21	33	8

주 1) API 정상전환은 운영기관 요청 후 단순한 시스템 연동 문제로 정상 연동 전환된 과제를 의미
2) 수기등록은 운영기관 요청 후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로그기록을 수기등록한 과제를 의미
3) 특별점검은 운영기관 개선 요청 후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영악화 등 로그기록 제출이 단기간 해결 불가능할 경우, 협약 위반(사용실태)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의미
4) 해약은 해약절차가 진행중인 과제를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로그기록 의무 제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활용실태 점검을 중단하고, 민원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공백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시설물(10년)과 HW·SW(5년)의 법정 의무유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휴·방치되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축 초기(3년) 성과 관리에만 행정력이 편중되어, 제조 데이터의 중장기적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로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점검이 단절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로그기록 자동제출 의무가 종료되는 3년 이후부터 HW·SW 잔여 존속기한(최대 5년)[44]까지의 공백기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여 모니터링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 사업 결과물의 의무유지 기간과 정부의 활용 점검기한을 상호 연동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적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 성실제출 및 유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DX멘토단 지원, 부품 수리·교체, SW 업그레이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후관리(AS) 성격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유지관리 의무 10년) 지원사업은 미실시중임

6.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111-312)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022~, 출연)는 제조AI센터 중심으로 AI 분석 전문가, 솔루션 공급기업,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AX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60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6,000	6,000	-	-	-	6,000	6,000	-	-	6,000

□ 검토의견

(1) 지역 제조데이터 플랫폼과 '제조AI24' 간 연계·통합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지역에 제조AI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3년간 단계별로 ①AI 허브 설계·구축, 데이터셋·AI솔루션 등 기업지원 성과 확보(1년차), ②AI Agent 개발 등 AI허브 서비스 고도화 및 기업지원 고도화(2년차), ③제조AI 시뮬레이션 구축 등 허브 서비스 안정화 및 AI 시뮬레이션 실증(3년차)을 추진함.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2024년까지 경기 제조AI센터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대구, 울산, 충북에 각각 제조AI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지역별 제조AI센터 개요

구분	소재지	비고
경기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내)	미래차 제조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계요소·소재부품산업 분야의 특화 산업을 대상으로 AI허브 온오프라인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제조AI 거점 마련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쇼룸, PBL 공간 등을 활용하여 AI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 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 내)	융합바이오산업과 AI 기술 간 융합 촉진을 통한 충북 주력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실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에는 각 지역별로 AX플랫폼 허브 조성 등 제조AI센터조성 사업, 기업의 역량유형별 맞춤형 AI 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제조AI 활용문화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음.

2025년 지역별 사업 실적

구분	예산액	지역	실적
지역별 제조 AI센터 조성	3,450 백만원	대구	- 기구축 인프라(서버·공간), MLOps 등을 활용한 온라인 AX 플랫폼 허브 조성 1건 - 기존 공간을 활용한 오프라인 제조AI 실증랩 조성 1건
		울산	- AI 솔루션, 데이터셋 기반 제조AI 접근성 제고 목적의 온라인 허브 1건 - 대외 비공개 데이터셋, 솔루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랩(PBL) 공간 조성 1건
		충북	- AI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AX 플랫폼 허브 조성 1건
기업 지원	2,250 백만원	대구	- 기업의 데이터, 공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량유형별 맞춤형 AI 컨설팅 44건 - 현장문제 분석 및 수요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단일실증 7건 - 범용성·확장성이 높은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교차실증 4건
		울산	-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컨설팅 42건, AI 활용 컨설팅 7건, 공급기업 수준진단 컨설팅 10건 - 제조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효과 검증 21건
		충북	- 융합바이오 산업의 제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개 기업 선정 후 AI 컨설팅 20건, AI 솔루션 실증 컨설팅 20건 종합지원
제조AI 활용 문화 조성	300 백만원	대구	- 제조 AI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산·학·연 협의체 발족 1건, 운영 2회 - 제조AI 홍보를 통한 생태계 확산을 위해 언론보도 4건, 사업홍보 2건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홍보를 위해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전시회 부스 활용 사업 홍보 1건
		울산	- 제조데이터 표준, AAS 국제표준 등 교육을 통한 제조AI 활용 역량 강화 제조혁신협의회 2건, - 제조현장의 AI 적용 사례, 표준화 세미나 등 제조혁신 Day 4건
		충북	- 산·학·연·관과 제조AI센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요부터 환류까지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 3건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2건 - AX사례 등 AI 융합을 주제로 기술교류회 2건 - 충북대학교에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목 개설 2과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완료되면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제조데이터 플랫폼이 완성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경기 제조AI센터 플랫폼(GMAC)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종합 제조데이터 플랫폼인 'KAMP'와 연계되지 못한 채 단순히 홈페이지 내 링크 연결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있음. 향후 대구, 울산, 충북 지역 역시 별도의 플랫폼 허브가 구축될 예정인 만큼, 플랫폼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데이터 활용과 기업 지원 성과가 개별 지역에 머무를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데이터 관리 고도화를 위해 '제조AI24' 플랫폼을 재구성하는 시점에 맞추어, 동 사업으로 수집·관리되는 지역별 특화 제조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5]

(2)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회계연도 내 사업 운영 필요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기관인 지역별 컨소시엄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지역별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됨.

45)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KAMP,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스마트서비스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한 차세대 플랫폼 '제조AI24'의 구축 방향과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으로, 해당 ISP에 4개 지역 제조AI센터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2025년 3월에 공고한 이후 요건검토 및 단계별 선정평가를 거쳐 2025년 6월에 최종 3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에 따라 2025년 사업 수행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은 78.3%에 머물렀고, 충분한 사업 수행기간의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약기간을 당초 '25.6.1. ~ '25.12.31.(7개월)에서 '25.6.1. ~ '26.5.31.(12개월)로 연장하였음.

2025년 사업추진 일정

일정	내용
'25.3.13. ~ 4.14.	사업 모집 공고
'25.4.1. ~ 4.14.	신청 접수기간
'25.4.16.	요건검토
'25.4.21. ~ 4.30.	현장확인
'25.5.12. ~ '25.5.14.	대면평가
'25.5.28.	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교부	교부기관						
					전담기관	집행액 (집행률)	예산 교부	수행기관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111-312)	6,000	6,000	6,000 (100.0)	→ (6,000)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6,000 (100.0)	→ (5,910)	3개 지역별 TP컨소시엄	5,910	4,625	78.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만큼, 선정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회계연도와 불일치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동 사업과 같이 회계연도와 협약기간이 일치하지 않게 운영될 경우, 당해 연도 성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산을 심사하게 되어 국회의 심사기능이 약화되고 사업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추가적인 제조AI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당해연도 예산투입과 연동되지 않은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조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율’로 정하고, 지역 제조중소기업 중 동 사업으로 구축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활용한 건수의 비율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성과지표는 이미 구축이 완료된 경기 제조AI

센터 플랫폼(GMAC)의 데이터셋 다운로드 수와 Use-Case 활용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2025년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제조데이터 지원 서비스 활용률(%)	목표	신규	16.7	18.3	20.1	- 지역특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점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실적 반영 - '23년 목표치를 국내 제조업의 빅데이터 도입 현황(16.7%)*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 연평균 성장률(11.2%)**를 고려하여 목표를 점진적으로 향상 *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1.3.16.) ** 2020 한국 퍼블릭 IT 클라우드 시장 보고서(IDC, 2021)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용 수 / 지역 제조중소기업) x 100
	실적	신규	18.3	26.8	46.8		
	달성도	신규	110	146	2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성과지표는 당해 연도에 투입된 예산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성패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어야 함. 경기 제조AI센터의 경우 2024년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2025년부터는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센터의 활용실적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동 사업이 지역별로 3년 단계별 추진 구조를 가진 연속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도별 사업성과는 해당 연도에 집행된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2025년도 예산의 적

정 집행여부와 사업효과를 면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원이 종료된 경기센터가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대구, 울산, 충북 지역센터의 단계별 구축 진행도나 당해 연도 인프라 조성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투입과 성과달성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별 예산 투입 대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7.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술혁신기반조성’(2001~, 출연 및 보조)은 혁신형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기술보호 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133억 5,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술혁신기반조성	13,359	13,359	-	-	-	13,359	13,359	-	-	43,366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3,941	3,941	-	-	-	3,941	3,941	-	-	7,838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3,500	3,500	-	-	-	3,500	3,500	-	-	5,610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1,407	1,407	-	-	-	1,407	1,407	-	-	1,407
ASEIC 운영	1,575	1,575	-	-	-	1,575	1,575	-	-	1,575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지원	2,936	2,936	-	-	-	2,936	2,936	-	-	2,936
기술사업화패키지	-	-	-	-	-	-	-	-	-	24,000

□ 검토의견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의 법적근거 미흡

내역사업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2023~, 출연)은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확산하고, 정책보험,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내역사업) 추진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액	사업내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2,800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율적인 보안노력을 유도하고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 - 2025년 실적: 선도기업 54개사 지정(누적 223개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160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대응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보험 가입 및 보험료(70%) 지원 - 2025년 실적: 25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540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지원 - 2025년 실적: 10건
합 계	3,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동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피출연기관으로 하는 출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12조[46]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사업은 보조사업과는 달리 반드시 법률상 지원 근거를 필요로 함. 이는 출연사업이 예산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어 출연금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47].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개념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적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법적 개념 정의 없음)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법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상 근거	반드시 법률상 지원 근거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	필수 요소 아님
적용대상	정부 출연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
용도 지정	-기관출연금: 사용 용도 비지정 -목적출연금: 사용 용도 지정	사용 용도 지정 필수
집행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라 처리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사후 정산, 국고 반환 처리
이자수입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라 처리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국고 반환 처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p8

4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47)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2022.5, p10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의 근거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48]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경비 지원의 일반 근거조항에 해당할 뿐으로, 특정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49][50][51]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의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2022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사업방식을 출연에서 보조로 변경한 바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음연도인 2023년에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다시 출연사업으로 신설하였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해당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운영하였음.

---

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9) 「국가재정법」 제12조가 요구하는 법적 근거의 유형: ① 출연의 법적 근거(설립법 또는 설치법)를 갖춘 기관의 설립법 등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 ②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은 아니나 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개별법에 출연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 -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p10

50) 출연의 근거를 규정한 입법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5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에 대해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건[송재봉의원안(의안번호 2215533), 김종민의원안(의안번호 2216367)]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2021~2023년 내역사업 분리 추진내용 비교

2021년 사업내용		2022년 사업내용		2023년 사업내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출연)**	- 기술보호정책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보호지원반 - 공정한기술거래문화조성 - 기술보호상담 - 법사업제도 ·기술분쟁조정중재 ·해외기술보호 ·기술보호인식개선 ·전담기관운영 - 디지털포렌식장비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보조)**	- 기술보호정책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보호지원반 - 공정한기술거래문화조성 - 기술보호상담 - 기술침해사후구제 기반구축 ·기술분쟁조정중재 ·행정조사 - 기술보호지원사업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정책보험** ·기술보호인증제 ·디지털포렌식 ·전담기관 운영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보조)	- 기술보호정책 - 법무지원단 - 기술보호지원반 - 공정한기술거래문화조성 - 기술보호상담 - 기술침해사후 구제기반구축 ·기술분쟁조정중재 ·행정조사 - 기술보호지원사업 ·디지털포렌식 ·전담기관 운영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출연)**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 손해액 산정 지원

자료: 각 회계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보조사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출연사업)은 과거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을 만큼 사업 내용의 유사성이 높음. 유사한 내역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 출연사업으로 운영중인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 사전·사후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연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출연사업으로 편성·운영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의 경우도 기술침해 사후구제 기반구축 및 법무지원단 운영 등 연속적 지원

체계의 구축·유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전주기적 연속 지원 필요성'은 해당 두 사업을 각각 출연과 보조사업으로 이원화하여 편성하는 명확한 구분의 기준이 되기 어려움.

보조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량 확대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집행기관의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집행잔액 반납 등에 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실집행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52]. 국회에 보고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집행률은 100%이지만, 피출연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25년도 사업결과보고서에는 교부금액의 13.5%인 4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교부금액	전기이월금액	집행금액	잔액	발생이자	이월금액
3,500	219	3,251	468	33	472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결과보고(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수행자가 단일 세부사업 내 유사한 취지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행방식을 보조 및 출연으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식임[53].

52)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요약편 p13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출연 형태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R&D)(2136-5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R&D)’(2002~,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기반조성,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수요발굴,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등의 추진을 위해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4]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80억 3,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R&D)	8,032	8,032	-	-	-	8.032	8,032	-	-	8,785
연구개발인건비	5,858	5,858	-	-	-	5,858	5,858	-	-	6,571
연구개발경상경비	1,142	1,142	-	-	-	1,142	1,142	-	-	1,142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1,032	1,032	-	-	-	1,032	1,032	-	-	1,072

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의견

(1) 자체수입이 없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재검토 필요

동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 등에 대해 자체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지출 예상액 228억 400만원 중 자체수입 예상액 147억 7,200만원을 차감한 80억 3,2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함.

202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5년 결산	비고
수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B-A)	8,032	8,032	
	▪ 기관자체수입(A)	**14,772**	**14,844**	· 위탁사업수입(14,561) · 이자수입(12), 잡수익(6) · 이월결산잉여금(264)
합계		22,804	22,876	
지출 (B)	▪ 인건비	18,793	18,670	
	▪ 경상비	1,195	1,195	
	▪ 사업비	2,382	2,382	
	▪ 예비비(경평성과급)	434	4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체수입 결산액 148억 4,4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세출 예산사업의 운영비 성격의 자금이며, 나머지는 해당 계좌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잡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자체수입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5년 예산	’25년 결산
중기부 출연·보조사업 운영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	1,130	1,1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9,693	9,69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	1,356	1,356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제조혁신구축	1,290	1,529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104	104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97	97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178	178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48	48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220	22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60	60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50	50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96	96
이자수입			4	12
잡수입			13	6
이월결산잉여금			433	264
합 계			14,772	14,8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

의 지출예산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등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기준으로 ①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되, ②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5]

2025년도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 (62개)

출연기관 (37개)	보조기관 (25개)
국가철도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민체육진흥공단(본부)
국립생태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도로교통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예술의전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5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4~25쪽

출연기관 (37개)	보조기관 (25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관 설립 초기('03년)부터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왔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명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다만,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지정된 초창기에는 디지털경영센터(DMC)운영 교육수수료,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위탁운영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자체사업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체사업 수입 현황('07～'18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디지털경영센터(DMC)운영 교육수수료	292	281	-	-	-	-	-	-	-	-	-	-
APEC센터 위탁운영수입 (컨퍼런스행사 개최 및 교육·컨설팅 등)	73	96	-	-	-	-	-	-	-	-	-	-
기업혁신진단평가점검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	84	-	-	-	-	-	-	-	-	-	-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	41	-	-	-	-	-	-	-	-	-	-
중소기업협업 컨설팅사 참여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	19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조사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14	-	-	-	-	-	-	-	-	-	-	-
국가통계품질진단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80	108	61	-	-	-	-	-	-	-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현장평가 위탁연구조사용역수입	-	54	57	-	-	-	-	-	-	-	-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IMS) 수수료	10	27	30	306	221	31	119	127	75	49	40	21
온라인구매지원 시스템 운영수입	-	-	-	-	-	-	6	73	84	118	72	-
합계	469	711	148	306	221	31	125	200	159	167	112	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현재 정부의 14개 법정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인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탁 R&D 사업 외에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음.[56)]

56) 주요 자체수입항목: 한국임업진흥원(시험분석수수료, 교육수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스튜디오 대관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표지 인증수수료 수입, 인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입대

14개 법정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관 부처	근거 법률
수지차 보전기관 해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지차 보전기관 미해당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025.3.28.)을 바탕으로 작성

수지차 보전제도는 기관의 자체수입 규모를 우선 파악한 후 부족한 소요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 및 국회의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인 자체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함. 그러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편성과

수입 등)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직접 확정되므로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자체수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수지차 보전방식 지원 기관에서 해제하고 일반적인 출연 방식 등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57][58]

57) 2017~2024년 동안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해제된 경우로는 13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자체수입 없음”의 사유로 해제된 기관은 4개 기관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8) 수지차 보전기관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인건비·경상비, 지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자체수입의 구조와 산정방식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시 이러한 자체수입 검토 단계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9.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수출지원기반활용’(1999~, 보조)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에는 본예산 1,275억 6,0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98억원을 추가 계상한 예산현액 2,173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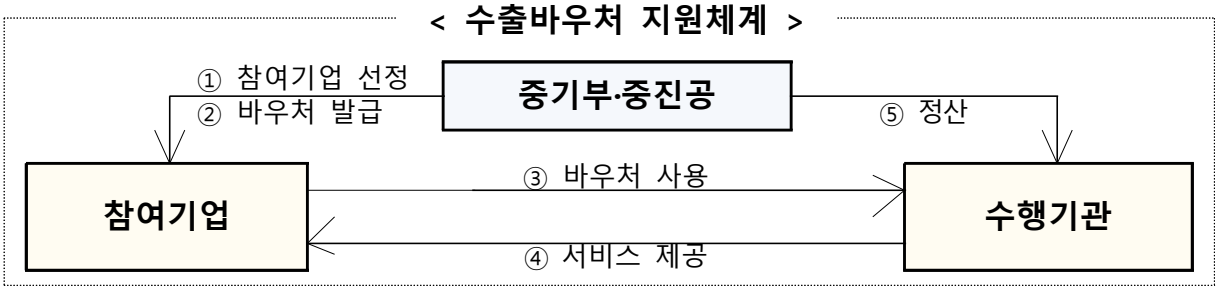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	127,560	217,360	-	-	-	217,360	217,360	-	-	150,203

□ 검토의견

(1) 수출지원기반활용 보조사업 보고 및 정산의 적시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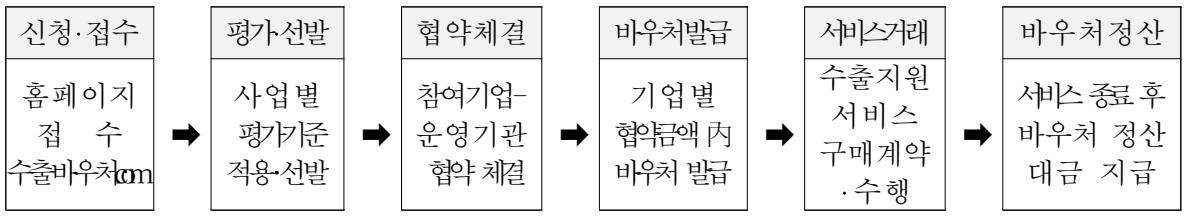
동 사업은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관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계획 수립, 운영기관 모집·선정 등을 진행하고, 세부 분야별로 선정된 운영

기관이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의 모집·관리, 참여기업(바우처 사용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수행하며, 이후 참여기업이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에 바우처 이용대금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59]에서 수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60]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59)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

60)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관세대응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서비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업이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면 사후 정산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비 정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이 매년 다음 연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보고 및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사업의 바우처 사용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회계연도를 초과함에 따라 정산 완료 시점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수출지원기반활용 실집행 및 정산 일정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3차
모집 공고	23.1.27.	23.5.10.	24.1.23.	24.6.17.	24.12.30.	25.4.10.	25.5.20.
신청기간	23.1.16. ~23.2.2.	23.7.1. ~24.3.31.	24.1.23. ~24.2.13.	24.6.17. ~24.7.4.	25.1.7. ~25.1.23.	25.4.10. ~25.4.21.	25.5.20 ~25.5.30
선정일	23.3.31.	23.6.30.	24.4.29.	24.8.30.	25.4.14.	25.5.21.	25.7.18
바우처 사용기간	23.4.1. ~23.12.31. (9개월)	23.7.1. ~24.1.31. (7개월)	24.4.1. ~24.12.31. (9개월)	24.7.1. ~25.1.31. (7개월)	25.3.1. ~25.11.30. (9개월)	25.4.1. ~25.12.31. (9개월)	25.6.1 ~26.2.28 (9개월)
바우처 정산기간	23.4.1. ~24.7.18.	23.7.1. ~24.7.1.	24.4.1. ~25.8.14.	24.7.1. ~25.8.7.	25.3.1. ~진행 중	25.4.1. ~진행 중	25.6.1. ~진행 중
실적보고서 제출일	24.8.27.	24.8.27.	25.8.28.	25.8.28.	-	-	-
정산보고서 제출일	24.8.27.	24.8.27	25.8.28.	25.8.28.	-	-	-
사업비 잔액 반납금 수납일	24.8.29.	24.8.29.	25.9.16.	25.9.16.	-	-	-

* 25년도는 현재 정산 진행 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6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62]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은 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를 각각 독립적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사유 중 하나의 사유만 발생하더라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63]

즉, 보조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의 보조사업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보조금 관계 법령의 취지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및 정산을 적시에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리·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계·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가 아닌 사업 수행 종료 이후에야 최종 사업실적 보고, 정산보고 및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결산심사 시점에도 보조사업의 성과 및 정산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 심사를 연계한 재정점검에 어려움이 있음.[64]

---

6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부처별 Ⅳ)」, 2023, pp.43~43.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산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4)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참여기업의 모집공고와 사업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바우처 사용기간을 참여기업에게 정확히 안내하여 참여기업의 사용기간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바우처 사용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10.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장애인기업 육성’(2007~, 보조)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피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임.

2025년 예산액은 105억 9,7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장애인 창업육성’ 31억 6,000만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30억 7,800만원 등 3개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05억 1,100만원임.

2025년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장애인기업 육성	10,597	-	-	-	-	10,597	10,597 [10,511]	-	-	13,801
장애인 창업육성	3,169	-	-	-	-	3,169	3,169 [3,160]	-	-	3,019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3,095	-	-	-	-	3,095	3,095 [3,078]	-	-	6,225
센터운영	4,333	-	-	-	-	4,333	4,333 [4,273]	-	-	4,557

□ 검토의견

(1) 종합적인 사업효과 파악이 가능한 적정 성과지표 발굴 필요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은 ①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육성’ 사업, ②장애인기업의 경영·기술·판로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 ③전국 16개 센터의 창업보육실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운영’ 등 3개 내역사업과 다수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장애인기업 육성	10,597	10,511	99.2
① 장애인 창업육성	3,169	3,160	99.7
- 장애인 맞춤형창업교육	674	674	100.0
- 창업사업화지원	1,240	1,240	100.0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55	55	100.0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1,200	1,191	99.3
②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3,095	3,078	99.5
- 수출역량강화	552	510	92.4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2	132	100.0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420	378	90.0
- 기술사업화	859	901	104.9
· 시제품 제작지원	459	435	94.8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400	466	116.5
- 공공구매촉진	1,264	1,247	98.7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50	163	108.7

구분	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업무지원인 서비스	200	186	93.0
· 판로지원시스템	154	154	100.0
· MAS컨설팅 및 등록	130	118	90.8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140	140	100.0
· 공공구매 제도운영(장애인기업 확인)	394	390	99.0
·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96	96	100.0
- 장애인기업정책조사연구	420	420	100.0
③ 센터 운영	**4,333**	**4,273**	**98.6**
- 지역센터 운영	898	874	97.3
- 센터 인건비	2,956	2,921	98.8
- 센터 관서운영비	184	183	99.5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95	295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장애인 창업률'로서, 당해연도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생 대비 창업자 비율을 측정산식으로 하고 있음.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애인 창업률 (%)	목표	43.4	43	50.9	53.4	59.9	최근3개년 ('22~'24년) 연평균실적치에 (52.1%) 연평균증가율 (15.0%) 고려하여 26년 목표치 설정	(B/A)×100 - A : 당해년도 창업컨설팅프로그램 수료생 수 - B : 당해년도 창업컨설팅프로그램 수료생 중 창업자 수	사업자등록증 확인/사업결과보고서
	실적	45.1	51.7	59.6	56.1	-			
	달성도	103.9	120.2	117.1	105.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재정법」 제85조의6[65]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202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정책이나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함.

내역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창업육성'의 내내역사업은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사업화자금 지원·창업아이템 경진대회·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맞춤형 창업교육의 경우 장애인 예비창업자·3년 미만 초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특화교육·창업컨설팅 등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65)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맞춤형 창업교육 내내역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 기반 강화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지원내용		·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아카데미
	온라인교육	· 장애인 교육지원시스템(창업-NET)을 활용하여 창업이론 교육(기초, 역량,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 및 유관기관 콘텐츠 상시 제공
	특화교육	·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발달), 청년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교육 대상을 유형화하여 특화된 창업 아이템 교육(이론, 실습, 멘토링 등) 지원
	창업컨설팅	· 창업단계(예비, 초기, 재기)에 따른 사업계획, 마케팅, 경영안정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1:1 매칭을 통한 상담 지원
	아카데미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창업, SNS마케팅, 투자유치 전략 등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통한 기초역량 강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맞춤형 창업교육 추진 실적

구분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아카데미	총 실적
수료생(A)	1,545명	93명	366명	71명	2,075명
창업자(B)	185명	6명	129명	7명	327명*
창업률(B/A)	12.0	6.5	35.2	9.9	15.8

*중복 포함인원임. 중복 제외시 191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당해연도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생 중 창업자 수로 산출되는데, 이는 맞춤형 창업교육을 구성하는 다수의 내내역사업 중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에 한정된 실적만을 반영하는 것임. 실제로 2025년 맞춤형 창업교육 전체 수료생 2,075명 중 창업컨설팅 수료생은 366명(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온라인교육·특화교육·아카데미 수료생 1,709명의 창업 성과는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전반의 성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출지원·판로확대 등 장애인기업의 육성 및 성장기반 구축과 관련된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66]에서도 현재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워 사업효과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부사업 전체를 대표하거나 내역사업별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를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음.

동 사업은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창업 단계에 편중된 단편적 지표에서 벗어나 창업 이후의 생존율 및 경영성과 개선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를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66)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2025. 9., pp. 2591-2596.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창업육성’ 내역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등 세부사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834-305)

□ 사업 및 결산 개요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2005~, 직접 및 출연)은 경영 개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정책 안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및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중소기업콜센터 운영’, ‘기업애로 전문가상담’, ‘현장클리닉 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 109억 9,700만원 중 109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5년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10,997	10,997	-	△814 814	-	10,997	10,977	-	20	11,066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운영	4,175	4,175	-	△67 67	-	4,175	4,169	-	6	4,244
기업애로전문가상담	3,821	3,821	-	△747 747	-	3,821	3,807	-	14	3,821
현장클리닉	3,001	3,001	-	-	-	3,001	3,001	-	-	3,001

□ 검토의견

(1)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1357 콜센터 힐링캠프 예산 집행 문제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콜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콜센터(1357)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및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 창업, 정책자금, R&D, 수출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안내와 기업애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챗봇상담을 통해 단순·반복 질의에 즉시 대응하고 있음.

2025년 중소기업콜센터 상담은 전화상담 61만 5,330건, 카카오톡 채팅상담 8,720건으로 대부분의 상담이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5년 중소기업콜센터 분야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 분	금융	인력	창업벤처	기술(R&D)	판로수출	컨설팅	소상공인	기타	타부처	누계
전화상담	44,836 (7.3%)	3,511 (0.6%)	41,191 (6.7%)	67,350 (10.9%)	86,949 (14.1%)	2,460 (0.4%)	327,935 (53.3%)	28,606 (4.7%)	12,492 (2.0%)	615,330 100%
채팅상담	1,711 (19.6%)	56 (0.6%)	713 (8.2%)	4,178 (47.9%)	392 (4.5%)	364 (4.2%)	1,092 (12.5%)	100 (1.2%)	114 (1.3%)	8,720 (1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중소기업콜센터의 상담사 인원은 2025년말 기준 71명으로, 실제 상담을 수행한 상담사를 기준으로 1인당 일평균 153분동안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년간 1357 콜센터 운영현황

구 분		'21	'22	'23	'24	'25
근무일수		249	247	247	246	244
인입콜수		1,267,049	1,016,349	889,404	909,867	774,723
상담건수	연간	1,007,383	793,478	715,522	774,875	615,330
	응대율*	79.5%	78.1%	80.4%	85.2%	79.4%
	월평균	83,948.6	66,123.2	59,626.8	64,573	51,278
	일평균	4,045.7	3,212.5	2,896.9	3,149.9	2,521.8
	1인당 일평균(건) (전체인력기준**)	62.5	66.8	59.9	62.8	63.0
	1인당 일평균(건) (상담사/ PO기준***)	64.7 (76.3)	48.1 (65.0)	48.4 (60.1)	50.2 (63.2)	40.0 (54.6)
통화시간	1인당 일평균(분) (상담사/ PO기준)	188 (225)	138 (197)	140 (180)	145 (186)	111 (153)
상담인력	전체	81	81	81	81	81
	상담사(현원)	71	71	71	71	71
	관리자	10	10	10	10	10

주) * 응대율 : 인입콜 대비 실제 응대 처리한 비율
** 전체인력기준 : 상담사+관리자 전체 81명 기준
***상담사/PO 기준 : 실제 상담 수행 인력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사기 진작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하여 2023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위탁 실시하고 있음.

2024년, 2025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힐링캠프 개요

2024년도 힐링캠프 개요

- ○ 일시 : 1차 10. 11.(금) ~ 12(토) / 2차 10.18.(금) ~ 19(토)
- ○ 장소 : 충남 예산 일대 (스플라스 리솜)
- ○ 참석자 : 1357콜센터 상담사 등 61명
- ○ 소요예산 : 35,000,000원

2025년도 힐링캠프 개요

- ○ 일시 : 1차 11. 14(금) / 22차 11.21(금)
- ○ 장소 : 충남 서천군 일원
- ○ 참석자 : 1357콜센터 상담사 64명 참석
- ○ 소요예산 : 17,780,000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힐링캠프 개최를 위하여 별도의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210-01목)를 감액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를 확보한 후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 편성 내용 및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이후 매년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를 보면 2023년 4,000만원, 2024년 3,500만원, 2025년 1,800만원이 각각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 2025년 힐링캠프 개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3.9.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01 (일반수용비)	40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14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2024.7.3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01 (일반수용비)	3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14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2025.10.30)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01 (일반수용비)	18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210-14 (일반용역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여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세목조정'은 동일한 '목'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목 간 금액의 증감은 발생하더라도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집행지침 또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경비, 인건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음[67].

그러나 비목의 구분은 재정지출의 목적, 대상 및 집행방식 등을 명

67) 기획재정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395.

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편성된 비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비목별로 부여된 지출한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소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는 2023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온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의 발생에 따른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힐링캠프를 개최하여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콜센터 운영' 내역사업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만을 편성[68]하고 있어, 세목조정을 통한 힐링캠프 위탁 실시가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추진 예정 사업의 내용과 집

68) 2026년도 중소기업콜센터 운영 내역사업에는 총 1억 1,50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음.

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비목에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목조정을 지양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취득비 집행의 연도말 편중 지양

‘중소기업콜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2,600만원의 자산취득비(430-01목)를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그런데 자산취득비 예산의 집행 시기를 보면 전액 연도말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액	세목	건명
2025-12-22	7,200,000	자산취득비(430-01)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무용품 구매(모니터)
2025-12-22	2,610,000	자산취득비(430-01)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무용품 구매(문서세단기)
2025-12-22	5,145,000	자산취득비(430-01)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무용품 구매(작업용의자)
2025-12-22	11,024,000	자산취득비(430-01)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무용품 구매(작업용의자)
계	25,979,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집행한 자산취

득비는 1357 콜센터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상담 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모니터, 작업용 의자 등을 구입하였으며, 연초에 예산을 집행할 경우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이나 추가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연도말에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69].

이는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도말에 집중될 경우 계획에 없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 내 불필요한 자산을 구매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연도말 집중 집행은 구매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검수·자산관리 등의 절차 역시 단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해당 자산취득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를 위한

69) 기획재정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225.

예산으로서, 장비의 노후도와 교체주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연간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며, 연중 예기치 못한 장비 고장이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 전액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노후 장비 교체 수요와 예상 고장 현황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4835-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1999~, 직접수행 및 보조)은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수요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수행기관에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613억 8,600만원이며, 이중 61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61,386	61,386	-	-	-	61,386	61,377	-	9	65,234

□ 검토의견

(1) 운영비 비중 절감 및 사업전달체계 개편 필요

동 사업을 통한 2025년 바우처 지원 건수는 3,535건으로, 2025년 예산액 증가의 영향으로 2023년 2,638건, 2024년 2,967건에 비해 지원 건수가 확대되었음.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제품제작(기술지원 분야)과 광고지원(홍보물 제작 포함)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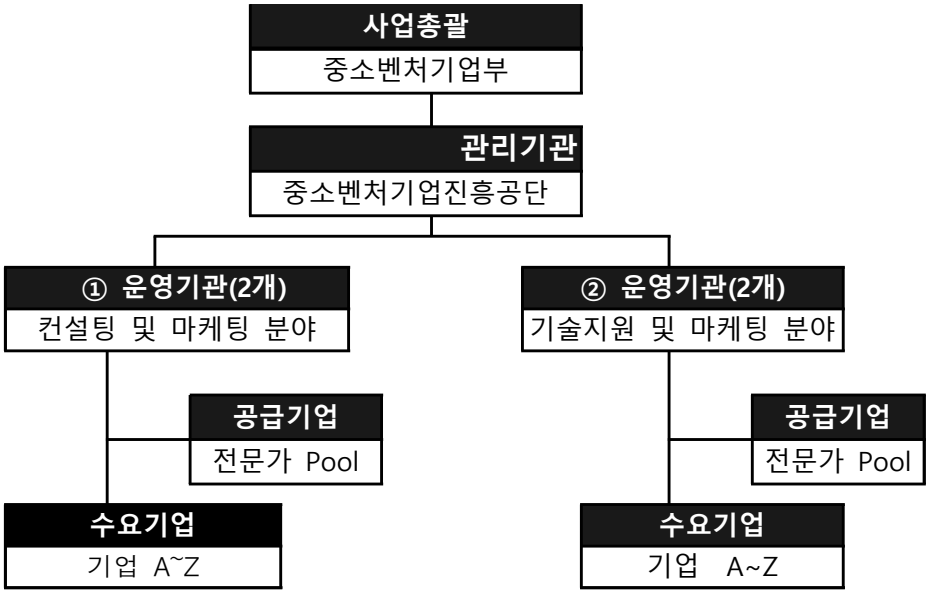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분야	프로그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198	2,395	224	2,702	393	4,220
	융복합	72	1,119	85	1,020	-	-
	제조혁신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32	404	47	533	-	-
	ESG컨설팅	127	1,825	-	-	-	-
	안전보건 및 규제 대응	22	246	-	-	-	-
	중대재해예방	-	-	217	2,720	149	1,739
	탄소중립 경영혁신	274	2,972	315	3,287	339	3,451
	소계	725	8,961	888	10,262	881	9,410
기술 지원	AX·DX추진전략	-	-	-	-	8	159
	시제품제작	**543**	**13,735**	**620**	**16,344**	**750**	**18,084**
	시스템 및 시설구축	99	1,778	136	2,546	151	2,840
	IP기반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67	857	86	1,160	115	1,373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127	1,668	110	1,468	198	2,331
	기술지원(탄소)	316	9,603	315	8,917	337	7,922
	소계	1,152	27,641	1,267	30,435	1,559	32,709
마케팅	디자인 개선	106	1,224	103	1,278	94	1,172
	브랜드 지원	76	1,274	85	1,460	102	1,650
	홍보물 제작	**-**	**-**	**-**	**-**	**626**	**8,977**
	광고 지원(홍보지원)	**579**	**9,070**	**624**	**10,005**	**273**	**4,144**
	소계	761	11,568	812	12,743	1,095	15,943
합계		2,638	48,170	2,967	53,440	3,535	58,0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이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공급기업을 선택하여[70]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사업추진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구체적인 사업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관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공고를 한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참여하는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바우처를 발급함. 이후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등 사전에 선정된 운영기관이 수요기업·공급기업과 함께 3자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품질 관리,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등을 수행함.

70) 2025년 기준 등록 수행기관은 2,462개사(중복제거)로, 수행기관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www.mssmiv.com)에 게재되어 있음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성과분석 - 신청접수·평가·선정 - 사업비 관리, 사후관리
운영기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세부 분야별 수행기관 Pool 관리 - 수요기업-공급기업 연계 - 사업비 정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운영비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운영비는 55억 4,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과거 대비 비중이 약 1%p 상승한 수치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유사 바우처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운영비 비중(4.6%)과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준임.

전체 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비(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926	2,867	3,436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59	234	355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59	234	357
	한국산학연협회	653	686	699
	중소기업유통센터	509	526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694
	소계	4,606	4,547	**5,541**
사업비(B)		50,999	51,058	55,645
운영비 비중[A/(A+B)]		8.3%	8.2%	**9.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사업 운영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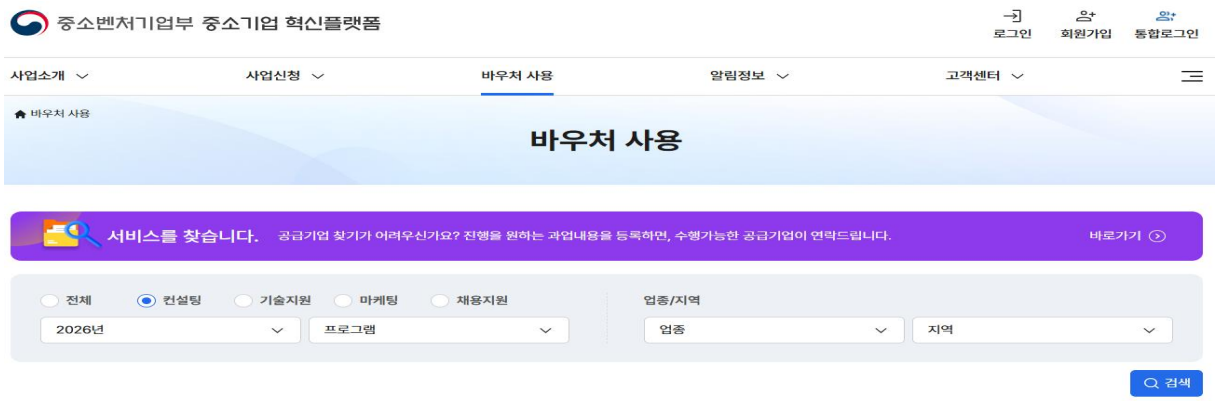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운영기관	2023			2024			2025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비중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비중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비중
혁신바우처	중진공	4,606	50,999	8.3	4,547	51,058	8.2	5,541	55,645	9.1
수출바우처	중진공	6,107	119,538	5.1	7,897	111,692	7.1	10,063	217,192	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을 관리하는 중소기업 혁신플랫폼에서는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기업 정보를 분야별·업종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수요기업이 적절한 공급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 진행하고자 하는 과업 내용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수행 가능한 공급기업이 역으로 매칭을 제안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임. 이와 함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단위의 수요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등 지방청을 통한 현장 밀착형 사업 관리도 병행되고 있음.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공급기업 정보 분류



자료: 중소기업 혁신플랫폼(https://www.mssmiv.com/portal/menupan/MenupanList)

2025년도 운영기관별 운영비 사용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수용비·임차료·공공요금 등의 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사업비 중 사업운영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실질적인 지원예산은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전달체계 개편 및 비효율성 점검을 통해 적정한 운영비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운영기관별 운영비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비목	편성액	집행액	잔액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인건비	257	256	1
	운영비	84	84	-
	여비	9	9	-
	업무추진비	4	4	-
	소계	354	353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인건비	250	246	4
	운영비	92	92	-
	여비	8	8	-
	업무추진비	7	7	-
	소계	357	353	4
한국산학연협회	인건비	489	489	-
	운영비	205	205	-
	여비	5	5	-
	업무추진비	-	-	-
	소계	699	699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인건비	485	485	-
	운영비	206	205	1
	여비	3	2	-
	업무추진비	-	-	-
	소계	694	692	1
합계		2,105	2,099	6

주: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의 합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공급기업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플랫폼을 통한 공급기업 정보 제공, 사업운영기관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수요발굴 등 다각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실제 사업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여 공급망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체 등록 업체 2,462개 중 60.2%에 달하는 1,482개 기업은 바우처 사업을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반면, 최다 수행 공급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111건의 사업을 수임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2023~2025년) 공급기업의 사업 수행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행 횟수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0회	465	921	645	2,031 (1,680)	587	1,129	843	2,559 (2,148)	417	813	538	1,768 (1,482)
1~5회	161	506	339	1,006 (897)	179	515	306	1,000 (898)	164	490	303	957 (837)
6~10회	16	14	21	51 (54)	13	12	26	51 (59)	18	27	39	84 (87)
10~20회	6	6	8	20 (20)	6	11	8	25 (22)	10	9	18	37 (35)
20회 초과	5	4	3	12 (13)	7	5	5	17 (16)	4	8	5	17 (21)
합계	653	1,451	1,016	3,120 (2,664)	792	1,672	1,188	3,652 (3,143)	613	1,347	903	2,863 (2,4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최다 수행 공급기업 수행이력

구분	일반	중대재해[1)]	지역자율형[1)]	지역특화[1)]	탄소[1)]	합계
기술지원	4	3	-	-	14	21
마케팅	2	-	-	-		2
컨설팅	2	17	1	1	67	88
합계	8	20	1	1	81	111

주: 수요기업 모집시 바우처 사용 분야를 정책적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분야 외에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등의 분야를 별도 모집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전체 바우처 지원 건수가 총 3,535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기업이 과도한 물량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구조는 서비스 공급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바우처 사업 전반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다양한 공급기업(민간역량)을 활용하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의 적격성 검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기업이 우수한 공급기업을 원활하게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사업화지원’(2009～)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75억 6,700만원 중 4,575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5년도 창업사업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사업화지원	403,567	457,567	-	-	-	457,567	457,564	-	3	461,838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30,996	142,996	-	-	-	142,996	142,996	-	-	145,622
창업패키지	162,255	204,255	-	-	-	204,255	204,255	-	-	195,187
창업중심대학	77,475	77,475	-	-	-	77,475	77,472	-	3	88,250
창업지원사업 관리	32,841	32,841	-	-	-	32,841	32,841	-	-	32,779

□ 검토의견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속적 정책패키지 연계강화 필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역사업은 AI 등 초격차 10대 분야[71]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발하여 사업화,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초격차 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현액 1,429억 9,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초격차 10대 분야 우량 기업에 매년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매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 개요

○ (개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스타트업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자금 및 연계 지원
○ (추진체계) 총 3단계로 지원, 단계별 평가를 통해 매출액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상위 10% 이내 스타트업은 다음 단계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72]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 상용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 및 확산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절 없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므로, 정책패키지 간 연계성과 참여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1) ❶ 시스템반도체 ❷ 바이오·헬스 ❸ 미래 모빌리티 ❹ 친환경·에너지 ❺ 로봇 ❻ 빅데이터·AI ❼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❽ 우주항공·해양 ❾ 차세대원전 ❿ 양자기술

72) 딥테크(Deep Tech) 란 첨단 과학·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함.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연계 지원실적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수행 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채택[73]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연계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함.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과의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수행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25년 연계 지원현황을 보면 전 영역에서 2023년 대비 지원율이 상승했고 특히 R&D는 14.9% → 59.8%로 지원율이 4배 가깝게 오른 것으로 확인됨.

7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11.

연도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3			2024			2025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정책자금 (투자유치)*	275	40	14.5	503	73	14.5	577	213	36.9
기술보증		39	14.2		199	39.6		221	38.3
R&D		41	14.9		327	65.0		345	59.8
수출바우처		27	9.8		79	15.7		154	26.7

주: 기업의 재무 상황 등 역량과 필요성에 따라 투자 수요에 비해 정책자금 수요가 부족하여 연계지원내용을 '투자유치'로 다각화하여 VC 멤버십, 글로벌 IR 등 프로그램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상세)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정책자금(투자유치)			기술보증		
		지원기업 (B1)	지원율 (B1/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2)	지원율 (B2/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30	45.5	17,796	16	24.2	1,287
바이오헬스	118	54	45.8	6,890	58	49.2	1,537
미래 모빌리티	75	30	40.0	3,793	26	34.7	1,029
친환경에너지	93	27	29	3,061	37	39.8	1,095
로봇	77	29	37.7	6,024	29	37.7	1,297
빅데이터·AI	65	19	29.2	8,122	21	32.3	2,700
사이버보안·네트워크	41	10	24.4	6,132	16	39.0	880
우주항공·해양	22	8	36.4	11,711	10	45.5	2,439
차세대원전	10	1	10.0	11,200	6	60.0	1,602
양자기술	10	5	50.0	4,321	2	20.0	768
계	577	213	36.9	7,905	221	38.3	14,634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R&D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B3)	지원율 (B3/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4)	지원율 (B4/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48	72.7	264	13	19.7	35.9
바이오헬스	118	59	50.0	232	20	16.9	33.7
미래 모빌리티	75	52	69.3	254	17	22.7	32.3
친환경에너지	93	61	65.6	237	20	21.5	34.7
로봇	77	46	59.7	341	27	35.1	27.8
빅데이터·AI	65	36	55.4	265	26	40.0	33.5
사이버보안·네트워크	41	15	36.6	237	22	53.7	34.5
우주항공·해양	22	14	63.6	235	5	22.7	31.2
차세대원전	10	7	70.0	247	2	20.0	63.4
양자기술	10	7	70.0	258	2	20.0	29.7
계	577	345	59.8	260	154	26.7	35.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을 본예산 대비 120억원(9.2%) 증액한 바 있고, 추경안은 AI 스타트업 중 핵심 AX 도메인 50개사, AX 컨소시엄 40개사, AI 링크업 30개사 등 총 12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1억원씩 총 120억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인공지능 대전환(AX)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LLM 보유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실증 등을 지원하는 'AI 링크업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18.2:1로 집계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가 확인됨.

따라서 추경을 통해 선정된 기업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향후 AI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 및 판로 개척까지 확대·연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5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세부내역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2,000	① 핵심 AX 도메인 스타트업 육성: 100백만원 × 50개사 = 5,000백만원 ② AX 컨소시엄 지원: 100백만원 × 40개사 = 4,000백만원 ③ AX 링크업(협업): 100백만원 × 30개사 = 3,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도메인 AX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메인(바이오, 금융, 스마트 농업 등) AX 스타트업 특화 지원
AX 컨소시엄	기업, 언론 등 다양한 도메인 기업 간 체결한 범용 활용성이 높은 AX 컨소시엄 과제 선별, 사업화 지원
AI 링크업	국내 LLM* 활용 B2B 협업 및 글로벌 대기업 등과 AX 스타트업 간 특정 제품 등에 버티칼 AI 탑재 협업 등 추진

주: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유사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갖춘 AI 모델을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은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성공할 경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스타트업(모방형 스타트업, 기존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비해 연구개발 위험(R&D risk)[74], 시장-제품 위험(market-product risk)[75]이 높은 고위험·고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초기 자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초기 및 후속 투자, 규제 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76].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연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74) 기술 상용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말함.
75)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함.
76) 김정호, 「딥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2023.6, pp. 101-102.

14.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민관협력창업자육성’(2013~)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 2,082억 8,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민관협력창업자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8,281	208,281	-	-	-	208,281	208,281	-	-	239,856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113,281	113,281	-	-	-	113,281	113,281	-	-	123,656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20,000	20,000	-	-	-	20,000	20,000	-	-	24,200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53,000	53,000	-	-	-	53,000	53,000	-	-	60,000
아기유니콘 육성	22,000	22,000	-	-	-	22,000	22,000	-	-	-
유니콘 브릿지	-	-	-	-	-	-	-	-	-	32,000

□ 검토의견

(1) 수도권 중심 운영사 편중 완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균형발전 지원 필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TIPS)[77]은 민간 투자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투자한 이후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창업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32억 8,100만원이고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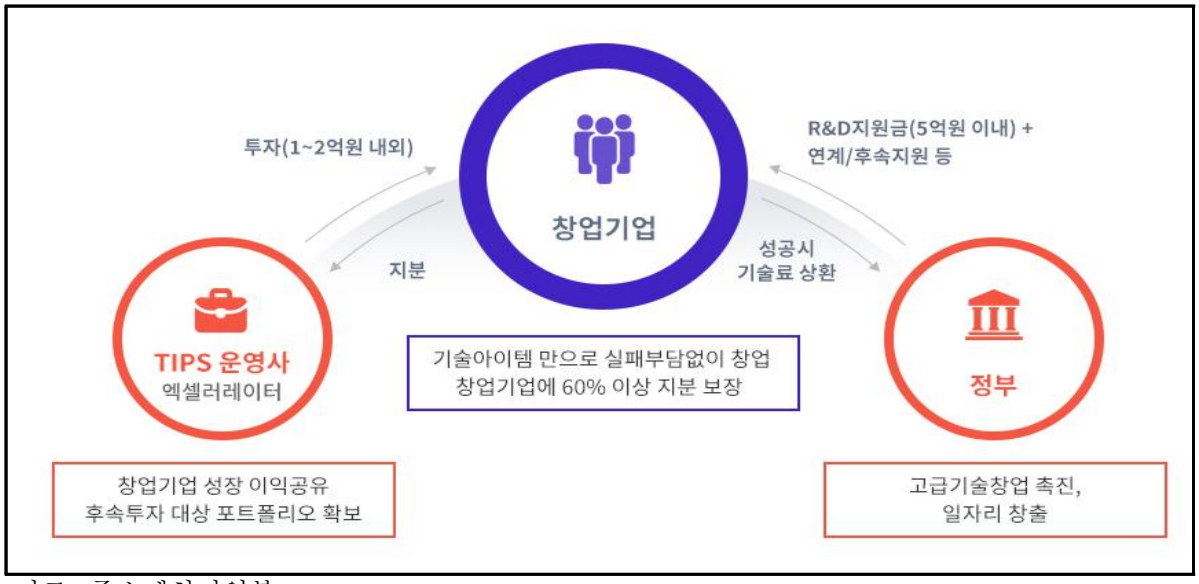
○ 2025년도 예산: 113,281백만원 -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65,180백만원) : 650개사 * 100백만원 - 프리팁스[78](5,000백만원) : 50개사 * 100백만원 - 포스트팁스[79](27,720백만원) : 77개사 * 360백만원 - 글로벌팁스(10,000백만원): 50개사 *200 - 팁스타운 운영비(5,381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先)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매칭하여 R&D, 사업화, 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임.

77)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78) 프리팁스(Pre-TIPS):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 엔젤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79) 포스트팁스(Post-TIPS): 팁스 성공기업에 대한 상용화·해외진출·마케팅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팁스 이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을 2년간 최대 7억원 지원

TIPS 프로그램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는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TIPS 선정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 역할을 수행하는 TIPS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재원 및 실적, 지원인프라, 프로그램 등 초기 기술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TIPS 운영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운영사에 가점(3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운영사 선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음.

팁스 운영사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서면평가 (50%)	투자역량(35)
	보육역량(40)
	BI 인프라(25)
대면평가 (50%)	사업역량(60)
	창업기업 지원방안(40)
가점 (최대 5점)	① 운영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3점) ② 운영사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인 경우 또는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한 경우(2점) ③ 해외법인기관이 운영사와 함께 창업기업 투자에 참여할 경우(2점) ④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 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로 신청하는 경우(1점) ⑤ 운영사가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경우(1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비수도권 팁스 운영사 선정 현황(누적)

(단위: 개사,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수 (개사)	수도권	4	11	16	20	28	33	41	44	48	59	76	85	98
	비수도권	1	2	5	9	10	11	15	16	18	22	29	37	51
	합 계	5	13	21	29	38	44	56	60	66	81	105	122	149
비중 (%)	수도권	80.0	84.6	76.2	69.0	73.7	75.0	73.2	73.3	72.7	72.8	72.4	69.7	65.8
	비수도권	20.0	15.4	23.8	31.0	26.3	25.0	26.8	26.7	27.3	27.2	27.6	30.3	34.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운영사 실적을 보면 투자액만 일부 차이를 보일 뿐 추천권 소진율 및 TIPS 최종선정률 모두 비수도권 운영사가 수도권 운영사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아래 표와 같이 추천권 소진율은 비수도권 85.7%(1,764개 중 1,512개 소진), 수도권 82.6%(4,714개 중 3,894개 소진)로 비수도권이 3.1%p 높고, TIPS 최종선정률은 비수도권 84.2%(1,512개 중 1,273개 선정), 수도권 81.7%(3,894개 중 3,181개 선정)로 역시 비수도권이 2.5%p 높으며, 기업당 투자액은 비수도권 2억 1,300만원, 수도권 2억 4,600만원으로 비수도권이 3,300만원 낮음.

수도권-비수도권 팁스 추천 및 선정 실적(누적)

(단위: 개, %, %p, 백만원)

구 분	추천권 보유건수	추천권 소진건수	추천권 소진율	누적 투자액	기업당 투자액	팁스 선정건수	팁스 선정률
수도권(A)	4,714	3,894	82.6	781,060	246	3,181	81.7
비수도권(B)	1,764	1,512	85.7	271,583	213	1,273	84.2
차이(A-B)	2,950	2,382	△3.1	509,477	33	1,908	△2.5
합 계	6,478	5,406	83.5	1,052,643	459	4,454	82.4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TIPS 실적에서 비수도권 운영사가 수도권 운영사보다 우수하거나 대등한 수준인데도 운영사 선정시 수도권 편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물론 TIPS는 민간 투자사의 전문성과 투자역량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지역 안배를 목적으로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사의 투자실적과 보육역량이 사업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는 필수적임.

다만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기회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생태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투자기관과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 투자역량을 갖춘 운영사의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수도권 운영사의 투자역량 강화, 공동운영 모델 확대, 지역 특화산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이 양질의 투자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 활성화를 통한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TIPS는 운영사 엔젤투자에 매칭한 재정투입으로 벤처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제공하는데, TIPS 사업의 최종목표는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자금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구조를 조성하는 것임.

먼저, TIPS 선정기업의 후속 투자유치율은 아래와 같음.

팁스 후속 투자유치율 실적

(단위: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년차	-	-	53.3	79.5	67.1	68.2	66.8	76.6	79.2	73.3	70.0	59.4	49.7
2년차	-	33.3	56.4	59.5	47.1	47.3	61.3	60.8	58.3	59.0	49.8	48.3	18.9
1년차	0.0	15.4	20.3	28.2	11.2	22.7	22.4	25.3	28.0	24.4	27.5	14.7	0.4
평 균	0.0	24.4	43.3	55.7	41.8	46.1	50.2	54.2	55.2	52.2	49.1	40.8	23.0

주1. 최근 3개년 선정기업이 해당년도 말까지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비율 평균값(예시: 2025년 실적은 2023년(3년차), 2024년(2년차), 2025년(1년차)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비율 평균값을 의미)

주2. 2025년도 성과는 7월 기준으로 최종 수치는 2026년 10월에 나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이 2021년 55.2%까지 상승했던 후속 투자율은 2022년 52.2%, 2023년 49.1%, 2024년 40.8%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24년 실적 40.8%는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으로서 TIPS 목표인 41.7%에 0.9%p 미달하는 수치임.

다음으로, 시드투자인 TIPS 이후 후속 투자라운드와 최종 엑시트 통과비율은 아래와 같음.

팁스 선정기업 후속 투자라운드 통과비율(누적)

(단위: %)

구 분	팁스선정	시리즈A (10억 이상~50억 미만)	시리즈B (50억 이상~100억미만)	시리즈C (100억 이상)	엑시트
기업수	4,454	1,347	674	394	142**
통과율	100.0	30.2	15.1	8.8	3.2

주1: 투자라운드 통과비율은 팁스선정된 전체기업 중 다음 투자라운드에 진입한 비율임(예시: 팁스선정 누적기업 5,000개 중 시리즈 A 투자받은 누적기업이 1,000개면 시리즈 A 통과비율은 1,000/5,000=20%)

주2: 엑시트비율은 팁스선정된 전체기업 중 각 라운드 중 M&A 또는 IPO된 누적기업수(예시: 팁스선정 누적기업 5,000개 중 M&A된 누적기업이 100개, IPO 누적기업이 100개일 경우 엑시트비율은 200/5000= 4%)

주3: 투자라운드 구분의 경우 통용되는 투자유치 규모로 단계를 구분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되어 시드투자를 받은 4,454개 벤처스타트업이 시리즈A 라운드에 진입한 비율은 30.2%(1,347개), 시리즈B 15.1%(674개), 시리즈C 8.8%(394개)이고, 최종 엑시트(M&A, IPO 등) 3.2%(142개[80])임.

정리하면, TIPS 사업을 통해 100번을 지원할 경우 후속 민간투자→기업성장→자금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완성되는 경우는 3번이라고 할 수 있음.

팁스 후속 투자 및 엑시트 실적(연도별)

(단위: 억원, 건)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누적
투자금액	-	397	748	2,062	1,752	5,897	15,407	16,823	39,059	35,803	26,737	35,630	20,303	200,618
IPO	-	-	-	-	-	1	1	2	4	4	7	10	11	40
M&A	-	1	1	1	1	4	8	10	23	19	9	16	10	1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운영사의 역할은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엔젤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M&A, IPO 등 후속관리까지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운영사의 전문성과 투자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TIPS 사업의 정책목적 달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투자 이후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80) IPO 40개사 및 M&A 103개사로 엑시트 실적은 총 143건이나, IPO 및 M&A를 모두 달성한 기업 1개사로 인해 엑시트 기업수는 142개사로 집계함.

TIPS 운영사의 역할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창투사, LLC 등),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대학, 연구기관, 병원, AC, VC, 기업, 공공기관 등)를 협력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2025.9.16.

15.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513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2014~)은 혁신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제조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및 창업존 운영,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872억 3,8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생태계기반구축	87,238	87,238	-	-	-	87,238	87,238	-	-	69,290
스타트업파크	10,100	10,100	-	-	-	10,100	10,100	-	-	3,520
창조경제혁신센터	40,850	40,850	-	-	-	40,850	40,850	-	-	33,362
제조창업활성화	30,372	30,372	-	-	-	30,372	30,372	-	-	26,492
지역창업특화지원	5,916	5,916	-	-	-	5,916	5,916	-	-	5,916

□ 검토의견

(1) 부산 스타트업파크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집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총 8개의 스타트업파크가 선정되어 개소 및 조성중에 있음.

스타트업 파크 선정 현황

선정연도	광역지자체	대표 협력기관	조성위치	조성현황
2019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연수구 송도	개소 완료
2020	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유성구 궁동	개소 완료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인근	1개 동 개소, 1개 동 건축 중
2022	경상북도(경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임당역 인근	건축 중
2024	부산광역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북항 일대	설계완료
2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도남동	‘26년 신규
	울산광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중구	
	전라북도(전주)	미래기술혁신센터	전주 덕진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스타트업파크는 총사업비 247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북항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워크엔터테인먼트(Work+Entertainment),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해양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부산 스타트업 파크 개요

○ (조성규모) 대지면적 23,871m2, 연면적 9,128m2 ○ (사업규모) 247억원(국비126억원, 지방비 121억원) ○ (조성방식)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 (추진체계) 총괄기관(중기부), 전담기관(창진원), 주관기관(부산광역시), 대표협력기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특징) 워크엔터테인먼트(Work+Entertainment),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주력산업(금융·해양) 스타트업 유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상당한 일정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당초 부산 스타트업파크는 2026년 8월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26년 7월말 현재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나, 현재 추진 일정으로 볼 때 실제 준공 및 개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2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 일정 지연은 예산집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선금 등 일부에 한정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비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25년 편성된 국비 71억원 가운데 실질적인 집행 규모는 7억 6,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0.8%에 불과한 상황임.

부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2024년	500	500	0
2025년	14,200	7,100	7,100
2026년	5,000	2,000	3,000
2027년	5,000	3,000	2,000
합 계	**24,700**	**12,600**	**12,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집행시기	집행내역	국비	지방비
2024년 11월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	44	0
2025년 01월	설계 공모 운영 대행 용역 선금	-	52.1
2025년 01월	공간 기획 용역 선금	22	-
2025년 06월	설계 공모 보상금 지급		96.4
2025년 06월	설계 공모 운영 대행 용역 잔금	-	52.1
2025년 06월	설계 용역비 선금	412	-
2025년 06월	공간 기획 용역 잔금	22	-
2025년 11월	설계 용역비 선금		257
2025년 12월	CM(건설사업관리) 용역 선금	764.5	-
2026년 01월	부대비(문화유산 발굴용역)	-	6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물론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의 경우 문화재 협의, 인허가 절차, 설계 변경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파크와 같은 지역 창업 거점 조성사업은 준공 이후에야 창업지원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착공 및 준공 지연은 곧 정책효과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특히 부산 스타트업파크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효과 또한 상당 부분 반감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 사업은 단순한 공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유치, 액셀러레이팅, 기술사업화 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간 조성뿐 아니라 향후 운영계획과 입주기업 유치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스타트업파크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설계 완료 이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유사한 창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지확보, 인허가, 문화재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415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비 보조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

2022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장상권혁신경영’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3년 예산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었음.

2025년도 당초 본예산은 469억 8,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4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4억 2,400만원이며, 287억 3,000만원이 실집행되고 385억 1,400만원이 이월,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2.6%임.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6,985	-	20,439	-	-	67,424	67,424 (28,730)	38,514	180	43,932
-공영주차장 건립	46,055	-	20,439	-	-	66,494	66,494 (27,973)	38,514	7	43,079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30	-	-	-	-	930	930 (757)	-	173	853

□ 검토의견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집행부진 개선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유입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등을 국비로 보조(국비 60%, 지방비 40%)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81].

81) 사업 진행절차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공영주차장 건립	46,055	14,475	31.4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30	756	81.2
전체 합계	**46,985**	**15,231**	**3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5년도 본예산의 실집행률은 32.4%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집행률도 36.3%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한 상황임.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자체별 집행 내역

지역명	본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E)	실 집행률 (D/C)
강원	8,557	8,557	3,145	11,702	1,826	9,845	**16%**
경기	1,569	1,569	508	2,077	1,526	543	73%
경남	6,004	6,004	3,921	9,925	5,693	4,221	57%
경북	2,796	2,796	3,066	5,862	2,950	2,912	50%
광주	58	58	-	58	-	-	**0%**
대구	1,478	1,478	1,995	3,473	314	3,159	**9%**
대전	10,142	10,142	500	10,642	1,053	9,589	**10%**
부산	238	238	2,463	2,701	559	2,095	**21%**
서울	2,299	2,299	64	2,363	2,275	-	96%
울산	6,335	6,335	6,326	12,661	1,991	10,670	**16%**
인천	60	60	5,528	5,588	2,669	2,920	**48%**
전남	52	52	1,035	1,087	672	415	62%
전북	1,927	1,927	595	2,522	1,105	1,417	**44%**
제주	7,740	7,740	-	7,740	2,243	337	**29%**
충남	4,810	4,810	4	4,814	4,792	-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지역별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이 진행중인 지자체 16곳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곳은 총 8곳이며, 강원, 대전, 대구의 경우 교부액 대부분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 및 부지확보 지연,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외부 협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확인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다년도로 변경(3년)하고, 토지 매입 사전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집행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1년~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

구분	2021	2021	2023	2024	2025
실집행률(%)	44.9	29.5	24.3	50.2	3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다수의 사업이 토지보상 및 매입지연·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착공 이전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대상 선정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지원요건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실적을 고려한 국비 교부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을 개정[82]하여 사업 신청 시 우대사항을 정비 및 추가[83]하였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지원요건을 개선[84]하였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가적인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한편, 동 사업의 2025년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85]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

82) 시행일: 2026. 6. 25.

83) (정비) 지원요건이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으로, 우대 조건을 50→60%로 상향
(추가)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84) (기존) 건립, 개보수, 이용보조 등 사업분야 무관 이해관계자 60% 이상 동의 必
→(변경) 건립: 80% 이상 동의 必 / 개보수: 현행 60% 유지 / 이용보조: 동의 폐지

8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지침」[86]에도 보조금의 최종 교부 전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교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지자체	교부월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대전 서구	2월	-	3,252	3,252	-
강원 영월군	3월	1,639	1,674	3,313	6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러나 대전 서구의 경우 주차장 건립을 위한 건축비 예산 32억 5,200만원을 연초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되지 못하고 모두 이월되었으며, 강원 영월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당해연도 예산을 1회 전액 교부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이는 보조금 분할 교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해당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 사업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6)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5. (6) 보조금 교부시 유의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식산업센터(자율)’(2012~, 보조) 및 ‘지식산업센터(세종)’(2021~, 보조)은 비수도권 및 세종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현액은 지식산업센터(자율) 856억 9,900만원, 지식산업센터(세종) 38억 500만원 등 895억 4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세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식산업센터(자율)	85,699	85,699	-	-	-	85,699	85,699	-	-	94,817
지식산업센터(세종)	3,805	3,805	-	-	-	3,805	3,805	-	-	-
합계	89,504	89,504	-	-	-	89,504	89,504	-	-	94,817

□ 검토의견

(1) 실집행부진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2012년 사업시작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 72개[87]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2026년 6월 기준으로 건립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는 29개, 건립 중단 센터는 1개[88]이며, 현재 건립이 진행중인 센터는 43개(2026년 신규 추진 5개 센터 포함)임.

지식산업센터건립 추진 현황

구분	1차 ('12~'16)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6차 ('19~'22)	7차 ('20~'23)	8차 ('21~'25)	9차 ('22~'26)	10차 ('23~'27)	11차 ('24~'28)	12차 ('25~'29)	13차 ('26~'30)
지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 대전(동구) 경남(진주)	대구(달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전북(전주) 경북(포항)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강원(춘천) 전북(남원) 전남(나주) 전남(영광) 경남(창원)	부산(강서) 대구(북구) 광주(북구) 충북(제천) 충남(홍성) 전북(전주) 전남(광양)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세종 제주	광주(남구) 강원(강릉) 충남(금산) 전북(김제) 전북(순창) 경북(영천) 경남(김해)	광주(북구) 울산(울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밀양)	광주(광산) 충남(공주) 대전(중구) 충남(보령) 대전(유성) 전북(익산) 충북(청주) 전남(목포) 충북(보은) 경남(양산) 충북(증평)	부산(서구) 부산(사상) 강원(동해) 충남(계룡) 전북(전주) 경북(안동) 경북(예천) 경남(사천)	강원(삼척) 충남(천안) 전북(정읍) 전남(강진) 경북(포항)
진행상황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공사중	설계중 공사중	설계중 공사중	설계중 공사중	설계 준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7) 72개 센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의 제주센터(1개), 세종계정의 세종센터(1개)가 포함됨
88) 6차 울산 중구 사업중단

2025년 예산에는 지식산업센터 7차부터 12차까지 35개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89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세종) 예산편성 현황

가. 지식산업센터 7차 건립비 : 7,664백만원
- 산출내역 : 부산센터 건립비 6,714백만원, 광주센터 건립비 950백만원

나. 지식산업센터 8차 건립비 : 22,672백만원
- 산출내역 : 충주센터 건립비 3,913백만원, 서천센터 건립비 4,119백만원, 아산센터 건립비 4,635백만원, 화순센터 건립비 2,200백만원, 경산센터 건립비 4,000백만원, 세종센터 건립비 3,805백만원

다. 지식산업센터 9차 건립비 : 29,226백만원
- 산출내역 : 광주센터 건립비 2,700백만원, 강릉센터 건립비 4,627백만원, 금산센터 건립비 2,650백만원, 김제센터 건립비 6,500백만원, 순창센터 건립비 3,755백만원, 영천센터 건립비 2,500백만원, 김해센터 건립비 6,494백만원

라.. 지식산업센터 10차 건립비 : 11,351백만원
- 산출내역 : 광주센터 건립비 3,000백만원, 천안센터 건립비 600백만원, 순천센터 건립비 3,751백만원, 밀양센터 건립비 4,000백만원

마.. 지식산업센터 11차 건립비 : 11,281백만원
- 산출내역 : 대전(유성)센터 건립비 3,500백만원, 대전(중구)센터 건립비 1,250백만원, 청주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보은센터 건립비 2,375백만원, 증평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익산센터 건립비 750백만원, 목포센터 건립비 700백만원, 양산센터 건립비 706백만원

바. 지식산업센터 신규(12차) 건립비 : 7,310백만원
- 산출내역 : 부산(사상구)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부산(서구)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동해센터 건립비 800백만원, 계룡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전주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안동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예천센터 건립비 510백만원, 사천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피보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실집행액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자율)의 경우 교부액 856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31억 4,800만원 등 예산현액 1,788억 4,700만원 중 1,01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774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 중 231억 1,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다음연도로 재이월한 것임. 지식산업센터(세종)는 교부액 38억 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6억 2,300만원 등 예산현액 104억 2,800만원 중 8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5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세종) 예산편성 현황

구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재이월	
지식산업센터 (자율)	85,699	93,148	178,847	101,350	85,699	31,315	54,384	23,113	-
지식산업센터 (세종)	3,805	6,623	10,428	8,363	3,805	1,740	2,065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동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교부액에 비해 보조사업자의 전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더 크고,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규모도 적지 않은 등 집행부진과 그에 따른 이월·재이월이 과다함.

구체적으로, 2025년에 건립예산이 편성된 35개 지식산업센터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0%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19개소(전체 센터의 54.3%)이고,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곳도 5개소(전체 센터의 14.3%)에 이름.

지식산업센터별 2025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차수	센터명	실집행현황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실집 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진행 단계	세부 진행상황
7차 ('20~)	부산 (강서)	6,714	2,904	9,618	8,299	86.0	1,319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 99%)
	광주 (북구)	950	7,452	8,402	8,202	97.6	200	0	준공	26.2월 준공
8차 ('21~)	충북 (충주)	3,913	1,641	5,554	5,554	100.0	0	0	준공	25.12월 준공
	충남 (아산)	4,635	3,726	8,361	6,845	81.9	1,516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 20%)
	충남 (서천)	4,119	4,636	8,755	8,755	100.0	0	0	준공	25.12월 준공
	전남 (화순)	2,200	7,770	9,970	2,826	28.4	7,144	0	공사중	26.3월 착공
	경북 (경산)	4,000	2,318	6,318	2,634	41.7	3,684	0	공사중	27.8월 준공 (공정 30%)
	세종	3,805	6,623	10,428	8,363	80.2	2,065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 79%)
9차 ('22~)	광주 (남구)	2,700	3,418	6,118	5,894	96.3	224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 60%)
	강원 (강릉)	4,627	6,427	11,054	4,913	44.4	6,141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 55%)
	충남 (금산)	2,650	4,850	7,500	314	4.2	7,186	0	설계완료	26.7월 착공예정
	전북 (김제)	6,500	5,156	11,656	5,433	46.6	6,223	0	공사중	27.12월 준공 (공정 17%)
	전북 (순창)	3,755	6,500	10,255	6,500	63.4	3,755	0	공사중	26.3월 착공
	경북 (영천)	2,500	3,104	5,604	1,661	29.6	3,943	0	설계완료	26.7월 착공예정
	경남 (김해)	6,494	449	6,943	5,951	85.7	992	0	공사중	26.12월 준공 (공정96%)
10차 ('23~)	광주 (북구)	3,000	1,137	4,137	443	10.7	3,694	0	공사중	26.5월 착공
	충남 (천안)	600	980	1,580	924	58.5	656	0	설계중	28.2월 착공예정
	전남 (순천)	3,751	656	4,407	466	10.6	3,941	0	설계중	26.7월 착공예정
	경남 (밀양)	4,000	1,000	5,000	3,296	65.9	1,704	0	공사중	27.6월 준공 (공정 32%)
11차 ('24~)	대전 (중구)	1,250	1,000	2,250	687	30.5	1,563	0	설계완료	26.8월 착공예정

차수	센터명	실집행현황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실집 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진행 단계	세부 진행상황
	대전 (유성)	3,500	1,000	4,500	453	10.1	4,047	0	설계완료	26.10월 착공예정
	충북 (청주)	1,000	906	1,906	394	20.7	1,512	0	설계완료	26.9월 착공예정
	충북 (보은)	2,375	478	2,853	1,185	41.5	1,668	0	공사중	27.12월 준공 (공정 15%)
	충북 (증평)	1,000	600	1,600	803	50.2	797	0	공사중	28.12월 준공 (공정 6%)
	전북 (익산)	750	1,000	1,750	682	39.0	1,068	0	설계중	26.11월 착공예정
	전남 (목포)	700	0	700	0	0.0	700	0	설계중	26.12월 착공예정
	경남 (양산)	706	550	1,256	529	42.1	727	0	설계중	26.9월 착공예정
12차 ('25~)	부산 (서구)	1,000	0	1,000	0	0.0	1,000	0	설계중	27년 착공예정
	부산 (사상)	1,000	0	1,000	88	8.8	912	0	설계중	27년 착공예정
	강원 (동해)	800	0	800	724	90.5	76	0	설계중	26.11월 착공예정
	충남 (계룡)	1,000	0	1,000	0	0.0	1,000	0	설계중	27년 착공예정
	전북 (전주)	1,000	0	1,000	611	61.1	389	0	설계중	26.12월 착공예정
	경북 (안동)	1,000	0	1,000	0	0.0	1,000	0	공사중	26.3월 착공
	경북 (예천)	510	0	510	309	60.6	201	0	설계중	26.11월 착공
	경남 (사천)	1,000	0	1,000	0	0.0	1,000	0	설계중	27년 착공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부진 및 이월·재이월의 사유로 시공사 계약 해지, 타 사업장과 통합감리 추진, 사전행정절차(건축 협의, 공유재산 관리심의 등)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 등을 들고 있는데, 2025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식산업센터별 집행부진 사유는 아래와 같음.

2025년 실집행률 50% 미만 센터의 집행률 부진사유

차수	센터명	실집행 부진 사유
8차	전남 화순 지식산업센터	○ 인근 사업장과 통합 발주 추진계획에 따른 공사 지연 ○ 26.3월 공사 착공, 현 공정률 1.7%

차수	센터명	실집행 부진 사유
8차	경북 경산 지식산업센터	○공공건축 심의 등 지연, 조달 계약업체 납품 미이행 등 ○27.8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30%
9차	강원 강릉 지식산업센터	○원자재·노임단가, 경제성 검토 등 설계보안 ○26.12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55%
9차	충남 금산 지식산업센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순연 ○26.7월 공사 착공예정
9차	전북 김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 연장 ○27.12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17%
9차	경북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위탁추진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지급 지연 ○26.7월 공사 착공예정
10차	광주 북구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26.5월 공사 착공예정
10차	전남 순천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26.7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대전 중구 지식산업센터	○BF인증 등으로 실시설계 사업 지연 ○26.8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대전 유성 지식산업센터	○대전시, 카이스트 협의(운영, 위치 등)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26.10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충북 청주 지식산업센터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26.9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충븍 보은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 준공('25. 9.)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27.12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15%
11차	전북 익산 지식산업센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소요로 집행시기 미도래 ○26.11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전남 목포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26.12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경남 양산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착수 ○26.9월 공사 착공예정
12차	부산 서구 지식산업센터	○건축심의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순연 ○26.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12차	부산 사상 지식산업센터	○의견조율에 따른 건축기획설계 지연 ○27.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12차	충남 계룡 지식산업센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27.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12차	경북 안동 지식산업센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순연 ○26.3월 공사 착공
12차	경남 사천 지식산업센터	○우주항공청 부지 조정에 따라 공사일정 순연 ○26.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자율계정 및 세종계정)으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시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소관 부처는 지자체의 신청금액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부처 의견만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사업내역 조정 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유지함으로써 지자체의 편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보조금을 교부하는 단계에서도 교부를 신청하는 지자체의 수요와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89] 및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90](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재정집행의 기본원칙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예산 편

8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08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90)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성시 과거 집행률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1조 5,595억원 규모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전년 이월액 포함)을 통해 1조 411억원을 증액해 계획현액은 9.0% 증가한 12조 6,006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美 관세조치로 인한 통상리스크 및 대규모 산불피해 복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00억원,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자금(융자) 1,000억원, 재도약촉진 35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억원, 중진기금기본경비 7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5.1	기타민간차입금	5,000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융자)	1,000	통상리스크, 재해중소기업 지원 목적 계획변경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1,000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0	
7.4	기타민간차입금	2,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2,000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및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목적 계획변경
	일반회계전입금	3,350	재도약촉진	35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	
12.1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	중진기금기본경비	7	추경으로 증액된 융자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증액 목적 계획변경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과 지출 모두 계획현액의 100.9%인 12조 7,157억원을 수납하고 집행하였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6 이월 (f)	차액 (e+f-d)
		2025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54,867	-	-	54,867	57,436	104.7	-	2,568
	▪ 융자원금회수	48,120	-	-	48,120	50,453	104.8	-	2,332
	▪ 재산수입	6,328	-	-	6,328	6,172	97.5	-	△156
	- 융자이자수입	6,231	-	-	6,231	6,042	97.0	-	△190
	- 기타재산수입	97	-	-	97	130	134.8	-	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12	-	-	112	208	186.2	-	96
	- 기타잡수입	112	-	-	112	208	186.2	-	96
	▪ 기타경상이전수입	307	-	-	307	603	196.4	-	296
	2. 정부내부수입	15,406	3,350	-	18,756	18,756	100.0	-	-
	▪ 일반회계전입금	14,579	3,350	-	17,929	17,929	100.0	-	-
	▪ 복권기금전입금	826	-	-	826	826	100.0	-	-
	3. 민간차입금	45,232	7,000	-	52,232	50,800	97.3	-	△1,432
	4. 여유자금회수[91]	90	7	55	152	166	109.2	-	14
	합계	115,595	10,357	55	126,006	127,157	100.9	-	1,151
지출	1. 사업비	53,352	10,357	55	63,757	63,680	99.9	-	△77
	▪ 융자사업	45,295	7,000	-	52,295	52,295	100.0	-	-
	▪ 경상사업	2,841	350	55	3,246	3,170	97.7	-	△76
	▪ 자본사업	5,217	3,000	-	8,217	8,216	99.9	-	△1
	2. 기금운영비	1,416	7	-	1,423	1,423	100.0	-	-
	3. 정부내부지출[92]	304	-	-	304	304	100.0	-	-
	▪ 공자기금예수원금	300	-	-	300	300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4	-	-	4	4	100.0	-	-
	4. 차입원금상환	53,000	-	-	53,000	53,000	100.0	-	-
	5. 차입이자상환	7,523	-	-	7,523	7,349	97.7	-	△174
	6. 여유자금운용	-	-	-	-	1,402	-	-	1,402
	합계	115,595	10,357	55	126,006	127,157	100.9	-	△251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91) 전기이월금

9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분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11조 5,595억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 412억원(9.0%) 증가한 12조 6,006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 대비 100.9%에 해당하는 12조 7,157억원임.

2025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54,867	-	-	54,867	57,436	2,568
○ 융자원금회수	48,120	-	-	48,120	50,453	2,332
○ 재산수입	6,328	-	-	6,328	6,172	△156
- 융자이자수입	6,231	-	-	6,231	6,042	△190
- 기타재산수입[93]	97	-	-	97	130	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12	-	-	112	208	96
- 기타잡수입[94]	112	-	-	112	208	96
○ 기타경상이전수입	307	-	-	307	603	296
□ 정부내부수입	15,406	-	3,350	18,756	18,756	-
○ 일반회계전입금	14,579	-	3,350	17,929	17,929	-
○ 복권기금전입금	826	-	-	826	826	-
□ 민간차입금	45,232	-	7,000	52,232	50,800	△1,432
□ 여유자금회수 등	90	55	7	152	166	14
합계	115,595	55	10,357	126,006	127,157	1,151

융자원금회수는 중소기업 융자금의 정기·조기회수에 따른 융자원금 수입으로 2025년에는 5조 453억원을 수납하였음.

93) 예치금이자 등
94) 연수사업 등 경상사업수입

재산수입은 융자이자수입과 사업대기성자금의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및 출자회사 배당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재산수입으로 2025년에는 6,172억원을 수납하였음.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연수수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임차료 등 경상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에는 208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6[95]에 따른 기술료 수입금 및 「경륜·경정법」제18조에 따른 수익금 법정 배분[96] 출연금으로 2025년에는 603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조 7,929억원 및 복권기금전입금[97] 826억원을 수납하였고, 융자사업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중진채를 발행하는 민간차입금은 5조 800억원을 수납하였음.

---

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96) 경주사업자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00분의 17.5, 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4로 수익금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음.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의 6.356%를 중진공에 배분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당초계획 11조 5,595억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전년 이월액 포함)을 통한 증액분 1조 412억원을 포함한 12조 6,006억원임. 이 중 100.9%에 해당하는 12조 7,157억원을 집행하였음.

전용 및 증감액(1조 357억원)은 美 관세조치 및 산불재해복구 등 대내·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융자예산(7,000억원), 신규사업(지역주도형AI대전환, 350억원) 및 추가 융자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비 등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3,000억원)와 중진기금 기본경비(7억원) 증액에 따른 것임.

2025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45,295	-	7,000	52,295	52,295	-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6,358	-	2,000	18,358	18,358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825	-	1,000	4,825	4,825	-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7,501	-	-	7,501	7,501	-	-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3,111	-	-	13,111	13,111	-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	-	3,000	5,500	5,500	-	-
○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2,000	-	-	2,000	2,000	-	-
○ 통상리스크대응자금(융자)	-	-	1,000	1,000	1,000	-	-
□ 경상사업	2,841	55	350	3,246	3,170	-	76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756	-	-	756	686	-	70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	-	-	18	18	-	-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21	55	-	376	373	-	3
○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4	-	-	34	33	-	1
○ 재도약촉진	415	-	350	765	764	-	1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	-	-	5	5	-	-
○ 연수사업	238	-	-	238	237	-	1
○ 창업성공패키지	1,000	-	-	1,000	1,000	-	-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취업지원	52	-	-	52	52	-	-
□ 자본사업	5,217	-	3,000	8,217	8,216	-	1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	-	3,000	8,000	8,000	-	-
○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40	-	-	40	40	-	-
○ 전북연수원건립	78	-	-	78	78	-	-
○ 전남연수원건립	80	-	-	80	80	-	-
○ 중진공본사증축	19	-	-	19	18	-	1
<사업비 총계>	53,352	55	10,350	63,757	63,680	-	77
□ 차입금원금상환	53,000	-	-	53,000	53,000	-	-
□ 차입금이자상환	7,523	-	-	7,523	7,349	-	174
□ 기금운영비	1,416	-	7	1,423	1,423	-	-
□ 정부내부지출	304	-	-	304	304	-	-
□ 여유자금운용	-	-	-	-	1,402	-	-
합계	115,595	55	10,357	126,006	127,157	-	251

불용액은 251억원으로, 계획 현액대비 집행잔액 77억원, 계획 대비 신규 발행채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이자 절감분 174억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지출) 이월액·불용액 사유

(단위: 억원)

구 분	이월액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	77	
융자사업	-	-	
경상사업	-	76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70), 글로벌화지원플랫폼(3),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1), 재도약촉진(1), 연수사업(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자본사업	-	1	-중진공 본사 증측(1) 설계비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기금운영비】	-	-	
【정부내부지출】	-	-	
【차입금이자상환】	-	174	- 중진채 발행* 계획 대비 신규 발행채권 금리 하락 및 채권발행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차입금이자(174) 경감 * (계획) 3.098% → (발행) 3.028%
합 계	-	249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 금융자산		294,926		290,05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60		601
1) 현금및현금등가물	1,560		601	
2. 금융상품		601		309
1) 기타의금융상품/단기	601		309	
3. 투자증권		6,407		6,775
1) 지분증권	4,419		4,437	
2) 채무증권	1,988		2,338	
4. 정부출자금		69,446		61,446
5. 대여금		213,885		218,016
6. 미수채권		529		671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0		0	
2) 미수이자수익	209		187	
3) 기타의미수금	320		484	
7. 기타금융자산		2,498		2,239
1) 파생상품자산/단기	1,660		0	
2) 파생상품자산/장기	67		1,526	
3) 지급보증금	759		700	
4) 투자회원권	11		13	
Ⅱ. 유무형자산		3,622		3,386
1. 일반유형자산		3,521		3,277
1) 토지	1,730		1,668	
2) 건물	1,551	1	1,548	
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96	1,255	242	1,307
4) 구축물	55		55	
5)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4	51	3	52
6) 기계장치	170		172	
7)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8	2	168	3
8) 집기·비품·차량운반구	340		323	
9)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01	39	284	3 39
1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444		209
2. 무형자산		101		109
1) 소프트웨어	101		109	
Ⅲ. 기타자산		23		21
1. 재고자산	10		10	

	2025		2024	
2. 선급비용	8		5	
3. 선급법인세	5		6	
자산계		298,571		293,464
부채				
Ⅰ.차입부채		244,341		246,705
1. 차입금		0		300
1) 국내차입금	0		0	
2) 정부내차입금	0		300	
2. 기타차입부채		244,341		246,405
1) 공채	242,375		243,647	
2) 미지급금	10		10	
3) 미지급비용	919		964	
4) 예수금	105		80	
5) 파생상품부채	932		1,703	
Ⅱ.충당부채		357		321
1. 기타충당부채		357		321
1) 퇴직급여충당부채	357		321	
Ⅲ.기타부채		0		0
1. 선수수익	0		0	
2. 기타의기타부채/단기	0		0	
부채계		244,698		247,026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20,571		20,57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0,327		23,007
Ⅲ. 순자산조정		2,975		2,860
순자산계		53,873		46,438
부채와 순자산계		298,571		293,464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자산은 29조 8,571억원으로 전년대비 1.74%인 5,107억원이 증가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정부출자금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4,869억원 증가하였고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236억원 증가하였으며 선급비용 등의 증가로 기타자산도 2억원 증가하였음.

부채는 24조 4,698억원으로 전년대비 0.94%인 2,328억원이 감소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보면, 정부내차입금과 공채 상환 등으로 차입부채가 2,364억원 감소했고 충당부채가 36억원 증가하였음.

순자산은 5조 3,873억원으로 전기 대비 7,435억원(16.01%)이 증가하였음. 이는 적립금 및 잉여금 증가 7,320억원(재정운영결과 896억원 손실, 출연금 전입 8,216억원 증가), 순자산조정 증가 115억원의 결과임.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0,861	9,180	11,681	25,787	10,255	15,532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50	37	1 413	471	23	448
2.창업환경조성	12,309	4,542	7,767	13,647	5,314	8,333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8	46	△38	10	23	△13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7,666	4,506	3,160	11,226	4,855	6,371
5.중소기업인력지원	428	4 49	379	432	40	392
Ⅱ.관리운영비			572			523
1.인건비			414			376
1)급여			366			341
2)퇴직급여			48			35
2.운영비			130			121
1)일반수용비			33			42
2)공공요금및제세			13			15
3)소모품비			5			5
4)업무추진비			3			2
5)지급임차료			23			17
6)유류비			0			0
7)교육훈련비			4			3
8)여비교통비			6			3
9)복리후생비			8			2
10)고용부담금			35			32
3.감가상각비			26			25
1)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3			14
2)무형자산상각비			13			11
4.기타국가운영비용			2			1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2			1
2)자산폐기손실			0			0
Ⅲ.비배분비용			21			116
1.이자비용			4			83
2.자산평가손실			1			91
3.기타국가운영비용			16			24
Ⅳ.비배분수익			757			387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648			264
2.이자수익			56			68
3.배당수익			47			52
4.자산평가이익			0			0
5.기타국가운영수익			6			3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517			15,784
Ⅵ.비교환수익 등			10,621			10,631
1.제재금수익			17			25
2.기타이전수익			10,604			10,606
Ⅶ.재정운영결과(Ⅴ-Ⅵ)			896			5,153

2025 회계연도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순원가는 총 1조 1,681억원으로 전년대비 24.8%인 3,851억원이 감소함.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3,160억원, 창업환경조성 7,767억원, 중소기업인력지원 379억원,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13억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38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등 572억원임. 기타 현행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21억원으로 전년대비 81.9%인 95억

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757억원으로 전년대비 95.6%인 3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비교환수익은 수익 처리되는 일반회계출연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소한 1조 621억원임.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2025년 기초순자산	20,571	23,007	2,860	46,438
1. 보고금액	20,571	23,007	2,860	46,438
Ⅱ. 재정운영결과	-	896	0 0	896
Ⅲ. 조정항목	-	8,216	115	8,331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63	63
2. 자산재평가이익	-	-	△3	△3
3. 기타순자산의증감	-	8,216	55	8,271
Ⅳ. 2025년 기말순자산(Ⅰ-Ⅱ+Ⅲ)	20,571	30,327	2,975	53,873
Ⅴ. 2024년 기초순자산	20,571	23,560	2,786	46,917
1. 보고금액	20,571	23,560	2,786	46,917
Ⅵ. 재정운영결과	-	5,153	-	5,153
Ⅶ. 조정항목	-	4,601	74	4,674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134	134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47	△47
3. 자산재평가이익	-	-	△13	△13
4. 기타순자산의증감	-	4,601	-	4,601
Ⅷ. 2024년 기말순자산(Ⅴ-Ⅵ+Ⅶ)	20,571	23,007	2,860	46,438

2025회계연도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5조 3,873억원)과 기초순자산(4조 6,438억원)의 차액인 7,435억원 증가이며, 이는 재정운영결과 896억원 손실, 출연금 자본전입 8,216억원, 순자산조정 115억원으로 구성됨

Ⅱ. 검토의견

1. 기타민간이자수입(75-74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에 따른 직접대출의 이자수입으로, 2025년 계획현액은 4,461억 7,300만원이고, 실제 4,785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4,442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36억 9,9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106억 9,1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이자수입	446,173	446,173	-	446,173	478,596	444,206	23,699	10,691	469,64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는 중소기업 융자사업 수행에 따라 지원된 중소기업 융자금(직접대출)의 정기상환 또는 조기상환 원금회수 수입으로, 2025년 계획현액은 3조 4,276억 700만원이고, 실제 4조 9,263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3조 5,758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286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6,218억 5,8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3,427,607	3,427,607	-	3,427,607	4,926,301	3,575,824	728,619	621,858	3,169,272

□ 검토의견

(1) 융자사업 대출채권의 회수율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불납결손액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하여 2022년에 7.8%였던 불납결손율이 2025년에는 12.6%로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불납결손율
	당초	수정(A)						
2022	2,678,427	2,182,827	2,182,827	3,574,565	2,279,973	1,016,333	278,259	7.8
2023	2,876,647	2,687,847	2,687,847	3,932,628	2,704,621	897,737	330,270	8.4
2024	3,031,539	3,031,539	3,031,539	4,362,130	3,202,339	580,607	579,185	13.3
2025	3,427,607	3,427,607	3,427,607	4,926,301	3,575,824	728,619	621,858	1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아울러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2022년 대비 2025년에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2023년을 제외하면 불납결손율이 지속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어, 이자채권의 회수율 또한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불납결손율
	당초	수정(A)						
2022	289,973	302,573	302,573	384,575	311,414	65,258	7,903	2.1
2023	325,120	341,805	341,805	462,454	416,925	37,819	7,711	1.7
2024	502,634	502,634	502,634	424,937	389,605	23,370	11,961	2.8
2025	446,173	446,173	446,173	478,596	444,206	23,699	10,691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불납결손액 및 불납결손율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과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조치 종료(2025년 9월)에 따른 잠재부실의 현실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의 부실률이 상승[98]하면서 불납결손금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 2022년 이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불

98) 대출채권 부실률 추이 : ('22) 2.73% → ('23) 4.18% → ('24) 4.43% → ('25) 4.6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납결손액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폐업에 따른 채권 미회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과 새출발기금 매각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불납결손액의 구체적인 원인별 금액 및 건수

(단위 : 건, 백만원)

원 인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정승인한 경우	18	1,752	18	1,298	54	4,773	107	10,1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경우	378	34,686	262	25,620	514	45,646	301	26,467
폐업한 경우	1,845	177,350	2,143	213,902	3,047	318,960	3,522	355,184
기 타	733	64,471	2,460	89,450	2,549	209,806	3,790	230,087
합 계	2,974	278,259	4,883	330,270	6,164	579,185	7,720	621,858

* 기타 : 기업회생 후 출자전환 및 새출발기금 매각 등의 원인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채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기타민간이자수입 불납결손액의 구체적인 원인별 금액 및 건수

(단위 : 건, 백만원)

원 인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정승인한 경우	18	34	18	29	54	113	107	1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경우	378	1,120	262	778	514	1,281	301	466
폐업한 경우	1,845	4,476	2,143	4,730	3,047	6,516	3,522	6,654
기 타	733	2,272	2,460	2,175	2,549	4,051	3,790	3,423
합 계	2,974	7,903	4,883	7,711	6,164	11,961	7,720	10,691

* 기타 : 기업회생 후 출자전환 및 새출발기금 매각 등의 원인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채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같이 융자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증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 책임경영심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사후 정책자금 위험관리 조치를 실질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99]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책임경영심사 내실화, 조기경보모형 고도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했음을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기금을 통한 융자원금 및 이자의 회수율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자금의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금의 관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불납결손 및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부실채무자의 실태와 채무자의 재산·소득 및 상환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9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p.83.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권보전대책과 위험등급별 관리, 채권보전조치의 적기 이행 등 선제적 채권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100][101]

100)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융자원금 및 이자의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출 이후 중소기업 위기극복알림서비스를 활용한 부실징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납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1) 중소기업 위기극복알림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해 재무, 금융거래, 대표자 신용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감지된 기업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2.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2006~, 직접)은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평가와 사후관리,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통한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기업진단’, ‘정책자금지원성과창출지원’, ‘시설투자촉진’,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계획현액 755억 8,800만원 중 68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75,588	75,588	-	75,588	68,615	-	6,973	73,783
기업진단	4,893	4,893	-	4,893	4,879	-	14	4,893
정책자금지원성과 창출지원	8,798	8,798	-	8,798	8,787		11	9,005
시설투자촉진	3,401	3,401	-	3,401	3,070	-	331	3,401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58,496	58,496		58,496	51,879	-	6,617	56,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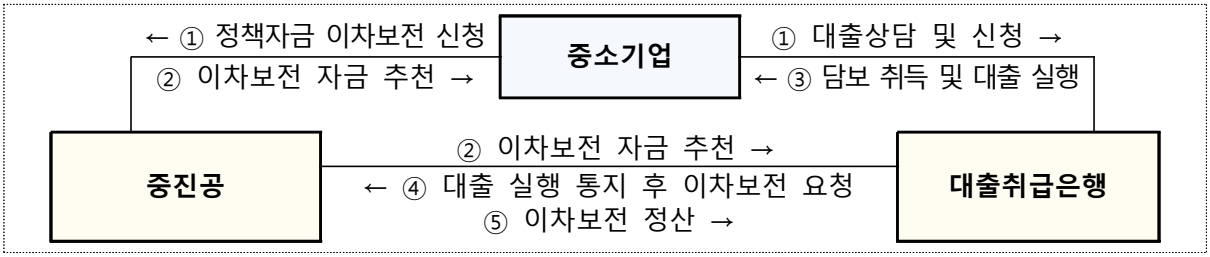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수요예측 오차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내역사업 중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역사업으로, 2024년까지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성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각 정책자금 내에 개별적으로 편성되던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동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58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차보전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차보전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 민간 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혁신성장지원자금),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저탄소·친환경 제조전환 추진 기업(Net-Zero 유망기업자금) 등에 대하여 연 최대 3.0%의 이자를 3년(만기일시상환)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2024~2025년 계속·종료 과제 중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하여는 연 최대 5.5%의 이자를 5년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별 지원 대상

대상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	▪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Net-Zero 유망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수출기업 글로벌화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따라, 기 선정된 과제 중 당초 협약금액 대비 계속·종료비가 감액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약 변경 후 '감액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발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R&D 지원 전문기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의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이차보전금(320-05목)으로 편성된 578억 9,600만원 중 65억 6,900만원이 불용되어 당초 계획된 이차보전금 대비 11.3%가 불용되었음.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집행액이 계획액 124억 600만원 대비 68.9%인 85억 4,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내역사업 상세 집행 내역

구 분			계획액	집행액	불용사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지원	15,300	13,687	'25년 신규공급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23~'24년 지원기업의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로 이차보전 지급대상 잔액이 축소되어 예산 불용 발생
		제조현장스마트화	9,390	8,726	
		Net-Zero 유망기업	3,250	3,01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7,550	17,35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2,406	8,544	개발기술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신규공급목표 미달에 따른 예산 불용
계			57,896	51,32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집행부진의 사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은 연구개발(R&D) 출연금과 비교하여 채무상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차보전 수요가 예산 편성 당시의 전망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차보전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도 은행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담보력 및 신용도 등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당초 신청 금액 대비 최종 대출 승인 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및 집행방향에 따라 지원수요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점, 20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출연금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같은 점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정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지원대상 및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이 실제 집행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정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 규모, 정책환경 변화 및 최근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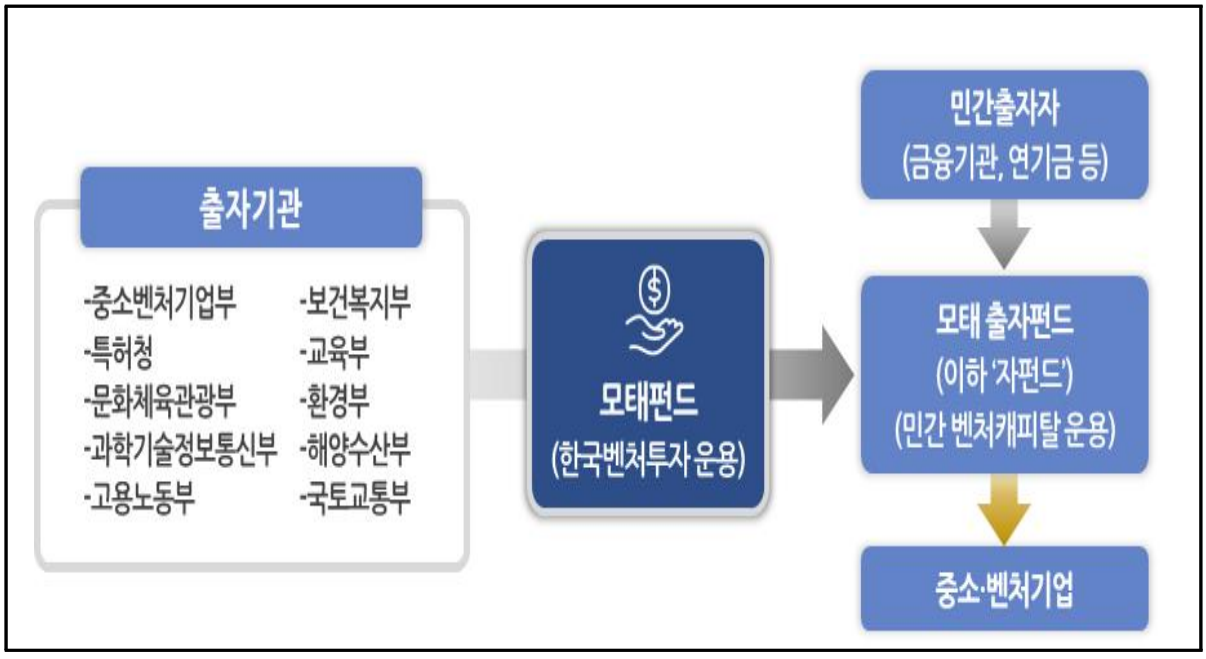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5~)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에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아래 개념도와 같이 모태펀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가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다시 민간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며 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중소기업모태펀드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정부는 12조 9,510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1,475개, 50조 72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이러한 자펀드에서 11,797개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37조 8,865억원을 투자함.[102)]

2025년도 계획현액 8,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500,000	800,000	-	800,000	800,000	-		820,000

□ 검토의견

(1) 추경편성한 스케일업 펀드 집행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 23일 제2회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을 당초 계획 5,000억원 대비 4,000억원(80.0%)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7월 5일 당초 계획 대비 3,000억원(60.0%) 증액한 8,000억원으로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바 있음.

102) 315개 자펀드(9조 868억원) 청산을 통해 2조 9,811억원을 모태펀드에 배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하여 대규모 집중 투자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에 2,400억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에 1,6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이었으며, 증액규모가 3,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에 1,500억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에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변경	세부내역
NEXT UNICORN PROJECT	3,000	①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기업당 평균 20억원 투자 × 125개사 × 60% 출자 = 1,500억원 ②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기업당 평균 100억원 투자 × 30개사 × 50% 출자 = 1,5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와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총 3,000억원이 추가 투입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기반으로 총 5,706억원 규모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설 계획이었음.

NEXT UNICORN PROJECT 펀드 조성 및 투자목표

구 분	투자 대상	조성 규모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전문기술인력이 창업한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모태펀드 1,500억원 출자 → 2,640억원 규모 펀드 조성(출자비율 60%)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중기부 지원사업(R&D·융자·보증·창업사업화 등) 참여기업 중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등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 소액 분산형 투자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 달성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모태펀드 1,500억원 출자 → 3,066억원 규모 펀드 조성(출자비율 50%)
펀드조성목표 합계		**5,706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딥테크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임. 이는 일반적인 분산형 벤처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NEXT UNICORN PROJECT 펀드의 투자실적은 결성총액 6,813억원 대비 570억원으로 투자율이 8.4%에 불과한 상황이며 스타트업 펀드에서는 23건(11.7%)의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스케일업 펀드는 아직 3건(4.9%)의 투자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개)

분 야		결 성			투 자	
		모태 약정	결성 총액	펀드수	투자기업	투자금액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	1,500	3,446	9	23	403
	스케일업 펀드	1,500	3,367	2	3	167
합 계		3,000	6,813	11	26	5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심의위원회 심사→실사(Due Diligence)→투자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투자금 납입 등 벤처투자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 당시 제시된 신속한 자금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103]

물론 벤처투자의 특성상 모든 출자재원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시장의 상황과 우수 투자대상 확보 여부에 따라 일정 규모의 미투자자금(Dry Powder)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운용 방식에 해당함. 따라서 투자집행이 일정 기간 지연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0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6, p.41.

최근 5년 결성 자펀드 미투자 잔액

(단위: 억원)

결성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미투자 잔액	929	4,555	4,007	10,454	18,691	38,6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은 본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성과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 재정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당시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딥테크 기업의 성장자금 부족 해소를 주요 편성 사유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인 스케일업 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추경 편성 논리와 실제 사업 추진 간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을 기대하였던 유망 딥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시기 지연에 따른 성장기회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책효과 또한 상당 부분 이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펀드의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대상 발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재정투입과 실제 정책성과 간 괴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 관리보수 체계의 적정성 재검토 및 배당정책 개선 필요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모태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누적 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관리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출자금 2조원까지 0.55%, 2조원 초과분에 0.4%의 보수율 적용).[104]

2025년 기준 한국벤처투자가 수령한 관리보수는 460억원으로, 2021년 305억원 대비 155억원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금 규모 역시 7조 2,774억원에서 11조 3,313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리보수 증가는 이러한 출자금 증가에 연동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한국벤처투자 지급 관리보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가액 (B-A)	증가율 (B/A)
출자금 (누적)	72,774	82,153	88,968	98,617	113,313	40,539	55.7%
관리보수	305	350	379	416	460	155	5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현행 관리보수 체계는 투자성과와 무관하게 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실제 투자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도 관리보수가 지급되는 문제가 존재함. 실제

104) 보수율은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에 따르며 2026년부터는 출자금 10조원까지 0.4%, 10조원 초과분에 0.02~0.08%p 감소폭 순차 적용 예정

로 2025년 추경을 통해 조성된 NEXT UNICORN PROJECT 펀드 투자실적은 2026년 5월 현재 투자율이 8.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자금 전액에 대한 관리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 한국벤처투자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당기순이익은 2021년 21억 7,800만원에서 2025년 189억 1,400만원으로 768.4% 증가하였고, 내부유보금 역시 같은 기간 408억 1,800만원에서 866억 4,1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2021~2025년 한국벤처투자 당기순이익, 배당금, 내부유보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가액 (B-A)	증가율 (B/A)
당기순이익	2,178	12,508	8,750	16,072	18,914	16,736	768.4%
배당금	650	3,100	2,170	4,500	5,490	4,840	744.6%
배당성향	29.8	24.8	24.8	28.0	29.0	△0.8%p	-
내부유보금 (이익잉여금)	40,818	52,675	58,325	72,227	86,641	45,823	112.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반면 한국벤처투자의 최대주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은 재원의 대부분을 차입금에 의존(2025년 기준 전체 재원의 81.5%)하고 있으며, 정부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민간차입금 규모는 25조 5,900억원에 달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액만 3조 1,654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의 배당성향은 2025년 기준 29.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5년간 중진기금이 수령한 배당금은 총 207억 5,000만원에 불과함. 이는 관리보수 증가로 발생한 수익이 기금 재원 확충보다는 내부유보 확대에 우선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금수입 부족과 정부재정의 추가적인 지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105)106)]

2021~2025년 중진기금 민간차입·이자상환·전입금·배당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민간차입금	6,170,000	5,300,000	5,260,000	4,870,000	5,080,000	25,590,000
차입금이자상환	333,031	419,069	556,895	719,726	734,877	3,165,444
일반회계전입금	1,736,081	1,181,963	1,164,214	1,444,384	1,792,941	7,376,443
복권기금 전입금	63,711	74,666	78,907	72,752	82,620	391,565
배당금	650	3,100	2,170	4,500	5,490	20,7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제조설비 투자나 대규모 자본지출이 요구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수준의 내부유보 필요성에 대해서

105) 2025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부채비율은 454%임.
106)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정책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출자금액의 1% 이상) 등 출자 수요에 대해 추가 기금지출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더욱이 중진기금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모태펀드 운용성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107]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관리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투자성과와 연계된 성과보수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의 배당정책을 재정비하여 배당성향을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107)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 설립 등 신규 대규모 자본지출 수요를 감안하여 배당성향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전북연수원 건립(5451-309), 전남연수원 건립(5451-311)

□ 사업 및 결산 개요

‘전북연수원 건립’(2020~2027, 직접수행) 및 ‘전남연수원 건립(2022~2027, 직접수행)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해 전북 전주 및 전남 광양에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등 인력양성을 위해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착공하였음.

구분	총사업비	장소	규모	착공
전북연수원	30,452백만원	전북 전주	지상3층~지하1층 (부지면적 39,764㎡, 건축연면적 7,933㎡)	2025.4.
전남연수원	31,198백만원	전남 광양	지상6층 (부지면적 32,995㎡, 건축연면적 8,900㎡)	2025.11.

2025년도 계획현액은 전북연수원 77억 5,700만원, 전남연수원 80억 1,3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전북연수원 및 전남연수원 건립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전북연수원 건립	7,757	7,757	-	-	-	7,757	7,757	-	-	8,327
전남연수원 건립	8,013	8,013	-	-	-	8,013	8,013	-	-	12,178

□ 검토의견

(1) 착공 지연사업에 대한 차년도 집행분 선금지급 문제

전북연수원 건립의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12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는 계획하에 공사비(6,782백만원), 감리비(955백만원) 및 시설부대비(20백만원)가 편성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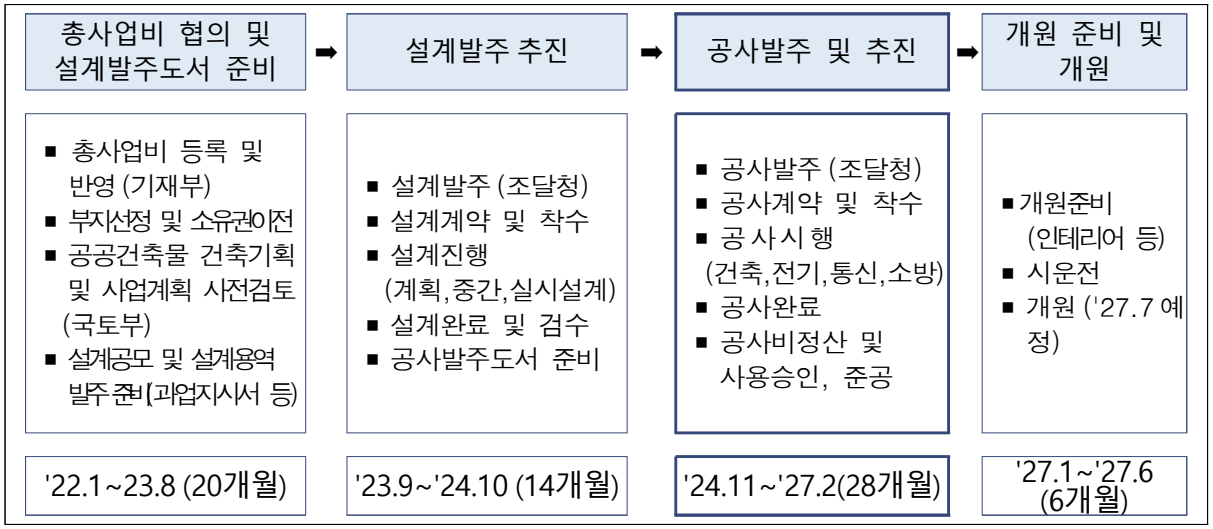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북연수원 건립 추진계획

사업시행확정	건축설계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건축공사/완공**	개원준비
■ 부지매매계약 ■ 공공건축사전검토 ■ 총사업비 확정 및 조정	■ 설계발주·계약 ■ 설계완료·검수 ■ 실시계획·승인	■ 건축허가 ■ 공사발주·계약 ■ 감리발주·계약	**■ 공사착공 ■ 감리용역시행 ■ 관급자재발주 ■ 공사준공**	■ 사용승인 ■ 시운전 ■ 개원준비 *개원('27.1)
'20.1 ~ '22.8 (32개월)	'22.9 ~ '24.7 (23개월)	'24.8 ~ '24.11 (4개월)	**'24.12 ~ '26.12 (25개월)**	'26.7 ~ '26.12 (6개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전남연수원 건립의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11월부터 공사발주 및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는 계획하에 공사비(7,584백만원), 감리비(414백만원) 및 시설부대비(15백만원)가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남연수원 건립 추진계획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다만, 전북연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배수지 이설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4월로 4개월 지연되었고, 전남연수원은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공사발주가 당초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로 7개월 지연되었음.[108]

'25년 신규연수원 건립 일정변경 현황 및 사유

구분	착공 또는 공사발주 시점			지 연 사 유
	당초	변경	지연기간	
전북연수원 착공	'24.12.	'25.4.	+4개월	지자체(전주시) 시설물(배수지) 이설지연
전남연수원 공사발주	'24.11.	'25.6.	+7개월	총사업비 조정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사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는 2025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도말

108)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현재 공정일정과 관련하여 전북은 계획 45.0% 대비 실제 44.6%, 전남은 계획 21.5% 대비 실제 21.0%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임

인 11월과 12월에 선금으로 집행하였음. 그 규모는 전북연수원의 경우 2025년도 예산 77억 5,700만원의 23.5% 수준인 18억 2,499만원이고, 전남연수원의 경우 2025년도 예산 80억 1,300만원의 80.4% 수준인 64억 4,590만원에 이름.

전북연수원 공사비 연말 선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집행	집행월	적요	집행액
공사비	선금	25.11	(관급자재) 전북연수원 건립 관급자재(H형강) 선금	84,067
	선금	25.11	(관급자재) 전북연수원 건립 관급자재(단열덱플레이트) 선금	219,286
	선금	25.11	(관급자재) 전북연수원 건립 관급자재(지열·냉난방시스템) 선금	937,600
	선금	25.12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전기공사 제2차 선금 지급	50,000
	선금	25.12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전기공사 제2차 선금 지급	200,000
	선금	25.12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통신공사 제2차 선금 지급	200,000
	선금	25.12	(관급자재) 전북연수원 건립 관급자재(자동제어) 선금	134,040
합계				1,824,99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남연수원 공사비 연말 선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집행	집행월	적요	집행액
공사비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전기공사 1차 선금 지급	40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통신공사 1차 선금 지급	20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소방공사 1차 선금 지급	20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건축공사 1차 선금 지급	75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건축공사 1차 선금 지급	2,80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건축공사 1차 선금 지급	750,000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건축공사 1차 선금 지급	900,000
	선금	25.12.	전남연수원 건립 폐기물처리용역 선금 지급	31,900
감리비	선금	25.11.	전남연수원 건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차 선금 지급	363,000
		25.11.	전남연수원 건립 전기감리 용역 1차 선금 지급	51,000
합계				6,445,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09]은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 완화와 공정 지연 예방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110],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연도 내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금을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연수원 및 전남연수원의 공사 계획이 각각 4개월 및 7개월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무리한 선금 지급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는데[111], 이는 당해 연도 내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 관련 계약예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므로,

---

10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10) 한시적 계약특례 선금지급한도 확대(기획재정부고시 ‘25.07.0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111) 실제로 11~12월 지급한 선금 중 2025.12.31. 기준으로 공사 참여업체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북연수원의 경우 선금 지급액 18억 2,499만원 중 14억 5,023만원(79.5%), 전남연수원은 선금 지급액 64억 4,590만원 중 15억 1,011만원(23.4%)으로 확인됨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제 공정 진행상황과 회계연도내 실질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재정자금의 유휴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술보증기금

Ⅰ. 기술보증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기술보증기금의 2025년 당초 운용계획은 3조 3,080억원 규모였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700억원을 증액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간 변경으로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대비 700억원(2.1%)이 증가한 3조 3,780억원으로 운용함.

1차 추경 편성으로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00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간 변경 내역을 보면, 통상임금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패소에 따른 미지급 통상임금과 법정지연이자, 패소 부대비용 및 법정수당 인상분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소요 반영으로 인건비 내 보수와 기금관리비 내 일반수용비를 각각 79억원과 1억원 증액하였으며, 상용임금 절감분을 퇴직급여 예치금 예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비 내 고용부담금 4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급증에 따른 부족 예상분 증액소요 반영을 위해 구상권관리 133억원을 증액하였고, ‘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IP유동화증권 발행 등 新사업 준비를 위해 일반연구비 3억원을 증액 및 무형자산 1억원을 감액하였음. 아울러, 의무지출사업의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기술보증대위변제와 보증료환급을 각각 2,379억원과 27억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상승분을 여유자금운용 내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및 기금관리비에서 감액하여 전체 지출규모에 변동이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3.5.	변동없음	-	인건비 [보수]	62	통상임금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패소에 따른 미지급 통상임금과 법정지연이자, 패소 부대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소요 반영
			기금관리비 [일반수용비]	1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63	
5.2.	일반회계 전입금	700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00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한 1차 추경편성에 따른 증액
7.4.	변동없음	-	구상권관리	133	법원의 현금공탁명령 급증에 따른 공탁금 예산 증액 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33	
10.21.	변동없음	-	기금관리비 [일반연구비]	3	'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IP 유동화증권 발행 등 新사업 준비를 위한 법률연구, 약관 제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증액소요 반영
			기금관리비 [무형자산]	△1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	
11.5.	변동없음	-	기술보증대위변제	2,379	기술보증 사고율 상승 등에 따른 대위변제 및 보증해지 규모 증가로, 사업비 부족 예상분 증액소요 반영
			보증료환급	27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406	
12.29.	변동없음	-	인건비 [보수]	17	대법원 판결 패소에 따라 통상임금에 기반한 법정수당 인상분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 증액소요 반영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1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8	
12.30.	변동없음	-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4	상용임금 절감분을 퇴직급여 예치금 예산으로 변경
			기금관리비 [고용부담금]	4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계획현액의 110.0%인 3조 7,147억원을 실현하고 지출은 계획현액의 110.0%인 3조 7,147억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6 이월 (f)	차액 (e+f-d)
		2025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14,654	-	-	14,654	16,904	115.4	-	2,250
	▪ 금융기관출연금	6,315	-	-	6,315	7,629	120.8	-	1,314
	▪ 이자수입	635	-	-	635	705	111.0	-	70
	▪ 구상채권회수	1,570	-	-	1,570	1,475	93.9	-	△95
	▪ 보증료 등 수입	3,527	-	-	3,527	3,678	104.3	-	151
	▪ 기타수입	2,607	-	-	2,607	3,417	131.1	-	810
	2. 정부내부수입	466	700	-	1,166	1,153	98.9	-	△13
	▪ 일반회계전입금	400	700	-	1,100	1,100	100.0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기금전입금	-	-	-	-	-	-	-	-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6	-	-	66	53	80.3	-	△13
	3. 여유자금회수 등	17,960	-	-	17,960	19,090	106.3	-	1,130
	합계	33,080	700	-	33,780	37,147	110.0	-	3,367
지출	1. 사업비	16,173	2,539	-	18,712	18,674	99.8	-	△38
	▪ 대위변제	13,302	2,379	-	15,681	15,677	100.0	-	△4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53	-	-	753	745	98.9	-	△8
	▪ 기타사업비	2,118	160	-	2,278	2,252	98.9	-	△26
	2. 기금운영비	2,265	83	-	2,348	2,338	99.6	-	△10
	▪ 인건비	1,654	80	-	1,734	1,727	99.6	-	△7
	▪ 기금관리비	611	3	-	614	611	99.5	-	△3
	3. 정부내부지출	-	-	-	-	-	-	-	-
	▪ 공자기금예탁금	-	-	-	-	-	-	-	-
	4. 여유자금운용	14,642	△1,922	-	12,720	16,135	126.8	-	3,415
	합계	33,080	700	-	33,780	37,147	110.0	-	3,367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3조 3,780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의 110.0%에 해당하는 3조 7,147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367억원이 증가함.

2025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증감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14,654	-	-	14,654	16,904	2,250
○ 금융기관출연금	6,315	-	-	6,315	7,629	1,314
○ 이자수입	635	-	-	635	705	70
○ 구상채권회수	1,570	-	-	1,570	1,475	△95
○ 보증료 등 수입	3,527	-	-	3,527	3,678	151
○ 기타수입	2,607	-	-	2,607	3,417	810
□ 정부내부수입	466	-	700	1,166	1,153	△13
○ 일반회계전입금	400	-	700	1,100	1,100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기금전입금	-	-	-	-	-	-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6	-	-	66	53	△13
□ 여유자금회수 등	17,960	-	-	17,960	19,090	1,130
합계	33,080	-	700	33,780	37,147	3,367

금융기관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112]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113]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114]으로, 2025년에는 7,629억원을 수납하였음.[115]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직원 주택대여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에는 705억원을 수납하였음.

구상채권회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116]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37조[117]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2025년에는 1,475억원을 수납하였음.

보증료 등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

112)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113)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은행 등을 의미함.

11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등)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출연기준융자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13.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최대 ±2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에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감액 금액(동일 군 내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합산한 출연금을 수납하고 있음.

115)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으로부터 7,629억원을 수납함.

116)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7)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술보증료와 기술평가료 등으로 2025년에는 3,678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수입은 민간출연금[118] 1,364억원, 팩토링매출채권회수 993억원, 중소기업 투자주식 매각 등에 따른 매각대 85억원 및 매각익 650억원 등으로 2025년에는 3,417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100억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53억원 등 1,153억원을 수납하였음.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3조 3,780억원이며, 이 중 집행실적은 3조 7,147억원으로 계획 대비 3,367억원이 증가함.

사업비는 기술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1조 5,677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745억원, 구상권관리와 기술평가 등의 기타사업비 2,252억원 등 총 1조 8,674억원을 지출하였음.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1,727억원, 기금관리비 611억원, 총 2,338억원을 지출하였음.

118) 민간출연금은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금, INNO-BIZ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지자체 협약 특별출연 등으로 구성됨.

2025년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증감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사업비	16,173	-	2,539	18,712	18,674	-	38
○ 기술보증대위변제	13,302	-	2,379	15,681	15,677	-	4
○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	-	-	-	-	-	-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53	-	-	753	745	-	8
○ 구상권관리	159	-	133	292	288	-	4
○ 기술평가	79	-	-	79	73	-	6
○ 기술·경영지도	36	-	-	36	31	-	5
○ 보증료환급	266	-	27	293	287	-	6
○ 업무용부동산취득	385	-	-	385	384	-	1
○ 팩토링금융	994	-	-	994	993	-	1
○ 기보IT운영(정보화)	199	-	-	199	196	-	3
□ 기금운영비	2,265	-	83	2,348	2,338	-	10
○ 인건비	1,654	-	80	1,734	1,727	-	7
○ 기금관리비	611	-	3	614	611	-	3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자기금예탁금	-	-	-	-	-	-	
□ 여유자금운용	14,642	-	△1,922	12,720	16,135	-	△3,415
합계	33,080	-	700	33,780	37,147	-	△3,367

불용액은 48억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8억원, 인건비 7억원 등임.

2025년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38	기술보증대위변제(4),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8), 구상권관리(4), 기술평가(6), 기술·경영지도(5), 보증료환급(6), 업무용부동산취득(1), 팩토링금융(1), 기보IT운영(정보화)(3)
【기금운영비】	10	인건비(7), 기타운영비(3)
합 계	**48**	

주: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 제외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47,826			47,8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2			202
1) 현금및현금등가물		202			202	
가. 보통예금	16			30		
나. 기타현금성자산	186			172		
2. 금융상품			11,856			13,027
1) 단기정기예금		11,416			12,454	
2) 단기기타의금융상품		40			33	
3) 장기정기예금		400			540	
3. 투자증권			28,718			27,720
1) 지분증권		25,846			24,630	
가. 주식	3,748			3,389		
나. 기타지분증권	22,098			21,241		
2) 채무증권		2,872			3,090	
가. 단기국채	1,181			1,058		
나. 단기회사채	1,685			2,032		
다. 장기회사채	6			-		
4. 정부출자금			3			3
1)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3			3	
5. 대여금			2,021			1,983
1) 단기저리융자금		4			4	
2) 단기정부내예탁금		1,950			-	
3) 장기일반융자금		24			-	
4) 장기저리융자금	46			31		
장기저리융자보조원가충당금	3	43		2	29	
5) 장기정부내예탁금		-			1,950	
6. 미수채권			446			549
1) 단기미수이자수익		228			317	
2) 단기기타의미수금	318			319		
단기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100	218		93	226	
3) 장기미수이자수익		-			6	
7. 기타금융자산			4,580			4,345
1) 장기구상채권		3,203			3,101	
2) 지급보증금		1,250			1,121	
3) 투자회원권		7			7	
4) 기타의기타금융자산		120			116	
Ⅱ.유·무형자산			1,915			1,409

	2025			2024	
1. 일반유형자산		1,847			1,369
1) 토지		750		742	
2) 건물	596		57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76	520	56	515	
3) 기계장치	219		201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90	29	178	23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433		424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405	28	392	32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20		57	
2. 무형자산		68			40
1) 소프트웨어		68		40	
Ⅲ.기타자산		62			136
1. 선급비용		1			1
2. 선급법인세		61			135
자산계		49,803			49,374
부채					
Ⅰ.차입부채		230			281
1. 기타차입부채		230			281
1) 미지급금		6		5	
2) 미지급비용		174		233	
3) 예수금		50		43	
Ⅱ.충당부채		16,032			13,399
1. 보증충당부채		15,595			12,980
2. 기타충당부채		437			419
Ⅲ.기타부채		2,166			1,934
1. 선수수익		2,166			1,934
부채계		18,428			15,614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03,609			103,609
Ⅱ.적립금및잉여금		(74,209)			(70,676)
Ⅲ.순자산조정		1,975			827
순자산계		31,375			33,760
부채와순자산계		49,803			49,374

2025년말 현재 총 자산은 전년 대비 429억원 증가한 4조 9,803억원, 총 부채는 전년 대비 2,814억원 증가한 1조 8,428억원이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전년대비 자산처분이익 346억원, 금융기관 등 출연금 924억원, 보증수익 139억원 등 증가에도, 대위변제 2,270억원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금융자산이 3억원 감소하였으며, 유·무형자산은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506억원 증가하였고 기타자산은 선급법인세의 감소 등으로 74억원 감소하였음.

2025년말 총부채는 1조 8,42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814억원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차입부채는 미지급비용 59억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1억원 감소하였고, 충당부채는 보증잔액 및 보증사고발생 증가로 대위변제준비금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2,6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부채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 232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2억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순자산 조성 및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 활동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4,633억원 손실, 정부출연금 1,100억원 및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순자산 조정항목 1,148억원 반영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2,385억원이 감소한 3조 1,375억원임.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18,862	(4,107)	14,755	14,958	(3,949)	11,009
1. 기술금융지원	18,862	(4,107)	14,755	14,958	(3,949)	11,009
Ⅱ. 관리운영비			802			722
1. 이전비용			-			-
2. 국가운영비용			802			722
(1) 인건비			443			400
(2) 운영비			165			154
1) 일반수용비			28			26
2) 공공요금및제세			27			26
3) 소모품비			5			5
4) 업무추진비			9			9
5) 지급임차료			15			13
6) 유류비			-			-
7) 교육훈련비			21			21
8) 여비교통비			10			9
9) 복리후생비			15			14
10) 고용부담금			35			31
(3) 감가상각비			50			42
(4) 기타국가운영비용			144			126
1) 수선유지비			1			1
2) 연구개발비			23			13
3) 외주용역비			120			111
4) 기타비용			-			1
Ⅲ. 비배분비용			235			24
1. 이전비용			3			3
2. 국가운영비용			232			21
Ⅳ. 비배분수익			2,166			2,053
1. 이자수익			584			806
2. 자산처분이익			1,577			1,244
3. 기타수익			5			3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3,626			9,702
Ⅵ. 비교환수익 등			8,993			8,069
1. 부담금수익			7,629			7,357
2. 기타이전수익			1,364			71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633			1,633

2025년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4,755억원으로 전년대비 3,746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순원가 구성요소인 프로그램총원가는 보증사고금액 증가 등에 따른 대손상각비 2,362억원 증가, 대위변제준비비 1,258억원 증가 등으로 총 3,904억원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투자주식 등 처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 13억원 증가, 보증수익 139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총 158억원이 증가하였음.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자산운용 관련 처분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1억원이 증가하였고, 비배분수익은 자산운용 관련 이자수익 222억원 감소하였으나, 처분이익 333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113억원이 증가하였음.

비교환수익은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7,629억원 및 특별협약출연금 1,364억원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출연금수익 증가로 비교환수익이 총 924억원 증가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103,609	(69,243)	975	35,341
1. 보고금액	103,609	(69,243)	975	35,341
Ⅱ. 재정운영결과		1,633		1,633
Ⅲ. 조정항목		200	(148)	52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147)	(147)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1)	(1)
5. 기타순자산의증감		200		200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103,609	(70,676)	827	33,760
Ⅴ. 당기 기초순자산	103,609	(70,676)	827	33,760
1. 보고금액	103,609	(70,676)	827	33,760
Ⅵ. 재정운영결과		4,633		4,633
Ⅶ. 조정항목		1,100	1,148	2,248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1,146	1,146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2	2
5. 기타순자산의증감		1,100		1,100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103,609	(74,209)	1,975	31,375

기초순자산은 기본순자산 10조 3,609억원에서 결손금 누계액 7조 676억원 및 순자산조정 금액 827억원을 감안한 3조 3,760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 4,633억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조정항목은 정부출연금 1,100억원 발생, 투자증권평가손익 1,146억원 및 자산재평가손익 2억원 증가를 반영한 2,248억원이며, 기초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및 조정항목을 감안한 기말순자산은 전년대비 2,385억원이 감소한 3조 1,375억원임.

Ⅱ. 검토의견

1. 민간출연금(59-594)

□ 사업 및 결산 개요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119]에 따라 법정출연금 외에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특별출연을 받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액은 855억 5,000만원이었으나 1,364억 5,1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5년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민간출연금	85,550	85,550	-	85,550	136,451	136,451	-	-	97,521

119)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검토의견

(1) 반복되는 계획 대비 실적 괴리 해소를 위한 수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로서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협약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수입항목임.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수입추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출연금의 실제 수납액이 계획액과 상당한 차이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어 수입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025년의 경우 계획액은 855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364억 5,100만원으로 계획 대비 509억 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159.5%에 달함. 이는 단순한 오차 범위를 넘어 계획과 실적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025년도 민간출연금 계획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를 위해 법정부담금 외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특별출연	85,200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이노비즈 기업[120]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보는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협약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출연	350

구 분	내 용	계획액
지자체 등 협약 특별출연	지자체 등이 특정분야 보증지원실적 등에 따라 특별출연	-
합계		85,550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연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님. 최근 결산을 보면 2019년 수납률은 271.3%, 2020년은 227.1%, 2021년은 128.3%를 기록한 반면, 2022년은 68.1%, 2024년은 66.3% 수준에 그치는 등 계획 대비 실적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입계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2019~2025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				
2019	40,900	40,900	40,900	110,953	110,953	271.3
2020	55,200	55,200	55,200	125,348	125,348	227.1
2021	100,000	100,000	100,000	128,258	128,258	128.3
2022	100,000	100,000	100,000	68,107	68,107	68.1
2023	100,000	100,000	100,000	100,380	100,380	100.4
2024	107,300	107,300	107,300	71,154	71,154	66.3
2025	85,550	85,550	85,550	136,451	136,451	159.5

자료: 기술보증기금

120) 이노비즈 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의 경우 계획과 실적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5년에도 852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232억 3,9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44.6% 수준에 달하였음. 또한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역시 계획액 3억 5,0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46억 7,900만원으로 수납률이 1,336.9%에 달하는 등 계획과 실적 간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남.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협약 특별출연의 경우에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도에서 계획 자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5년 역시 관련 계획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85억 3,3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남.

민간출연금 수납 현황(상세)

(단위: 백만원, %)

출연 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20,000	85,160	33,900	99,443	99,100	116,274	99,300	61,223	98,760	94,361	106,450	65,638	85,200	123,239
지자체 등 협약 특별출연	-	3,150	-	22,000	-	10,707	-	6,505	1,000	4,447	-	2,333	-	8,533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400	370	400	270	400	274	400	379	240	1,072	350	2,683	350	4,679
신재생에너지	1,000	1,568	1,300	96	500	1,003	300	-	-	-	-	-	-	-

상생협약 특별출연														
농·수협 임의출연*	19,500	20,705	19,600	3,539	-	-	-	-	-	-	-	-	-	-
한국벤처투자 특별출연	-	-	-	-	-	-	-	-	-	500	500	500	-	-
합계 (수납률)	40,900	110,953 (271.3)	55,200	125,348 (227.1)	100,000	128,258 (128.3)	100,000	68,107 (68.1)	100,000	100,380 (100.4)	107,300	71,154 (66.3)	85,550	136,451 (159.5)

주: 농·수협 임의출연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20.3월부터 법정출연금으로 수납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물론 민간출연금은 일반적인 세입과 달리 협약 체결 시점, 금융시장 상황, 정책수요 변화 등에 따라 사업연도 중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측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은 정책금융 수요와 금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은 당해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차년도에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사전 예측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

그러나 수입추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반복적인 과소·과대 추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계획과 실적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추계체계 구축이 요구됨.

또한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증가와 기본재산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출연금은 단순한 부수적 수입이 아니라 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실제 수입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협약 체결 가능성, 산업별 정책금융 수요, 금융권 출연 여력,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계획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입추계 체계를 마련하여 수입계획의 정확성과 기금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 임차보증금·대여금·공탁금 반환, 선급법인세 환입 등을 받는 수입과목임.

2025년도 계획액은 2,875억 9,300만원었으나 7조 5,037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2,781억 3,6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7%임.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 이전수입	287,593	287,593	-	287,593	7,503,785	278,136	6,453,590	772,059	287,275

□ 검토의견

(1)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및 채권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구상채권 회수’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소송, 경매 등을 통해 채무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항목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주요 수입원임. 기술보증기

금은 2025년도 계획으로 최근 5개년 평균 구상채권 회수액 및 연대보증인 회수비중 등을 근거로 산출한 1,570억원을 계상하였음.

구상채권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채권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구상채권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게 됨. 따라서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여부는 단순한 채권관리 차원을 넘어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구상채권 회수 실적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상채권 발생액은 2022년 6,701억원에서 2025년 1조 5,677억원으로 8,976억원 증가하여 13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연도 중 회수액은 같은 기간 2,208억원에서 2,1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2025년 2.7%로 하락하였음.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채권 회수 기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향후 대위변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상채권 회수 부진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임.

2019~2025년 구상채권 회수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위변제순증(A-C)			7,959	6,420	4,906	4,946	9,596	11,677	14,252
구상권 발생액(A)			9,882	8,380	6,734	6,701	11,105	13,358	15,677
회수*	연도중(B)		2,321	2,352	2,349	2,208	2,114	2,243	2,109
		원금(C)	1,923	1,960	1,828	1,754	1,509	1,681	1,425
구상권 잔액(D)			65,567	62,430	57,090	55,773	58,881	62,526	64,082
회수율[B/(전년말D+A)]			3.0	3.2	3.4	3.5	3.2	3.1	2.7

주: 출자전환 등 비현금성 회수 포함(총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회수율 하락의 원인으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제도 활성화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채권 증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채무관계자 감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 채무자 수와 연대보증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가 축소된 측면은 존재함.

권리행사 제한채권 및 채무관계자수

(단위: 억원,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잔액(A)	20,015	18,533	16,757	15,445	19,334	22,717	28,754
권리행사제한채권 잔액(B)	5,529	4,908	4,722	4,357	5,324	5,781	6,932
비율(B/A)	27.6%	26.5%	28.2%	28.2%	27.5%	25.4%	24.1%
채무자 수	40,429	37,707	33,332	30,772	30,213	29,696	27,475
연대보증인 수	16,977	14,801	12,314	10,116	8,594	6,994	5,691

주: 직접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행사 제한채권 비중은 최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특히 구상채권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미회수 채권 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구상채권 잔액은 2022년 1조 5,445억원에서 2025년 2조 8,75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상당 규모의 채권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어 향후 상각 규모 증가와 손실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구상채권이 상각되고 있음. 2025년의 경우에도 7,095억원 규모의 채권이 상각 처리되었으며, 이는 직전연도 구상채권 잔액의 31.2%에 해당하는 수준임.

구상채권 상각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 분	직전년도 구상채권 잔액(A)	상각 현황		
		업체수	금액(B)	상각률(B/A)
2019	20,552	3,183	8,281	40.3
2020	20,015	3,235	7,803	39.0
2021	18,533	3,085	6,675	36.0
2022	16,757	2,864	6,266	37.4
2023	15,445	2,363	5,022	32.5
2024	19,334	3,005	7,452	38.5
2025	22,717	2,915	7,095	31.2

주: 직접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권을 정리하여 재무구조를 현실화하는 회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회수율 하락으로 인해 상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채권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실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상채권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채권관리 전문인력 확충, 채무자 재산조사, 회수 가능 채권에 대한 집중관리,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율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상각과 정리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는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술보증대위변제’(1989~)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5,681억원 중 1조 5,67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5년도 기술보증대위변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술보증대위변제	1,330,200	1,568,100	-	1,568,100	1,567,690	-	410	1,527,500

□ 검토의견

(1) 보증사고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사업임. 다만 최근 경기 둔화와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보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동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실제 사고율이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과 금융지원 정책이 병행되면서 기업 부실이 상당 부분 이연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008,300	965,318	1,017,000	822,491	1,213,000	663,512	1,291,500	662,649	1,053,500	1,105,880	1,330,195	1,329,686	1,330,200	1,567,690
95.7%		80.9%		54.7%		51.3%		104.9%		99.9%		117.9%	

자료: 기술보증기금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고, 여기에 저금리의 유동성이 더해져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2022년)의 보증 사고율은 과거 대비 1~2%p 낮았음.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정부의 금융권 상환유예조치 현황

구분	기간	대책	관련 지침
최초	2020.4.1. ~ 2020.9.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3.19.,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2020.3월 중기부)
1차 연장	2020.10.1.~ 2021.3.31.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2020.8.27.,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0.9월 중기부)
2차 연장	2021.4.1.~ 2021.9.3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2021.3.2.,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3월 중기부)
3차 연장	2021.10.1.~ 2022.3.3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2021.9.16.,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9월 중기부)
4차 연장	2022.4.1. ~ 2022.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 (2022.3.23.,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2.3월 중기부)
5차 연장	2022.10.1.~ 2025.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2022.9.27., 금융위)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운용 지침(2022.9월 중기부)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3년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였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실제 사고율은 2020년 3.4%, 2021년 2.5%, 2022년 2.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4.2%, 2024년 4.7%, 2025년 5.2%로 지속 상승하였음. 특히 2025년 사고율은 코로나19 이전 최근 7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4.5%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2025년까지 보증부실 위험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최근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보증		52,859	52,465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64,006
보증잔액(A)		213,306	220,334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9,242
사고금액(B)		9,430	9,921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15,563
사고율	추정	4.8	4.8	4.8	4.8	4.5	4.8	4.0	4.6	4.9
	실제(B/A)	4.4	4.5	4.5	3.4	2.5	2.7	4.2	4.7	5.2
기본재산(C)		18,397	15,579	15,570	21,100	29,176	33,670	34,424	33,174	30,638
운용배수(A/C)		11.6	14.1	14.0	12.1	9.0	7.9	8.1	8.6	9.8

자료: 기술보증기금

2026년 월간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보증잔액(A)	298,677	299,392	302,064	304,673	306,093
사고금액(B)	1,133	2,133	3,257	4,597	5,569
사고율(B/A)	0.4	0.7	1.1	1.5	1.8

주: 월별 사고금액은 누적 사고금액
자료: 기술보증기금

더욱이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3년 연속 실제 사고율이 추정사고율을 상회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이는 최근 중동전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거 코로나 19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험예측 체계가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2020년부터 금융당국이 마련하여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5년 9월을 끝으로 종료된 점은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 의해 잠복되어 있던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정여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기본재산은 2022년 3조 3,670억원에서 2025년 3조 638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보증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운용배수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향후 사고율 상승 시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함.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관리하는 한계기업(성과부진기업)[121]에 대한 보증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 한계기업 보증잔액은 2018년 1,870억원에서 2025년 4,28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보증잔액 대비 비중

121) 보증이용기간이 10년(기술혁신선도형기업은 12년)을 초과하고 기간별 금융성운전자금 가중평균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중 ①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②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③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④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부(-), ⑤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중 하나 이상에 저촉되는 경우 한계기업(성과부진기업)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향후 경기 충격 발생 시 추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단위: 개, 억원, %)

구분	총 보증(잔액기준)		한계기업보증(잔액기준)			
	기업 수(A)	보증잔액(B)	기업 수(C)		보증잔액(D)	
			개사	비중(C/A)	금액	비중(D/B)
2018	78,239	220,334	166	0.21	1,870	0.85
2019	80,288	218,052	212	0.26	2,378	1.09
2020	83,870	254,453	265	0.32	2,865	1.13
2021	85,082	262,684	316	0.37	3,445	1.31
2022	84,239	265,029	372	0.44	4,157	1.57
2023	81,962	279,176	323	0.39	3,627	1.30
2024	82,230	284,713	320	0.39	3,900	1.37
2025	81,492	299,242	345	0.42	4,282	1.43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은 정책금융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으나, 위험관리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보다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최근과 같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더욱 중요함.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 종료 이후 예상되는 잠재부실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종별·기업군별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실 가능

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보증정책 수립 시에는 단기적인 보증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244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005～)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 752억 6,300만원 중 74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5년도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	75,263	75,263	-	75,263	74,515	-	748	50,259

□ 검토의견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필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 등 정부 금융지

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2년 「기술보증기금법」[122] 개정에 따라 기금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 중인 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술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짐.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투자대상·방식·한도

구 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 중인 기업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기업(단, 5년이 지난 기업 중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포함) ▪ 투자용 기술사업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투자방식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통합한도(보증+투자)는 200억원 이내)

자료: 기술보증기금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4.0%(△47,344개) 감소한 113만 5,561개로 집계되었지만 기술기반창업은 전년 대비 2.9%(6,146개) 증가한 22만 1,063개이고 전체창업 대비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19.5%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12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3의2. 보증연계투자

비중을 기록했음.

기술 기반 창업기업 관련 통계

(단위 : 개,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창업기업수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1,135,561
기술기반 기업수 (비중)	228,949 (15.4)	239,620 (16.9)	229,416 (17.4)	221,436 (17.9)	214,917 (18.2)	221,063 (1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2026.2.

최근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보력 부족, 신용도 미흡, 투자위험 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딥테크 기반 기술창업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사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아 일반 금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민간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총 739개 기업에 6,706억원을 투자하여 2,632억원의 투자수익을 실현하였으며, 투자기업 가운데 47개 기업이 IPO에 성공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보증연계투자 실적

(단위: 억원, 개)

구 분	2005~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투자금액	3,354	394	493	981	741	743	6,706
투자기업	345	50	57	97	92	104	739

주: 투자기업 합계는 지원연도간 중복지원 기업 수 제외 수치
자료: 기술보증기금

특히 투자대상 측면에서도 민간 벤처캐피탈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창업 초기기업, 지방 소재 기업, 기계장비·소재·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익성 중심의 민간 투자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정책금융이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전환사채 등 채권성 투자보다 주식인수 및 SAFE[123] 방식 중심의 지분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투자기업 입장에서 부채 증가 없이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더욱이 최근 창업기업의 기술집약도가 높아지고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23)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후속투자 시 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주식의 인수가격이 결정되는 투자방식임.

기술보증기금 VS 민간 분야 및 투자방식별 투자금액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기술보증기금				민간 벤처캐피탈			
	분야			투자방식	분야			투자방식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SAFE·CN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SAFE·CN
2019	96.2	54.3	34.5	100.0	73.8	20.6	7.6	85.3
2020	100.0	60.9	16.4	100.0	70.8	21.8	10.5	85.7
2021	93.7	58.5	30.5	100.0	69.5	18.2	9.7	91.7
2022	89.7	70.4	40.4	100.0	70.0	19.4	10.3	91.0
2023	88.4	61.3	34.1	100.0	62.2	26.7	17.9	87.8
2024	89.8	71.7	38.1	100.0	53.9	24.7	19.8	87.8
2025	93.5	73.1	43.2	100.0	54.9	19.8	18.3	87.4
평 균	**93.0**	**64.3**	**33.9**	**100.0**	**65.0**	**21.6**	**13.4**	**88.1**

주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후속투자 시 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가격이 결정되는 투자방식(SAFE는 주식, CN은 전환사채(CB)로 전환)

2.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출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 KVCA YEARBOOK(‘26.5월)”

3. 반올림에 따라 단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기술보증기금

민간 VS 기술보증기금의 업력별 신규투자금액 비중 현황

(단위 :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1년 미만	6.3	13.7	6.1	8.3	9.5	13.8	6.1	5.4	5.6	5.7	4.3	3.8
1~3년 이내	24.4	58.1	18.1	32.5	20.2	33.5	18.5	31.1	13.4	27.5	9.8	40.4
3~7년 이내	40.1	28.2	45.3	52.8	40.4	42.4	37.6	51.9	34.9	56.5	40.8	49.4
7년 초과	29.2	-	30.5	6.4	29.9	10.3	37.8	11.6	46.1	10.3	45.1	6.4

민간 신규투자금액 비중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 KVCA YEARBOOK(‘26.5월)”

자료 : 기술보증기금

그러나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양호한 투자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규모는 연간 700억~9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6년 계획 역시 503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는 투자수요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정적 제약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임.

현행 「기술보증기금법」[124]은 보증연계투자 총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신용보증기금의 투자한도는 기본재산의 10% 이하). 그런데 최근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기본재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실제로 투자잔액은 2022년 2,326억원에서 2025년 3,843억원으로 65.2% 증가하였으나, 기본재산은 같은 기간 3조 4,215억원에서 3조 1,375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기본재산 대비 투자잔액 비중은 2022년 6.8%에서 2025년 12.3%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향후 투자 확대 여력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12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본재산 대비 투자잔액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투자액	255	394	493	981	741	743
기본재산(A)	21,504	29,625	34,215	35,341	33,760	31,375
투자상한(A*20%)	4,301	5,925	6,843	7,068	6,752	6,275
투자잔액(B)	1,955	2,063	2,326	3,062	3,508	3,843
투자비중(B/A)	9.1	7.0	6.8	8.7	10.4	12.3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정책목적상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초기창업기업과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규모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보증연계투자는 투자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해당함.

다만 동 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창업 초기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지역균형발전과 기술창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는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통해 민간투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 민간 벤처캐피탈이 후속 투자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민간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등 기금의 모험자본 공급여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5년도 운용계획은 7조 860억원 규모로, 1·2차 추경 및 사업간 지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 대비 4조 2,998억원 증액된 11조 3,858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1·2차 추경으로 인해 4조 2,8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외 기금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이 100억원 증액되는 등 총 5번의 기금 변경이 있었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5.1.	일반회계전입금	19,859	소상공인 성장지원	16,973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변경(1차 추경)
5.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417	소상공인 재기지원	494	점포철거비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추가 소요에 따른 기금변경(1차 추경)
5.1.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4,399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상생페이백 추진을 위한 기금변경(1차 추경)
5.1.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334	신규 보증공급 수요 증가에 따른 기금변경(1차 추경)
5.1.	-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75	공자기금 추가 예수에 따른 기금변경(1차 추경)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5.1.	공자기금 예수금	5,000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	신용취약자금 등 증액을 위한 기금변경(1차 추경)
5.30	-	-	소진기금 기본경비	2.4	임차보증금 납입을 위한 세목 간(경상보조→자본보조) 조정을 위한 기금 변경
5.30	-	-	소진기금 기본경비	△2.4	
7.4	일반회계전입금	3,128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813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 지원 등 보증수요 증가로 기금변경(2차 추경)
7.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08	소상공인 재기지원	263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지원 수요 증가로 기금 변경 (2차 추경)
7.4	-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3	소상공인 주간 붐업행사 개최 수요로 인한 기금변경 (2차 추경)
7.4	-	-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50	스마트기술 보급 추가 수요로 인해 기금 변경 (2차 추경)
7.4	공자기금 예수금	△500	소상공인지원융자	△500	재도전특별자금 감액을 위한 기금변경(2차 추경)
7.4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814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6	공자기금 예수금 감액에 따른 예수이자 상환 감액 (2차 추경)
8.29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00	소상공인 재기지원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요에 따른 기금변경
8.29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52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목 조정 (사업출연금→이차보전금)
8.29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52	
10.28	-	-	소상공인 성장지원	△35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에 따른 기금 변경
10.28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350	
	합계	**42,998**	**합계**	**42,998**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101.7%인 11조 5,830억원을 실현하고, 지출도 101.7%인 11조 5,830억원을 집행하였음. 수입 대비 지출 차액은 없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5 이월 (f)	차액 (e+f-d)
		2025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37,347	△714	-	36,633	39,205	107.0	-	2,572
	▪ 융자원금회수	32,620	△714	-	31,906	35,484	111.2	-	3,579
	▪ 재산수입	4,200	-	-	4,200	3,425	81.5	-	△775
	- 융자이자수입	3,872	-	-	3,872	2,684	69.3	-	△1,187
	- 기타재산이자수입	329	-	-	329	741	225.4	-	412
	- 기타잡수입	-	-	-	-	-	-	-	-
	▪ 경상이전수입	527	-	-	527	295	56.0	-	△232
	- 기타경상이전수입	527	-	-	527	295	56.0	-	△232
	2. 정부내부수입	33,513	27,487	-	61,000	60,400	99.0	-	△600
	▪ 일반회계전입금	15,269	22,987	-	38,256	38,256	100.0	-	-
	▪ 기금예수금	18,244	4,500	-	22,744	22,144	97.4	-	△600
	3. 여유자금회수 등	-	16,225	-	16,225	16,225	100.0	-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6,225	-	16,225	16,225	100.0	-	-
	합계	70,860	42,998	-	113,858	115,830	101.7	-	1,972
지출	1. 사업비	53,213	42,929	-	96,142	95,780	99.6	-	△362
	▪ 융자사업	37,700	4,500	-	42,200	41,842	99.2	-	△358
	▪ 경상사업	15,513	38,429	-	53,942	53,938	100.0	-	△4
	2. 기금운영비	612	-	-	612	612	100.0	-	-
	3. 정부내부지출	17,035	69	-	17,104	16,504	96.5	-	△600
	▪ 공자기금예수원금	11,204	-	-	11,204	11,204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5,831	69	-	5,900	5,300	89.8	-	△600
	4. 여유자금운용 등	-	-	-	-	2,934	순증	-	2,934
	합계	70,860	42,998	-	113,858	115,830	101.7	-	1,972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11조 3,858억원으로 당초 계획 7조 860억원 대비 4조 2,998억원 증액됨. 실현된 수입액은 11조 5,830억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101.7%로 1,972억원이 초과 수입됨.

2025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37,347	-	△714	36,633	39,205	2,572
○ 융자원금회수	32,620	-	△714	31,906	35,484	3,579
○ 재산수입	4,200	-	-	4,200	3,425	△775
- 융자이자수입	3,872	-	-	3,872	2,684	△1,187
- 기타재산이자수입	329	-	-	329	741	412
- 기타잡수입	-	-	-	-	-	-
○ 경상이전수입	527	-	-	527	295	△232
- 기타경상이전수입	527	-	-	527	295	△232
□ 정부내부수입	33,513	-	27,487	61,000	60,400	△600
○ 일반회계전입금	15,269	-	22,987	38,256	38,256	-
○ 기금예수금	18,244	-	4,500	22,744	22,144	△600
□ 여유자금회수 등	-	-	16,225	16,225	16,225	-
합계	70,860	-	42,998	113,858	115,830	1,972

2025년도 계획현액을 초과한 주요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 사업에 따른 원금회수액에서 3,579억원, 사업대기성 자금[125] 운용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항목에서 412억원을 초과 실현함. 계획현액 대비 과소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 이자가 1,187억원, 보조사업 집행정산(정산 후 반납금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232억원, 융자사업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600억원 과소 실현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11조 3,858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7조 860억원에서 4조 2,998억원 증액됨. 이 중 101.7%에 해당하는 11조 5,830억원을 집행함.

증액된 4조 2,998억원의 내역에는 지속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1차 추경에 따라 4조 275억원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2차 추경에 따라 2,623억원이 증액됨.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한시지원 사업에서 100억원이 증액됨.

125) 재원 조달과 기금 집행 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성 대기자금

2025년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37,700	-	4,500	42,200	41,842	-	358
○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	-	4,500	42,200	41,842	-	358
□ 경상지출사업	15,513	-	38,429	53,942	53,938	-	4
○ 지역신용보증재보증	2,109	-	6,147	8,256	8,256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834	-	-	834	834	-	-
○ 소상공인성장지원	2,651	-	16,623	19,274	19,269	-	4
○ 소공인특화지원	1,199	-	-	1,199	1,199	-	-
○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	-	856	3,605	3,605	-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	-	14,750	19,402	19,402	-	-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101	-	3	104	104	-	-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122	-	50	1,172	1,172	-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23	-	-	23	23	-	-
○ 소진기금정보화경비	73	-	-	73	73	-	-
<사업비 총계>	53,213	-	42,929	96,142	95,780	-	362
□ 기금운영비	612	-	-	612	612	-	-
□ 정부내부지출	17,035	-	69	17,104	16,504	-	600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1,204	-	-	11,204	11,204	-	-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5,831	-	69	5,900	5,300	-	600
□ 여유자금운용	-	-	-	-	2,934	-	△2,934
합계	70,860	-	42,998	113,858	115,830	-	△1,972

불용액은 962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서 358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4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에서 600억원 불용이 발생함.

2025년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362	
융자사업	358	- 재난재해(가뭄, 화재, 호우 등) 자금 집행 잔액
경상사업	4	- 소상공인 성장지원(손실보상금 사후관리) 일반용역비 잔액 발생
【정부내부지출】	600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액 잔액 발생(600억원)
합 계	**962**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과목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128,966		143,059
현금및현금성자산	1,064		891	
금융상품	17,851		31,470	
투자증권	10		11	
대여금	109,653		110,226	
미수채권	388		461	
Ⅱ.유무형자산		2,829		2,878
일반무형자산	2,829		2,878	
Ⅲ.기타자산		-		-
자산계		131,795		145,937
부채				
차입부채		221,048		210,047
차입금	220,053		209,114	
기타차입부채	995		933	
Ⅱ.충당부채		5		13
보증충당부채	5		13	
Ⅲ.기타부채		4		4
부채계		221,057		210,064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Ⅱ.적립금및잉여금		(89,263)		(64,128)
Ⅲ.순자산조정		-		
순자산계		(89,263)		(64,128)
부채및순자산계		131,794		145,936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3조 1,7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4,142억 원 감소하였고,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요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대여금은 10조 9,653억 원(일반융자금 3조 7,384억 원, 저리융자금 7조 2,227억 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조 3,618억 원 감소함. 대여금 대손충당금은 1조 8,920억 원(일반융자금 5,553억 원, 저리융자금 1조 3,368억 원)으로 직접대출로 인한 대손추계액 증가 및 저금리 대출 진행에 따른 융자보조원가 비용으로 전년대비 1,187억 원이 증가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64억원으로, 전년대비 173억원이 증가함.

금융상품은 1조 7,851억원으로 대위변제 증가 및 여유자금을 활용한 사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619억 원 감소함

투자증권은 10억원으로, 사고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전년(11억원)과 유사한 수준임.

미수채권은 388억원으로 징수결의된 미수금 회수에 따라 전년 대비 73억원 감소함.

일반유형자산은 2,829억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건물과 감가상각액 증가로 49억원이 감소함.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채는 22조 1,05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93억원이 증가함.

차입금은 22조 53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에 따라 전년대비 1조 939억원이 증가함.

기타차입부채 미지급비용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미지급금으로 전년대비 62억원이 증가한 995억원임.

전환대출 보증을 위한 충당부채는 보증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5억원임.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 △8조 9,262억원이며 전년대비 2조 5,13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재정운영결과를 반영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과목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61,394	(3,048)	58,346	23,961	(8,095)	15,865
1.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8,256		8,256	1,254	(88)	1,165
2.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53,138	(3,048)	50,090	22,707	(8,007)	14,700
Ⅱ.관리운영비			215			215
Ⅲ.비배분비용			5,362			5,034
Ⅳ.비배분수익			532			660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3,391			20,454
Ⅵ.비교환수익 등			38,256			16,350
기타이전수익등			38,256			16,350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5,135			4,104

2025회계연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원가는 총 5조 8,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481억원이 증가함.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8,25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5조 90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및 경비로 215억원임.

기타 현행 재정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배분비용 및 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5,362억원으로 전년대비 328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추가 공자기금예수금 발생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비배분수익은 전년대비 128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여유자금 규모 축소에 따른 운용수익금 감소에 기인함.

비교환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년대비 2조 1,906억원이 증가한 3조 8,256억원이며 이는 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함

재정운영결과는 총 2조 5,136억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사업 규모 확대 및 융자채권 상·매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

(2)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억원)

과목	2025	2024
수익(Ⅰ+Ⅱ)	41,837	25,105
Ⅰ.이전수익	38,256	16,350
1.기타이전수익	38,256	16,350
Ⅱ.국가운영수익	3,581	8,755
1.이자수익	3,288	3,416
2.기타국가운영수익	293	5,339
비용(Ⅲ+Ⅳ)	66,973	29,212
Ⅲ.이전비용	54,504	20,584
1.국고보조사업비	44,136	12,088
2.출연사업비	9,558	1,266
3.기타이전비용	811	7,230
Ⅵ.국가운영비용	12,468	8,628
1.인건비	526	502
2.이자비용	5,362	5,034
3.운영비	162	156
4.감가상각비	25	30
5.자산평가손실	23	214
6.기타국가운영비용	6,370	2,692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5,136	4,107

이전수익은 전년 대비 2조 1,90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증가에 기인함.

국가운영수익은 전년 대비 5,17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정산 반납금의 감소 및 여유자금 규모 축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에 결과임..

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3조 3,9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추가 예산편성 진행에 따른 보조사업에 확대로 전년대비 3조 2,048억원이 상승한 국고보조사업비에 기인함.

비슷한 이유로 추가 예산편성 및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출연사업 확대로 출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8,292억원이 증가함.

기타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6,4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에 대한 증가폭 감소에 기인함.

국가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3,840억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융자 대손상각비 증가에 따른 기타국가운영비용의 상승이 주요 원인임.(전년 대비 3,678억원 증가)

인건비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 인상분에 기인함.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금운영비 상승이 원인임.

그밖에 감가상각비와 자산평가손실은 전년 대비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감가상각비 전년 대비 5억, 자산평가손실 191억원 감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	(60,023)	-	(60,023)
1. 보고금액	-	(60,023)	-	(60,023)
Ⅱ. 재정운영결과		4,104		4,104
Ⅲ. 조정항목	-	-	-	-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	(64,127)	-	(64,127)
Ⅴ. 당기 기초순자산	-	(64,127)	-	(64,127)
1. 보고금액	-	(64,127)	-	(64,127)
Ⅵ. 재정운영결과		25,136		25,136
Ⅶ. 조정항목	-	-	-	-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	(89,263)	-	(89,263)

기초순자산은 2024회계연도 기말순자산 △6조 23억원과 동일하며, 2025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당년 재정운영결과 2조 5,136억원이 반영된 △8조 9,263억원임.

(4)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과목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66)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1,985	
(1) 이자수입	3,329	
(2) 기타유입	38,656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9,851	
(1) 보조금지급	44,091	
(2) 출연금지급	9,558	
(3) 인건비지급	526	
(4) 이자지급	5,300	
(5) 기타유출	376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9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1,198	
(1) 금융상품, 투자증권처분	85,714	
(2) 대여금회수	35,48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4,099	
(1)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72,198	
(2) 대여금지급	41,901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4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2,144	
(1) 차입금차입	22,14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204	
(1) 차입금상환	11,204	
Ⅳ.현금의증감(Ⅰ+Ⅱ+Ⅲ)	173	
Ⅴ.기초의현금	891	
Ⅵ.기말의현금(Ⅳ+Ⅴ)	1,064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현금유입은 4조 1,985억원으로 주로 정부내전입금으로 인한 기타유입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현금유출은 5조 9,851억원이며 주로 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보조비·출연금 지급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현금유입은 총 12조 1,198억원이며 주로 금융자산 처분 및 대여금 회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현금유출은 총 11조 4,099억원이며 주로 금융자산 취득 및 대여금 지급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현금유입은 총 2조 2,144억원으로 주로 정부내차입금의 차입이 반영된 결과이며 현금유출은 총 1조 1,204억원으로 정부내차입금 상환이 반영됨.

기초현금은 891억원이며, 기말의 현금은 1,064억원으로 173억원이 상승함.

Ⅱ. 검토의견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004~,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원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30%~80%)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동 사업 계획액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계획현액은 8,256억 4,600만원으로 전액 집행(출연)되었음.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10,940	825,646	-	825,646	825,646	-	-	168,128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03,540	536,977	-	536,977	536,977	-	-	157,023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지원	7,400	7,400		7,400	7,400		-	1,480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	281,269	-	281,269	281,269	-	-	9,625

□ 검토의견

(1)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수요 예측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내역사업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7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사업임.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지원 사업 상세 개요

구분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취급은행	기존보증의 채권은행
금리	은행 산출금리
보증료율	지역신보 산출 보증료율(단, 저신용자 0.2% 감면)
보증비율	기존 보증의 보증비율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면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

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24. 7. 3)

<table>
<tr><th>구 분</th><th>①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th><th>② (지역신보 보증)
전환보증 지원(신규)</th><th>③ (민간금융)
대환대출 요건 완화</th></tr>
<tr><td>지원 내용</td><td>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예 :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td><td><u>신규 보증으로의 전환(5조원 규모)</u>을 통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 <u>상환기간 연장효과</u></td><td>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td></tr>
<tr><td>대상</td><td><table><tr><th>현행</th><th>개선</th></tr><tr><td>정상상환 중</td><td>좌동</td></tr><tr><td>업력 3년↑</td><td>무관</td></tr><tr><td>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td><td>대출잔액 기준폐지</td></tr></table></td><td>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中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u>(신규 프로그램)</u></td><td><table><tr><th>현행</th><th>개선</th></tr><tr><td>NCB 839점 이하</td><td>NCB 919점 이하</td></tr><tr><td>'23.8.31 이전 대출</td><td>'24.7.3 이전 대출</td></tr><tr><td>사업자 대출 한정</td><td>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td></tr></table></td></tr>
<tr><td>상환 기간</td><td>최대 +5년 연장</td><td>최대 +5년 연장*
*연장시 상환방식:
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등</td><td>최대 10년 분할상환</td></tr>
</table>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 7. 3.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조원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0.37%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 74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0.7%에 불과하였음.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현액	집행액 (C)			
7,400	7,400	7,400	7,400	-	7,400	792	7,400	792	-	-	10.7

* ('25년 실집행률)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실집행(신보중앙회→금융회사)은 금융회사 등에서 수수료 선지원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시차 발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2025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2025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액이 당초 정부의 예상 대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주요 금융업권별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단위: %)

구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신용대출			
업권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은행	1.43	0.56	1.25	0.55	1.09	0.45	0.95	0.40	0.95	0.12	0.83	0.11
저축	1.64	1.24	1.78	1.20	1.80	1.24	1.73	1.20	1.69	1.45	1.64	1.33
신협	1.61	0.45	1.75	0.55	1.61	0.45	1.75	0.55	1.43	0.04	1.37	0.04
생명	1.61	1.28	1.46	1.16	2.08	1.28	1.50	1.00	1.00	0.00	-	-
손해	1.60	1.10	1.5	1.00	1.50	1.00	1.50	1.10	1.00	0.00	-	-

*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의 차이 발생 가능

※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 예정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1. 10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단위: %)

구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신용대출			
은행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국민	1.40	0.58	1.20	0.58	0.70	0.79	0.60	0.59	0.70	0.02	0.60	0.02
농협	1.40	0.65	1.20	0.65	0.70	0.53	0.60	0.53	0.70	0.01	0.60	0.01
신한	1.40	0.61	1.20	0.60	0.80	0.76	0.70	0.72	0.80	0.03	0.70	0.03
우리	1.40	0.74	1.20	0.74	0.70	0.52	0.60	0.37	0.70	0.04	0.60	0.04
하나	1.40	0.66	1.20	0.66	0.70	0.61	0.70	0.61	0.70	0.04	0.70	0.04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1. 10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은행권의 자체적인 수수료 면제·감면 조치와 중복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10.7%에 그치는 등 사업 수요 예측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융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소상공인의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 일부 시중은행이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감경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소요를 보다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126)]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건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 발표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금융권 지원정책, 시장 여건 변화 및 사업 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 유사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특례보증 집행시기 미반영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대규모 불용

내역사업 중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은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12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0, pp.215~216.

이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받은 기업 중 해당 기간 동안 매출 감소 또는 신용점수 하락 등을 겪은 피해기업에 대하여 7년(거치 최대 3년 및 분할상환) 장기 특례보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을 통하여 이차보전을 1%p 지원하고 보증료율의 절반인 0.4%를 지원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기업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폐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을 15년(거치기간 2년)으로 확대하고 2.7% 수준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료율 0.9%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상세 개요

□ 사업목적

○ 폐업 또는 코로나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보증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2020.4~2025.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① (코로나 피해기업) 2020.4~2025.6월까지 보증부 대출 이용* 기업

* ① 매출감소 ② 신용점수 100점 이상 하락 등

② (폐업기업) 정상 상환 중이며,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개인사업자(단, 해당 보증 이용시 사업자보증 제한)

○ (지원내용)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코로나 기간(2020.4~2025.6월) 중 지원받은 보증부 대출을 장기(7년)·저리(1%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② (폐업기업) 기존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7년 → 15년까지로 연장(거치기간 2년)하여 폐업 후 상환부담 완화

* 기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 지원

○ (우대사항)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차보전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보증기간(7년, 거치 최대 3년 및 분할상환), 금리(3.4%* 수준)

* 은행권 우대금리(CD금리+1.8%p, 4.4%)-이차보전 1%p

→ 2025.5월 10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 평균 5.94% 대비 △2.5%p 혜택

① 장기분할 상환 : 7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이차보전 지원: 1%p의 이자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③ 보증료 지원 : 보증기간 확대(5년→7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의 50%(0.4%)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 (※특례보증 고정보증료율(0.8%)의 50%)

② (폐업기업) 보증기간(現 7년 → 15년, 거치2년), 금리(2.7%* 수준)

* 은행권 우대금리(CD금리+0.1%p, 2.7%)로 금융위와 협의 중(2024.12월 금융위 旣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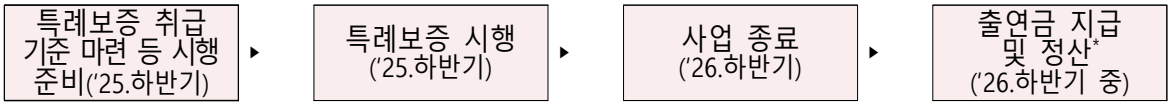
→ 2025.5월 10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 평균 5.94% 대비 △3.2%p 혜택

① 장기분할상환: 15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보증료 지원: 보증기간 확대(7년→15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0.9%) 전액을 정부 재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

○ (수행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사업출연금은 신보중앙회에 교부한 후 용도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에 재교부한 후 정산



* 보증실행 실적에 따라 사업 중 분기별 정산 시행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사업 대상별 비교

구분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폐업기업 대상
지원대상		'20.4~'25.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지원조건 (판단기준)		매출감소 또는 신용점수 하락 등 피해 발생	정상 상환 중이며, 폐업한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대출기간	최대 7년	최대 15년
	이차보전	1%p	-
	우대금리	CD+1.8%p	금융채 5년물 + 0.1%p
보증료 지원		보증료 50%지원(0.4%)	보증료 0.9% 전액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재보증 재원 1,500억원, 보증료 지원 220억 5,000만원, 이차보전을 통한 이자 지원 52억 5,000만원 등 총 1,77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폐업기업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재보증 재원 750억원과 보증료 지원 289억 6,900만원 등 총 1,039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6년 4월 말 기준 실제 집행 실적을 보면, 폐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은 75.51%, 보증료 지원은 58.45%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127],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실집행률은 44.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27)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차 추경 당시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은 2026년까지 보증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계획대로 보증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25.12. 실집행액	'26.4. 실집행액	실집행률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	150,000	125,419	148,545	99.03%
	보증료지원	22,050	15,813	21,922	99.42%
	이차보전	5,250	219	2,325	44.29%
폐업기업	특례보증지원	75,000	49,175	56,633	75.51%
	보증료지원	28,969	4,032	16,933	58.45%
계		281,269	194,658	246,358	87.5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특례보증부 대출의 수요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7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출평잔을 공급목표액 전액인 1조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에 기인하였음.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산출내역

구 분	산출세부내역
○ (코로나 피해기업) 177,300백만원	* 약 3.3만개사 지원 = 10,500억원(총 공급규모) ÷ 0..32억원(업체당 평균 보증 이용금액)
- (재)보증지원 150,000백만원	* 10,500억원(총 지원규모) ÷ 7(운용배수) = 150,000백만원
- 이차보전 5,250백만원	*** 10,500억원(총 지원규모) × 1%(이차보전율) ÷ 12개월 × 6개월 = 5,250백만원**
- 보증료지원 22,050백만원	* 10,500억원(총 지원규모) × 0.4%(보증료지원) ÷ 12개월 × 63개월 = 22,050백만원
○ (폐업기업) 103,969백만원	* 약1.7만개사 지원 = 3,750(총 공급규모) ÷ 0..22억원(업체당 평균 보증 이용금액)
- (재)보증지원 75,000백만원	* 3,750억원(총 지원규모) ÷ 5(운용배수) = 75,000백만원
- 보증료지원 28,969백만원	* 3,750억원(총 지원규모) × 0.9%(보증료지원) ÷ 12개월 × 103개월 = 28,969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자료를 재정리

즉, 이차보전은 대출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소요액은 대출 공급 규모와 실행 시기, 대출 잔액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반영된 동 사업의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공급액이 집행 초기에 전액 실행될 것을 전제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여 상당한 금액이 불용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28)]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신규 대출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이차보전액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8)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반영된 동 사업의 대출공급이 2026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집행 시기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차보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2.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4131-316)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2017~, 보조)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유도와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은 834억 2,2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829억 7,100만원임. 동 사업은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혁신소상공인도약지원’,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5년도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업가형소상공인 육성	83,422	-	-	83,422	83,422 [82,971]	-	-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19,288	-	-	19,288	19,288 [19,006]	-	-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	34,134	-	-	34,134	34,134 [34,027]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30,000	-	-	30,000	30,000 [29,938]	-	-

□ 검토의견

(1) 공통: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사업은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내역사업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과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 내역사업의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연례적으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2023~2025년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세부사업 정산보고서 제출현황

구분 (내역사업)	사업계획 변경일자			사업종료일자			정산보고서 제출일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창업사 관학교*	23.9.21. 24.01.02. 24.01.25. 24.03.25. 24.10.31.	24.07.16. 24.09.04. 24.10.31. 24.12.02. 25.03.17. 25.10.31.	25.12.09.	24.11.30.	26.04.30.	26.03.31.	25.05.08	미제출 (사업 진행중)	미제출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									
로컬크 리에이 터	-	24.07.01. 24.08.02. 24.10.24. 24.11.29. 25.04.15.	25.06.13. 25.07.09. 25.11.14. 26.05.08.	24.04.30.	25.03.31.	26.03.31.	24.6.19	26.01.08.	미제출

로컬 브랜드	-	24.07.01. 24.08.02. 24.10.24. 24.11.29. 25.04.15.	25.06.13. 25.07.09. 25.11.14. 26.05.08.	24.04.30.	25.03.31.	26.03.31.	24.6.19	26.01.08.	미제출
강한 소상공인	23.09.13. 23.12.19. 24.03.19.	24.07.01. 24.08.02. 24.10.24. 24.11.29. 25.04.15.	25.06.13. 25.07.09. 25.11.14. 26.05.08.	24.06.30.	25.03.31.	26.03.31.	24.10.24.	26.01.08.	미제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23.09.13. 23.12.19. 24.03.19.	24.07.01. 24.08.02. 24.10.24. 24.11.29. 25.04.15.	25.06.13. 25.07.09. 25.11.14. 26.05.08.	'24.6.30	25.03.31.	26.03.31.	24.10.24.	26.01.08.	미제출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	24.07.01. 24.08.02. 24.10.24. 24.11.29. 25.04.15.	25.06.13. 25.07.09. 25.11.14. 26.05.08.	24.06.30.	25.03.31.	26.07.31.	24.10.24.	26.01.08.	미제출 (사업 진행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129]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30]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

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131]에서도, 담당부서는 ①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②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③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만 발생하더라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할 것임.

그러나 최근 3년간 정산보고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가

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131)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실적 및 정산보고의 법정 기한(2개월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사업이 총 6차례에 걸쳐 계획 변경되면서 차차년도인 2026년 4월에 종료되어 현재까지 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사업이 5차례 계획 변경되어 2025년 4월에 종료되었으나, 정산보고서는 그다음 회계연도인 2026년 1월에 제출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정산보고서 제출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것은, 당초 추진 일정과 달리 빈번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으며,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사업 정산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임.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 차년도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등에 활용되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국회 재정통제의 효과성과 직결되는 사항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보조금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성장지원’(2006~, 보조)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컨설팅, 조직화·협업화,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은 1조 9,273억 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조 8,879억 1,200만원, 불용액은 443억원임. 동 사업은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비즈플러스카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임.

2025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성장지원	265,085	1,927,379	-	1,927,379	1,926,935 [1,887,912]	-	443	621,243
소상공인 역량강화	240,674	205,632	-	205,632	205,189 [190,546]	-	442	21,603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2,221	2,221	-	2,221	2,221 [2,178]	-	-	-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1,540	11,540	-	11,540	11,540 [10,651]	-	-	-
소상공인 통계 전담연구센터	10,650	10,650	-	10,650	10,650 [9,696]	-	-	9,650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1,565,980	-	1,565,980	1,565,979 [1,543,485]	-	1	579,005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131,356	-	131,356	131,356 [131,356]	-	-	-
소상공인협업물류 지원	-	-	-	-	-	-	-	9,225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	-	-	-	-	-	-	1,760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과 '소상공인협업활성화'는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으로 26년부터 통합 운영됨.
**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은 26년에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내역사업 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배달 및 온라인 유통이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경로로 정착하면서 증가한 배달·배송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신규로 추진된 한시 사업임. 2025년도 예산 2,037억원 중 자체변경으로 350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현액은 1,686억 5,8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1,542억 7,085만원임.

2025년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내내역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성장지원	265,085	1,927,379		1,927,379	1,926,935 [1,887,912]		443	610,258
소상공인 역량강화	240,674	205,632		205,632	205,189 [190,546]		442	21,60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3,700	168,658		168,658	168,658 [154,271]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급증(2019년 9.7조원→2021년 26.2조원으로)하였으며, 2023년에도 26.4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등 배달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반화되었으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고 자체 배송망을 구축하기 어려워 배달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달비 부담이 경영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상품 배송을 위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역시 확대되었음.

정부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경영부담 완화 과제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 2,037억원을 편성하였음.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소액·일회성 지원방식으로 사업성과 및 정책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음.

동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집행을 통한 직접적인 부담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상 성과지표 역시 '수혜대상 지원율', '지급기간 단축 및 만족도 제고' 등 지원 실적과 집행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132].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재정지원이 실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또는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한시사업의 특성상, 지원 종료 이후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투입 대비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음.

---

132) 한편 동 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 성장지원' 내역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정책수혜 소상공인의 생존율'로서, '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을 측정산식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속성장 등 정책목표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달성도를 파악하고 있음.

아울러 개별 수혜자에게 소액의 지원금(연 3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해당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임[133]. 따라서 단기적인 비용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으나, 경영환경 개선이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구조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면밀한 사업설계 부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대상 변경, 집행부진 및 예산 감액이 있었음.

동 사업은 당초 67.9만개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월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지원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2025년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7.6%(집행액은 155억원)에 그치는 등 집행이 크게 부진하였으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수요를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동년 5월 지원대상을 기존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였음. 또한 본예산의 17.2%에 해당하는 350억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하여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최종 지원 실적은 약 53만개사로 당초 목표 대비 78.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133) 21년~23년 외식업체별 연간 배달비 부담 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12,806,556원	12,670,764원	13,348,646원

2025년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월별 집행내역

(단위: 억원)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집행액	50.2	37.6	42.7	183.4	222.3	293.7	212.2	177.9	75.6	47.9	104.3	1,447.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동 사업과 유사하게 2024년 한시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 역시 당초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134]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을 확대[135]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체변경으로 예산을 일부 감액[136]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한시적 소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집행 부진 및 계획변경, 예산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 지원대상 범위, 적정 지원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134) 24.9.25. 기준 지원금 1,194억원 집행(당초 계획액 2,520억원 대비 47.4%)

135)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내역

구분	당초(24. 2.)	1차 변경(24. 7.)	2차 변경(24. 9.)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이하

136)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자체변경 내역

구분 (날짜)	내역사업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13,286	'24년 폐업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원
('24.10.29)	희망리턴패키지	13,286	스톱폐업지원 부족분 증액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한 한시적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시행 이전에 지원대상과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사업대상 변경 및 예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한시적 소액 지원사업은 단기적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성과지표 고도화, 사후평가 실시, 투입비용 대비 정책효과 분석 등 재정 효율성과 정책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공인특화지원’(2015~, 보조)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스마트기술 보급 등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계획액은 1,198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183억 9,400만원, 불용액은 14억 7,600만원임. 동 사업은 ‘판로개척 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역소공인육성’, ‘스마트제조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사업수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임.

2025년도 소공인특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공인특화지원	119,870	-	-	119,870	119,870 [118,394]	-	-	135,261
판로개척 지원	7,650	-	-	7,650	7,650 [7,647]	-	-	6,694
클린제조환경 조성	8,400	-	-	8,400	8,400 [8,397]	-	-	12,600
지역소공인육성	15,620	-	-	15,620	15,620 [14,276]	-	-	17,967
스마트제조지원	88,200	-	-	88,200	88,200 [88,074]	-	-	98,000

□ 검토의견

(1)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보조금 교부 관리 개선 필요

‘지역소공인육성’ 내역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육 및 컨설팅,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특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집적지구 내 기획·디자인·제품개발·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내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기존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 3억 2,000만원과 신규 센터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실집행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2,320	2,330	4,650	3,308	1,322	21
- 민간경상보조(320-01)	320	-	320	32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00	2,330	4,330	2,988	1,322	2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의 계획현액은 2023년에 선정된 지자체(전북 부안군, 강원 원주시)의 구축 지연에 따른 재이월액 15억 6,600만원 및 이월액 7억 6,400만원과 2025년도 신규 구축 예산 2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해당 이월 재원은 전북 부안군과 강원 원주시의 센터가 완공됨[137]에 따라 23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반면, 2025년 신규로 선정된 경북 경산시와 전남 무안군 구축 예산 20억원은 6억 7,800만원만 집행(집행률 33.9%)되고 나머지 13억 2,2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 신규 선정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전연도 이월액	실집행액 (6월말)
경북 경산시	1,000	1,000	660	340	-	340	236
전남 무안군	1,000	1,000	18	982	-	982	150
합계	2,000	2,000	678	1,322	-	1,322	386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지확보, 설계용역, 건축으로 이어지는 공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개편(1차년도 40%, 2차년도 60%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지역의 기본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공모제[138]를 도입하였음.

---

137) 전북 부안군: 2026.12. 개소예정
강원 원주시: 2025.12. 개소

138)(개정전) 공고(5월) → 선정(9월)
(개정후) 예비공모(전년도) → 본공고(1월) → 선정(4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 개요

○ (추진목적)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청지역(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건 사전검토 및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 확인

* 사업신청 기본요건 : ①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권원 확보, ② 대응자금 재원 마련 ③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지역

※ 요건검토 결과 '부적합'판정시 본공모 전 보완할 경우, 본공모 참여 가능단,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

○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자격요건)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이상(업체 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2025년 신규 선정된 전남 무안군의 경우, 1차년도 예산 10억원 중 실집행액은 1,800만원(실집행률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억 8,200만원은 이월되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공모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재정투자심사 및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선정 이후 건축기획·심의 및 설계공모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수반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현재 예비공모 단계에서 검토하는 요건으로는 '사업부지 권원 확보', '대응자금 재원 마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지역' 등이 있음. 복합지원센터 구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부지 확보 이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139]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그러나 현행 예비공모 검토 요건은 부지 확보 및 재원 마련 등 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

13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 및 선정 단계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재정투자심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 2025년도 신규 선정 지자체의 1차 교부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하반기 2차 교부를 통해 잔여 예산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140]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당초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보조금 교부

14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025년 신규 선정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5		
	교부일자	교부액	최종 집행액[141]
경북 경산	(1차)'25.05.08	(1차) 700	660
	(2차)'25.10.14	(2차) 300	
전남 무안	(1차)'25.05.08	(1차) 700	18
	(2차)'25.10.14	(2차) 3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교부액의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년 10월에 2차로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이는 교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고려해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보조금 교부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41) 2차 교부 전 실집행액(25.9.30.기준): 경북 경산은 집행액 없음, 전남 무안은 18백만원임.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재기지원’(2015~, 보조)은 신속한 폐업 및 재기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은 3,604억 5,500만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3,530억 2,100만원임. 동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5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60,455	-	360,455	360,455 [353,021]	-	-	305,550
희망리턴패키지	245,010	311,492	-	311,492	311,492 [311,392)	-	-	305,5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4,827	14,827	-	14,827	14,827 [11,679]	-	-	15,312
손실보상 한시지원	10,400	20,400	-	20,400	20,400 [20,400]	-	-	8,80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4,569	6,613	-	6,613	6,613 [6,560]	-	-	4,569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7,123	-	7,123	7,123 [2,990]	-	-	12,418

□ 검토의견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간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에서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원스톱폐업지원, ② 특화취업지원, ③ 재기사업화지원 등 3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희망리턴 패키지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사업내용
원스톱폐업지원	133,200	192,745	192,745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폐업 및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10,800	10,800	10,800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컨설팅 지원
-점포철거비지원	120,000	179,545	179,545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3.3㎡당 20만원, 최대 400~600만원)
-법률자문	900	900	900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1,500	1,500	1,500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특화취업지원	38,060	39,645	39,545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구직활동 및 심리회복을 지원
재기사업화지원	73,750	79,102	79,102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채창업을 위해 진단,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합계	**245,010**	**311,492**	**311,39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은 1,513억 원이었으나,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61.9% 증액된 2,4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1·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규모가 추가로 확대되었음.

2025년 본예산	2025년 수정
산출내역	산출내역
○ **희망리턴패키지 : 245,010백만원** 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 지원(133,200백만원) ① 사업정리컨설팅 : 12,000건×0.9백만원 ② 점포철거비지원 : 30,000건×4백만원 ③ 법률자문 : 1,500건×0.6백만원 ④ 채무조정 : 750건×2백만원 나, [특화취업지원]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38,060백만원) ① 취업교육 : 10,400건×2.5백만원 ② 전직장려수당 8,000건×1백만원 ③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건×1.2백만원 ④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00백만원 다.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진단 확대 및 사업화 기본교육,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73,750백만원) ① 경영진단 : 5,000건×1.25백만원 ② 사업화교육 : 6,000건×1.25백만원 ③ 사업화지원 : 2,5000건×20백만원 ④ 사업화PM지원 : 2,500건×4백만	○ **희망리턴패키지 : 311,492백만원** 가. [원스톱폐업지원] : 133,200백만원 + (1회추경) 42,451백만원 + (2회추경) 17,094백만원 ① 사업정리컨설팅 : 12,000건×0.9백만원 ② 점포철거비지원 : 30,000건×4백만원 + (1회추경) 10,613건×4백만원 = 42,451백만원(순증) + (2회추경) 40,613건 중 8,547건×추가2백만원 = 17,094백만원(순증) ③ 법률자문 : 1,500건×0.6백만원 ④ 채무조정 : 750건×2백만원 나, [특화취업지원] : 38,060백만원 · 취업교육 : 10,400건×2.5백만원 · 전직장려수당 8,000건×1백만원 ·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건×1.2백만원 ·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00백만원 다. [재기사업화지원] : 73,750백만원+(1회추경) 6,937백만원 ① 경영진단 : 5,000건×1.25백만원 + (1회추경) 500건×1.25백만원 = 625백만원(순증) ② 사업화교육 : 6,000건×1.25백만원 + (1회추경) 250건×1.25백만원 = 312백만원(순증) ③ 사업화지원 : 2,500건×20백만원 + (1회추경) 250건×20백만원 = 5,000백만원(순증) ④ 사업화PM지원 : 2,500건×4백만원 + (1회추경) 250건×4백만원 = 1,000백만원(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주요 확대 내용은 원스톱폐업지원 내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지원 건수가 기존 계획 대비 1만 건 이상 확대(계획 30,000건→변경 40,613건)되었으며[142], 이 중 약 9천 건에 대해서는 건당 지원금액 상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각자 처한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143]되어 있음.

다만, 동 사업의 목적[144]이 폐업(예정)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 등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 운영체계는 개별 지원사업 간 연계와 재기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원스톱폐업지원 내내역사업 내에는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등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142) 한편, 2025년 점포철거비 최종 수혜 인원은 50,952명임.

143)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항(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구분	내용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지원
특화취업지원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재창업 진단 / 사업화 사전교육 / 재기 실전교육 / 재기 사업화 / 일반 재창업 교육

144)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대상 및 사업목적(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구분	내용
사업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사업목적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를 제공하는 ‘사업정리컨설팅’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업정리컨설팅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점포철거비만 단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최근 5년간 점포철거비 지원 수혜자 중 사전 컨설팅 인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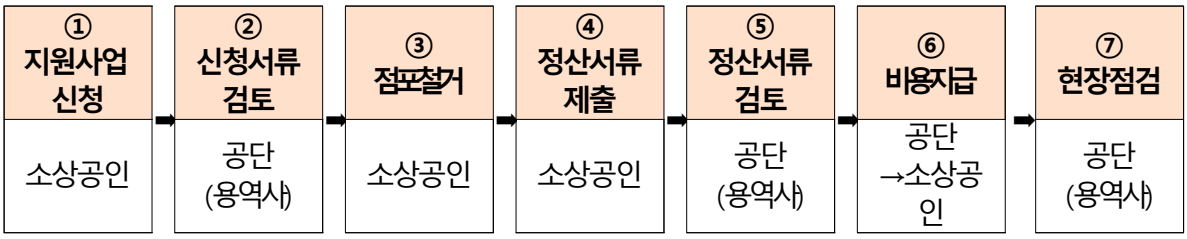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점포철거비 수혜자(A)	15,679	16,323	22,404	29,529	50,952
사전 컨설팅 인원(B)	5,974	6,074	10,929	13,434	20,820
컨설팅을 통한 점포철거비 수혜자 비율(B/A)	38.1	37.2	48.8	45.5	4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검토[145] → 철거진행 → 정산서류 제출·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비용지급이 완료되면 지원이 종결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재기전략 수립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45)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에 ‘신청서류 검토’ 단계가 존재하나, 이는 임대차계약서 대조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존재 여부 및 신청인과 점포 계약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적 자격 요건 심사에 한정되어 있음.

점포철거비 사업 지원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점포철거비 지원 등 폐업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특화취업지원 또는 재기사업화지원 등 후속 지원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로서는 후속 지원 참여가 폐업지원 수혜자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폐업 직후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재기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후속 사업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은 폐업지원 및 후속 사업 간 신청 및 지원절차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 생존율을 높이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146].

14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2024. 10, pp.456~458.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147]에 따르면,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유로 ‘폐업 이후 대안이 없어서’(51.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또한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이후 재기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속 지원사업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기 지원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별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성과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7) 중소기업중앙회,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 3.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 부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내역사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p 이자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경영애로를 겪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을 지원하여 원금상환부담 완화
사업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등)[148]
사업규모	○ 71억 2,300만원 * 신청차주 13.2만개사 가정, 대출잔액 1조 4,246억원 × 1%p × 0.5년
지원대상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매출감소, 중·저신용자 등)를 겪는 자
지원내용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최대 7년 장기 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 지원 * (분할상환기간) 대출 가중평균잔여 상환기간 + 7년(84회) ** (금리) 기존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금리감면 효과)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신청 가능 여부확인** → **경영애로 심사(비대면)** → **정상화가능성 심사(대면·비대면)** ■ 정책자금 누리집 * (취약자)센터방문 **공단 본부** ■ 정상상환 또는 30일이하 단기 연체 차주 **공단 본부, 센터** ① 다중채무자 - 공단대출 외 1개이상 기관대출 보유 ② 매출 감소 ③ 중·저신용 ④ 부실징후 **공단 본부, 센터** ■ (5천만원이상, 단기연체자) →대면현장조사 ■ (그 외) →비대면심사 **지역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애로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계획현액은 7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29억 9,000만원이 실집행되고 41억 3,3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41.9%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7,123	2,990	4,1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정상상환 및 연체 30일 이내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로서,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14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50%가 지원

1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9)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기준
매출 감소자	'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신청할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지원 목표는 13만 2,000개사였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예산 세부편성내역

전체 직접대출* 전체차주 60.2만개사, 잔액 7.2조원

① 정상상환 및 연체 30일 이내 차주 49.6만개사, 잔액 5.3조원

② 경영애로 요건인 중·저신용 충족 차주 NCB 839점 이하 비중 53.5% 고려시 차주 26.5만개사, 잔액 2.8조원**

⇒ 신청률 50% 가정 시 차주 13.2만개사, 대출잔액 1.4조원

* 대리대출 채권은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소진공에서 상환여부 결정이 제한

**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 소상공인 中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비중 : 5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 천원)

구분		신청(계좌)	지원(계좌)	집행액
2025	7월	2,342	32	3,273
	8월	6,897	5,534	671,758
	9월	6,330	5,047	605,634
	10월	7,885	5,652	583,594
	11월	6,387	5,121	569,839
	12월	5,015	5,326	556,322
	계	34,856	26,712	2,990,4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2025년 12월 말 기준, 동 사업 지원 신청 차주는 34,856개사이며 이 중 26,712개사에 금리감면 29억 9,042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당초 목표(13.2만개사) 대비 집행 기준 2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사업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지원대상 차주의 50%가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유사 채무조정 사례인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8%), 손실보상 선지급 거치기간 연장(5%) 등의 실제 신청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150]으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한 부분이 있으며,

정상상환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월 상환 부담 감소보다 총이자 납부액 증가를 더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수요 추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집행부진에 대해, 동 사업은 2025년 7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어 제도 인지도가 낮았으며, 금리 감면(△1%p)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총 이자 납부액이 증가하여 정상상환 차주의 신청 유인이 부족하였고, 아울러 당해 연도 미집행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해 차년도로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150)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사 채무조정 사례와 달리 동 사업의 경우 금리감면이 추가되고,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 신청률을 상향하여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되는 것으로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거나, 연내 예산 집행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임.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151]한 것은, 계획변경 당시 수요 추계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15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5. 6., p47.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 정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51) 이월액 41억 3,300만원(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58.1%)
152) 또한, 26년 5월 말 기준, 전년도 이월액 41억 3,300만원 가운데 15억 28만원만 집행되었음.

6.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3~, 보조)은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를 수급·연계하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성과 분석을 지원하며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액은 23억 4,5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2억 9,600만원, 불용액은 4,900만원임.

2025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45	2,345	-	-	-	2,345	2,296	-	49	2,111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질적 성과 개선 필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범하는 등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상권현황 정보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별 점포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및 실시간 정책효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신규로 편성되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53]('23.7.)을 통해 소

---

1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차예산 92억원 및 2차예산 23억원을 투입하여 '23.8.부터 '24.6.까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음. 이후 '24.11.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25.1.2.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지원·상권 정보의 수집·융합·분석·제공을 통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지원

- **(예비 창업자)** 상권·행정동·선택영역별 매출·경쟁점포, 유동·상주·거주인구, 배달 등 전국 단위의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내 가게 실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진단 및 사업 성장에 필요한 분석정보를 시각화 하여 제공
- **(정책지원)**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통계·성과분석 제공

○ **(사업 내용)**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유지관리, 데이터 수급·관리,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대내외 데이터·서비스 개방 등의 업무 수행

□ **추진연혁**

○ **('21.10~'22.3)**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①데이터 수집·활용, ②기반 인프라 구축, ③맞춤형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진행

○ **('22.4)**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23년 구축예산(92억원) 반영

○ **('23.7)**「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

- 국세청 과세정보, 사업체, 인구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 권한 규정

○ **('23.8 ~ '24.11.28)**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상권정보시스템('06년~'24년)을 바탕으로, 준비된 창업 및 지속가능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소상공인365)'으로 확대 개편

○ **('24.11.29~)**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및 유지관리 수행 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시스템 대비 개선사항

	상권정보시스템('06~'23)	빅데이터 플랫폼('24~)
데이터	■ 수집(42종) → 융합·활용(11종) - ❶업소개폐, 일부 인구·매출 정보 * 상가업소, 카드사(매출), 통신사(인구), 교통, 부동산(임대시세), KCB(소득), 국토부(지리정보), 행안부(인허가, 주거정보) 등	■ 수집(64종) → 융합·활용(22종) - ❶업소개폐, 일부 인구·매출 정보 ❷소비, 배달 등 트렌드 정보 * POS(음식 메뉴정보), SNS(관심키워드), 그랜터이터(소비 트렌드), 한국관광공사(관광/축제), 배민(배달정보) 등
서비스	■ (소상공인) 상권분석 제공 - 상권·행정동 기반의 지도기반의 매출·인구 등 **상권분석 정보** 제공 - 11개 분석 모델링을 통한 5종의 **업소별 분석보고서** 제공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보 제공 ❶ 상권분석 정보(고도화) - 상권 분석보고서 서비스 확대(5개->7개) - 분석모델링 확대(11개->25개) - 서비스UI 사용자 관점 전체 개편 ❷ 사업장 경영진단(신규) - 사업장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통해 분석·관심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❸ 트렌드 정보(신규) - 지역 핫플레이스(MZ, 회식상권 등) 정보, 관광/축제, SNS 분석, 소상공인 뉴스 등 ■ 정책 분석·활용 정보(신규) ❶ 실시간 통계·분석 정보 제공 ❷ 정책성과 측정·신규 정책지원
	■ 웹사이트 기반 검색	■ 웹기반 검색+알림톡 정기 제공
인프라	■ 고정형 인프라(IDC센터) - (유연성) 확장난해, 장비 노후(5년 ↑) - (응답속도) 느린 응답속도(9.2초) - (안정성) 낮은 장애대응력(비상주)	■ 확장형 인프라(클라우드) - (유연성) 사용량에 따른 성능·스팩 자동 확장 - (응답속도) 서비스 속도 개선(5초 이내) - (안정성) 다운타임Zero화 및 신속복구(상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기존 상권정보시스템과 비교해 데이터·서비스·인프라 전반에서 고도화가 이루어졌음. 데이터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정보와 사업자별 매출액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하여 데이터 융·복합 체계를 확대하였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권분석 중심에서 나아가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트렌드 분석', '정책정보 AI챗봇' 등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였음.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

라를 전환하여 서비스 확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응답속도를 개선하는 등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였음.

최근 소비자 수요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데이터 기반의 창업 및 경영활동 의사결정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동 플랫폼을 통해 예비창업자는 상권 현황, 유동인구, 업종별 매출 동향, 과밀 점포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과 입지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수요 변화와 지역 상권 특성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및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의 실효적인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5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간 누적 이용건수는 약 844만 건(월평균 70.3만 건)으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의 '23~'24년 2개년 연평균 이용건수 306만 건 대비 약 2.8배 수

준을 기록하였으며, 총 방문자(가입·비가입 포함)는 57만명으로 월평균 4.4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함.

다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성과는 주로 이용건수, 방문자 수 등 플랫폼 이용 규모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어 동 사업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이용 실적 중심의 양적 지표 외에도 플랫폼 활용을 통한 창업 및 입지 선정 활용 여부, 매출·비용 개선 효과, 정책사업 연계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도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지자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등이 있음

상권분석 플랫폼 비교

구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캐시노트 (한국신용데이터)
비용	무료	무료	부분 유료
주요 서비스	경영진단・상권분석 서비스	경영진단・상권분석 서비스	경영진단・상권분석 서비스
특장점	사업장 정보 및 상권분석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장 정보 및 지역상권분석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장 매출 및 비용, 재무 정보 등 맞춤형 제공
세부 내용	1. 사업장 분석 ・내가게 경쟁력 (내가게 매출액, 동종・유사 업종 점포 수 및 평균 매출액) 2. 상권분석 ・생존가능성 및 성장전망 (내 상권 신규 업소 수, 평균 업력, 상권 평균 매출, 유동인구 수 등) ・상권 매출현황, 인기 메뉴, 인기 SNS 키워드 ・유형별 인구 (주거, 직장, 방문 인구) ・상권배달 현황(성별, 연령대별, 요일별), 인기 배달 업종 ・상권 방문 손님 유형 (직업, 생애주기, 소득, 소비 시간대, 소비 요일 등)	1. 사업장 분석 ・내 점포 현황, 입지 및 업종 경쟁력 (업종별 매출수준, 점포 수, 개·폐업 현황, 경쟁점포 분포 등) 2. 상권분석 ・상권 개요 및 변화 추이 (상권 규모, 상권 유형, 개·폐업 현황, 성장성 등) ・매출 분석 (업종별 매출 규모, 매출 증감 추이, 요일·시간대별 매출 현황 등) ・유동인구 분석 (성별·연령별 유동인구, 시간대별·요일별 유동인구 분포 등) ・생활인구 분석 (거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 규모 및 특성) ・집객시설 분석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관공서, 대형시설 등 주요 집객요인)	1. 사업장 분석 ・사업장 역량지수, 매출대비 비용, 매출 건수 및 매출 단가 (내사업장, 업종 지역 평균 비교) ・대출금(연매출 대비 비중) ・카드 매출(요일・시간대별) ・결제 수단별 매출 비중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2. 상권분석 ・상권 역량 지수(상권 및 시도평균) 및 업종 다양성 ・시설환경(아파트, 교육 등) ・사업장 당 평균 면적, 환산 임대료, 매출 불평등 3. 진단 ・휴폐업 및 부도 예측 스코어 ・업종 예상 영업기간 ・내 상권 인기 메뉴(POS 및 배달앱 기준), 뜨는/지는 메뉴, 업종 전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들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상권 현황, 매출 동향, 유동인구, 창업입지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자체 플랫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골목상권 분석에 강점을 보이며, 민간 플랫폼은 금융·결제·사업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권분석 및 경영정보 제공 기능은 이미 다양한 공공·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할 경우 서비스 선택이 분산되고 플랫폼 활용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국 단위 공공데이터의 통합·연계, 정책지원사업 정보의 종합제공, 정책 수혜대상 발굴 및 정책효과 분석 등 중앙정부 플랫폼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자체·민간 플랫폼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홍보·교육 강화 등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플랫폼은 전국 약 613만 개 소상공인 사업체와 예비창업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 수요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기준 순이용자[154]는 약 27만 명, 재방문율[155]은 7.5% 수준으로 정책 수요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

154) '25년 기간 내 이용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중복 제외하여 산정한 인원
155) 재방문자 수 월별 합계 / 전월까지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 월별 합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분석 결과를 실제 창업 및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정책적 효과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인지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활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및 현장 방문 방식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소상공인 지원(융자)(415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당초 예산은 3조 7,700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5,000억 증액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0억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4조 2,200억원임. 2025년 말 기준 4조 1,842억원이 실집행 되었으며 358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4,220,000	-	4,220,000	4,184,200 [4,184,200]	-	35,800	3,362,000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00	1,797,000	-	1,797,000	1,771,764 [1,771,764]	-	25,236	1,220,000
특별경영안정자금	1,600,000	1,665,500	-	1,665,500	1,654,965 [1,654,965]	-	10,535	1,350,000
성장기반자금	850,000	753,100	-	753,100	753,076 [753,076]	-	24	792,000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00	4,400	-	4,400	4,395 [4,395]	-	5	-

□ 검토의견

(1) 소상공인지원(융자) 공통: 연례적 자체변경 지양 및 소요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세부사업은 정책목적별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자금별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해 대규모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음.

2023~2025년 소상공인지원(융자) 자체변경 내역

일자		자체변경 내역	사유
2023	9.27	• 소공인특화자금 △1,700억원 • 스마트자금 +900억원 • 성장촉진자금 +800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1,200억원 • 위기지역지원자금 +250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50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551억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149억원	집행 저조한 예산 감액 등 불용 최소화
	11.27	• 재도전특별자금 △300억원 • 위기지역지원자금 △8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5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33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436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330억원	집행 초과자금의 부족분을 잔여 예산으로 충당
	12.29	• 성장촉진자금 △181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265억원 • 위기지역지원자금 △17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0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103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60억원 • 스마트자금 +70억원 • 성장촉진자금 +47억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8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108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330억원	자금별 잔여 예산 조정
2024	7.30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1,000억원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영
	10.21	• 일반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300억원	티메프 사태 발생으로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일자		자체변경 내역	사유
		• 재도전특별자금 △500억원 • 장애인기업자금 +225억원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66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800억원	
	12.6	• 긴급경영안정자금 △1,050억원 • 대환대출 △2,00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1,050억원 • 저신용자금 추가공급 +2,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이행
2025	9.23	• 일반경영안정자금 +4,37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4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2,800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40억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1,010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880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51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2,090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200억원 • 상생성장지원자금 △940억원	집행부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은 감액하고, 일반경영안정자금, 재해자금 등 지원
	12.29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33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96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3억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5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205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23억원 • 대환대출 △295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1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148억원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90억원 • 상생성장지원자금 △16억원	자금별 잔여 예산 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에는 총 3차례의 자체변경을 통해 소공인특화자금·재도전특별자금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성장촉진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도전특별자금·대환대출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변경하였음.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을 반영하였음에도 이후 자체변경을 통해 4,370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반면,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

로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체변경을 통해 다시 감액하는 등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자체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계획액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
·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00	140,000	-	437,000	1,797,0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220,000	140,000	-	437,000	1,797,000
· 특별경영안정자금	1,600,000	240,000	△50,000	△124,500	1,665,5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600,000	240,000	△50,000	△124,500	1,665,500
· 성장기반자금	850,000	120,000	-	△216,900	753,1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50,000	120,000	-	△216,900	753,100
·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00	-	-	△95,600	4,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00,000	-	-	△95,600	4,400
합 계	**3,770,000**	**500,000**	**△50,000**	**-**	**4,22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반복적인 자체변경은 자금별 수요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재도전특별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 등 일부 자금의 경우 반복적인 자체변경을 통해 대규모 감액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자금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체변경을 통해 수요가 높은 자금에 재원을 추가 배분함으로써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역사업 간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초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편성 취지와 규모를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별 신청현황, 과거 집행실적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체변경을 통한 융통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정책목적·지원대상이 유사한 자금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상생성장지원자금: 면밀한 사업설계 및 수요예측 필요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세부사업 내에 1,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임.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플랫폼사가 추천하는 입점 소상공인 또는 TOPS 프로그램[156] 우수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상생성장지원자금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신청대상	○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56)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사업목적: 탑티어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
-지원내용: 상생협약 체결 민간 플랫폼 선투자시 사업화자금 1:1 매칭 지원
-추진체계: 1단계(기초컨설팅 3,000개사)→2단계(판매촉진 300개사)→3단계(판로확산 30개사)

동 사업의 2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2,000개사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83개사에 44억원만 집행(실집행률 4.4%)되고 956억원은 자체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어 예산 대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융자사업 자금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도 상생성장지원자금 자체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계획액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
·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00	-	-	△95,600	4,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00,000	-	-	△95,600	4,4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상생성장지원자금 집행 내역

'25년 계획액	'25년 집행액
2,000개사x50백만원 = 100,000백만원	83개사x53백만원 = 4,395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5개 플랫폼 선정을 목표로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157]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 플랫폼만 신청하였고, 이 중 1개사

157) 상생협약 플랫폼사 신청자격(자료: 20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 플랫폼사 모집공고문)
□ (자격요건) 입점 소상공인과 상생의지가 있고 재무건전성이 확인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는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2개 플랫폼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원대상을 플랫폼 추천기업 및 TOPS 프로그램 2단계 이상 선정기업[158]으로 한정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였다는 점을 집행부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집행부진은 단순히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예측 및 사업설계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당초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의 정책자금 공급을 전제로 유사 정책자금의 평균 지원금액[159]을 적용하여 약 2,0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참여 플랫폼의 추천 가능 규모나 지원대상의 실제 자금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사 사업 사례를 단순 참고해 역산하여 추계된 것으로 과다 산출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원대상은 플랫폼이 추천한 유망 소상공인 또는 TOPS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우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정책자금 수요자에 비해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나 신청 수요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등 부정정보 등록이 없는 기업
④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⑤ 최근 3년 내 「공정거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없는 기업
⑥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158) 정부와 민간 플랫폼사가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 TOPS 1단계 소상공인(3,000개사) 중, 성과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상위 10% 소상공인(300개사)

159) 온라인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 자금('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평균 지원금액(50백만원) 가정

아울러 TOPS 프로그램 역시 2025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단계 기업(300개사) 선정이 3분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TOPS형 지원대상(2단계 이상 선정기업)은 하반기에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 일정상 제약이 자금 수요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사업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자체변경을 통해 다른 정책자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사업설계 단계에서 지원대상 규모, 실제 자금 수요 및 사업 일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집행 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상생성장지원자금 운용 시 플랫폼 참여요건 및 지원대상 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예산 규모가 실제 정책수요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를 개선[160]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규 융자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실제 자금수요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요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효과와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0)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6년부터 기존 2개 유형(상생형, TOPS형)을 3개 유형(일반형,성장형,도약형)으로 재편하고,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차등화하였다고 설명함.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 규모기준(국제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한국</th><th>일본</th><th>미국</th><th>EU(권고안)</th></tr>
<tr><td rowspan="6">중소기업</td><td>제조업</td><td>매출액
1,800억원~
800억원 이하</td><td rowspan="3">3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td><td>종업원 500~
1,500명 미만</td><td rowspan="6">249명 이하&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총자산 43백만 유로
미만</td></tr>
<tr><td>광업</td><td>매출액 1,000억원
이하</td><td>종업원 500~
1,5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5~
47백만불 미만</td></tr>
<tr><td>건설업</td><td>매출액 1,200억원
이하</td><td>매출액 19~
45백만불 미만</td></tr>
<tr><td>도매업</td><td rowspan="2">매출액 1,200억원
이하</td><td>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td><td>종업원 100~
250명 미만</td></tr>
<tr><td>소매업</td><td>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td><td>종업원 100~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9~
47백만불 미만</td></tr>
<tr><td>서비스업</td><td>매출액
1,000억원~
400억원 이하</td><td>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td><td>매출액 8~
47백만불 미만</td></tr>
<tr><td colspan="2">소기업</td><td>제조업
140억~80억 이하,
운수업 100억 이하,
광업, 건설업, 농업
등 80억 이하,
도·소매업 60억 이하,
기술 서비스업
30억 이하
교육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등</td><td>소규모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20명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명
미만</td><td></td><td>소기업 : 10명~49명 이하
& 매출 또는 총자산
1천만 유로 미만
영세기업 : 9명 이하 &
매출 또는 총자산 2백만
유로 미만</td></tr>
</tabl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 창업·벤처</td><td>○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조특법§6, 지특법§58조의3)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25~100%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년간(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취득세 75%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소득 비과세 (조특법§13)
- 벤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벤투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조특법§16)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100% 소득공제 (조특법§16)
○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3조의2)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td></tr>
<tr><td>□ 경영안정</td><td>○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1억원 한도) (조특법§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table><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tr><td>• 도매업·소매업·의료업(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td><td>•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일반서적 출판업 : 10%</td></tr></table>※ 장수성실기업은 10% 추가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일부(200~600만원) 공제 (조특법§86조의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조특법§96)</td></tr>
<tr><td>□ 연구·인력개발</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25~50% 법인세(소득세) 공제 (조특법§10)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 공제 (조특법§12)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조특법§10조의2)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10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지특법§46)</td></tr>
</table>

구 분	지 원 내 용
□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10% 세액공제(추가공제) (조특법§24)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조특법§25조의5)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104조의24)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고용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공제 (조특법§29조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법인세(소득세) 공제 (조특법§29조의4)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 감면(200만원 한도) (조특법§30) ○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 1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조특법§30조의2)
□ 상생협력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를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4)
□ 가업승계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0년 이상 영위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각 한도) (조특법§30조의6)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600억원 한도) 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12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조특법§30조의6)
□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 (조특법§31, 32) ○ 수도권 밖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조특법§104조의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중소기업현황

○ 기업 수 (2018~2023년)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23)
전체 기업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8,053,163	8,309,696	256,533 (3.2)
- 중소기업	6,638,694	6,888,435	7,286,082	7,713,895	8,042,726	8,298,915	256,189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3.2)
· 소상공인	6,199,980	6,441,928	6,924,292	7,335,397	7,656,718	7,906,861	250,143
(비중)	(93.4)	(93.5)	(95.0)	(95.1)	(95.2)	(95.2)	(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종사자 수 (2018~2023년)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23)
전체 기업	20,591,641	21,543,534	21,935,003	22,865,491	23,410,899	23,767,377	356,478 (1.5)
- 중소기업	17,103,938	17,460,668	17,791,969	18,492,614	18,956,294	19,117,649	161,355
(비중)	(83.1)	(81.0)	(81.1)	(80.9)	(81.0)	(80.4)	(0.9)
· 소상공인	8,969,291	9,763,052	10,018,424	10,461,890	10,740,812	10,899,947	159,135
(비중)	(52.4)	(55.9)	(56.3)	(56.6)	(56.7)	(45.9)	(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업종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A+B+C)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기업 수	8,309,696	7,906,861	8,163,704	135,211	8,298,915	10,781
	(100.0)	(95.2)	(98.2)	(1.6)	(99.9)	(0.1)
제조업	616,664	545,963	598,431	15,265	613,696	2,968
(7.4)*	(100.0)	(88.5)	(97.0)	(2.5)	(99.5)	(0.5)
건설업	597,226	568,013	589,895	6,711	596,606	620
(7.2)*	(100.0)	(95.1)	(98.8)	(1.1)	(99.9)	(0.1)
서비스업	6,794,107	6,500,950	6,676,480	110,847	6,787,327	6,780
(81.8)*	(100.0)	(95.7)	(98.3)	(1.6)	(99.9)	(0.1)
기타	301,699	291,935	298,898	2,388	301,286	413
(3.6)*	(100.0)	(96.8)	(99.1)	(0.8)	(99.9)	(0.1)
종사자 수	23,767,377	10,899,947	14,672,736	4,444,913	19,117,649	4,649,728
	(100.0)	(45.9)	(61.7)	(18.7)	(80.4)	(19.6)
제조업	5,030,155	1,233,705	2,436,522	957,817	3,394,339	1,635,816
(21.2)*	(100.0)	(24.5)	(48.4)	(19.0)	(67.5)	(32.5)
건설업	2,253,570	964,067	1,419,007	487,857	1,906,864	346,706
(9.5)*	(100.0)	(42.8)	(63.0)	(21.6)	(84.6)	(15.4)
서비스업	15,950,501	8,385,324	10,415,212	2,925,925	13,341,137	2,609,364
(67.1)*	(100.0)	(52.6)	(65.3)	(18.3)	(83.6)	(16.4)
기타	533,151	316,851	401,995	73,314	475,309	57,842
(2.2)*	(100.0)	(59.4)	(75.4)	(13.8)	(89.2)	(10.8)

주: 각 업종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종사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국별 중소제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고
한국(Korea)	제조업 전체	8,309,696	23,767	7,359,124	Enterprise
(2023년)	중소기업	8,298,915	19,117	3,301,255	10억원
	%	(99.9)	(80.4)	(44.9)	
일본(Japan)	제조업 전체	3,375,255	47,483	14,376,373	Enterprise
(2021년)	중소기업	3,364,891	33,098	6,801,298	10억엔(億円)
	%	(99.7)	(69.7)	(47.7)	
대만(Taiwan)	제조업 전체	1,693,014	11,528	54,611,411	Enterprise
(2023년)	중소기업	1,674,061	9,167	28,760,346	백만원(百萬元)
	%	(98.9)	(79.5)	(52.7)	
미국(U.S.)	제조업 전체	6,395,635	135,748	-	Firm
(2022년)	중소기업	6,374,594	62,251	-	
	%	(99.7)	(45.9)	-	

주: 1. 한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인이상 기업체 대상이며,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2. 일본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인 이상 300인 미만의 민영·비1차산업 기업체 대상임.
3. 대만의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1억 NT$ 미만 기업체 대상임.
4. 미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 기업체 대상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경영지표분석(제조업)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기자본비율	전체	53.97	55.49	56.50	57.62	57.64	56.73	56.01	56.51	56.86	56.89
	중소기업	39.67	41.55	42.07	42.27	41.46	43.46	43.50	44.40	45.60	49.24
	대 기 업	58.92	60.89	61.92	63.01	63.17	61.91	60.54	60.81	60.88	60.39
부채비율	전체	85.28	80.20	76.99	73.55	73.49	76.27	78.55	76.95	75.87	75.78
	중소기업	152.09	140.65	137.72	136.60	141.17	130.10	129.87	125.21	119.30	103.10
	대 기 업	69.72	64.24	61.51	58.69	58.29	61.53	65.19	64.44	64.27	65.60
차입금의존도	전체	24.92	23.69	22.68	22.28	22.78	23.43	22.61	22.13	22.49	22.34
	중소기업	41.00	38.78	38.60	39.06	39.92	38.48	38.11	37.55	36.52	34.97
	대 기 업	19.84	18.41	17.19	16.71	17.25	17.84	17.13	16.78	17.66	17.85
부가가치율	전체	24.00	25.61	26.53	26.16	24.28	25.58	25.89	23.60	21.79	24.07
	중소기업	26.43	27.24	26.64	27.33	27.05	27.56	26.99	26.55	26.22	18.70
	대 기 업	22.24	24.37	26.11	25.64	22.31	23.87	25.39	22.37	19.40	22.56
총자산증가율	전체	4.04	5.07	6.49	5.13	3.27	5.91	10.38	7.54	6.93	7.22
	중소기업	7.85	7.92	6.49	6.00	6.82	7.43	9.84	7.39	6.07	5.47
	대 기 업	2.63	3.82	6.34	4.71	2.09	4.98	9.55	7.18	7.24	7.56
자기자본증가율	전체	5.94	7.49	8.92	7.38	3.12	5.02	9.03	8.24	7.43	6.31
	중소기업	11.11	10.72	9.20	8.93	8.07	8.84	11.21	8.53	8.33	6.85
	대 기 업	4.33	6.71	8.73	6.61	1.85	3.71	7.95	7.44	7.25	5.86
매출액증가율	전체	-2.82	-0.55	9.01	4.00	-1.72	-2.34	18.10	14.63	-2.27	4.58
	중소기업	3.83	3.01	5.89	2.92	2.89	1.83	13.58	10.82	2.15	3.30
	대 기 업	-5.60	-2.54	9.65	4.57	-3.29	-4.21	19.67	15.76	-3.89	5.36

주: 1. 2015~16년 전체 및 대기업 자료는 갱신되어 이전 발표수치와 다름.
2. 2016년, 2024년 중소기업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이전수치 비교 주의 필요.
자료: 전체 및 대기업 수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수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4. 창업기업 현황

□ 신규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1,135,561
형태	개인	1,291,068	1,203,590	1,140,323	1,083,150	1,037,445
	법인	126,905	113,889	98,294	99,755	98,116
성별	남성	756,441	711,637	673,891	645,855	620,834
	여성	660,616	604,425	562,750	532,357	506,938
	확인불가	916	1,417	1,976	4,693	7,78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전체 창업기업 현황

○ **(기업 수)** '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업력 7년 이하)는 4,902,489개

○ **(매출)** '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매출은 1,134.6조원

○ **(종사자 수)** '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는 8,330,393명

*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조사방식 변경(행정자료&조사확인 자료 → 행정자료, '23.12)에 따라 2021년 이전의 통계와 시계열 분석이 불가

5. 벤처기업 현황

□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증가			감소				증감	연말 (월말)
	신규	재확인	소계	기간 만료	휴폐업	기타 (취소 등)	소계		
1998년	2,049	-	2,049	-	3	4	7	2,042	2,042
1999년	3,676	33	3,709	729	63	25	817	2,892	4,934
2000년	5,532	1,055	6,587	2,601	62	60	2,723	3,864	8,798
2001년	3,914	2,479	6,393	3,489	221	89	3,799	2,594	11,392
2002년	1,672	4,781	6,453	8,419	261	387	9,067	-2,614	8,778
2003년	1,272	2,945	4,217	5,113	145	35	5,293	-1,076	7,702
2004년	1,886	2,718	4,604	4,221	100	18	4,339	265	7,967
2005년	2,823	2,957	5,780	3,935	62	18	4,015	1,765	9,732
2006년	4,127	2,955	7,082	4,467	59	70	4,596	2,486	12,218
2007년	5,286	3,952	9,238	7,274	163	4	7,441	1,797	14,015
2008년	6,276	8,243	14,519	13,123	2	8	13,133	1,386	15,401
2009년	7,762	10,184	17,946	14,351	-	103	14,454	3,492	18,893
2010년	6,899	6,647	13,546	7,776	-	18	7,794	5,752	24,645
2011년	6,369	7,436	13,805	12,238	-	64	12,302	1,503	26,148
2012년	6,574	7,847	14,421	12,340	-	36	12,376	2,045	28,193
2013년	6,326	8,830	15,156	14,097	45	72	14,214	942	29,135
2014년	5,500	9,524	15,024	14,007	1	241	14,249	775	29,910
2015년	6,681	10,096	16,777	15,220	-	207	15,427	1,350	31,260
2016년	6,837	10,084	16,921	14,606	182	33	14,821	2,100	33,360
2017년	7,419	11,298	18,717	16,434	175	186	16,795	1,922	35,282
2018년	6,827	11,587	18,414	16,742	121	13	16,876	1,538	36,820
2019년	6,194	12,870	19,064	18,821	45	10	18,876	188	37,008
2020년	6,992	13,902	20,894	18,310	67	14	18,391	2,503	39,511
2021년	5,910	12,042	17,952	19,127	1	16	19,144	-1,192	38,319
2022년	5,308	12,200	17,508	20,603	48	53	20,704	-3,196	35,123
2023년	5,176	3,540	8,716	3,180	242	336	3,758	4,958	40,081
2024년	4,988	8,403	13,391	14,533	298	425	15,256	-1,865	38,216
2025년	15,551	23,047	38,598	16,621	253	332	17,206	382	38,598
2026.6	15,856	24,228	40,084	4,953	137	129	5,219	1,027	40,08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현황('26.6)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업체수	11,270	1,766	502	1,218	1,412	715	764	1,566	1,356	12,845	1,900	760	1,000	971	1,508	294	237	40,084
비율(%)	28.1	4.4	1.3	3.0	3.5	1.8	1.9	3.9	3.4	32.0	4.7	1.9	2.5	2.4	3.8	0.7	0.6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현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6
벤처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35,123	40,081	38,216	38,598	40,084
Inno-biz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21,392	22,383	22,902	23,304	23,477
Main-biz	17,558	14,867	12,606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21,659	22,892	23,973	25,449	26,546
계	**60,650**	**60,358**	**58,821**	**58,789**	**62,630**	**65,909**	**68,603**	**71,646**	**73,370**	**77,509**	**78,837**	**78,174**	**85,356**	**85,091**	**87,351**	**90,107**
중복업체 (중복률)	14,348 (23.7)	13,216 (21.9)	11,485 (19.5)	11,841 (20.1)	11,897 (19.0)	12,195 (18.5)	12,042 (17.6)	12,448 (17.4)	12,786 (17.4)	14,156 (18.2)	15,403 (19.5)	16,294 (20.8)	18,245 (21.4)	14,511 (17.1)	14,088 (16.1)	13,895 (15.4)
합계 (중복제외)	**46,302**	**47,142**	**47,336**	**46,948**	**50,733**	**53,714**	**56,561**	**59,198**	**60,584**	**63,353**	**63,434**	**61,880**	**67,111**	**67,276**	**69,771**	**72,548**

주: 1. 중복현황('26.6) : 벤처+이노(10,761), 벤처+메인(5,095), 이노+메인(5,367), 벤처+이노+메인(3,664)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06.7월부터 시행
3.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을 일부 미반영

□ 업종별 현황 ('26.6월말 기준)

○ 총 괄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50,876	11,604	1,969	5,116	8,918	230	11,394	90,107
비율	56.5	12.8	2.2	5.7	9.9	0.3	12.6	100

주: 기타(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22,012	8,827	1,616	1,086	1,872	182	4,489	40,084
비율	54.9	22.0	4.0	2.7	4.7	0.5	11.2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15,383	2,777	-	752	1,729	48	2,788	23,477
비율	65.5	11.8	-	3.2	7.4	0.2	11.9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계
업체수	13,481	-	353	3,278	5,317	-	4,117	26,546
비율	50.8	-	1.3	12.3	20.1	-	15.5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 수

○ 전 기업 수의 95.2%(760만개), 종사자 수의 45.9%(1,090만명)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기업체	8,309,696	7,906,861	95.2	8,163,704	98.2	135,211	1.6	8,298,915	99.9
종사자	23,767,377	10,899,947	45.9	14,672,736	61.7	4,444,913	18.7	19,117,649	8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3

□ 업종별 분포

○ 도·소매업(26.7%)과 음식·숙박업(10.7%)이 약 37.4% 차지

(단위: 개, 명, %)

구분	기업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全) 산업	7,906,861	100.0	10,899,947	137.9
도·소매업	2,107,254	26.7	2,772,237	35.1
부동산업	1,220,793	15.4	1,321,895	16.7
음식·숙박업	846,531	10.7	1,343,692	17.0
운수·창고업	674,147	8.5	755,357	9.6
제조업	545,963	6.9	1,233,705	15.6
건설업	568,013	7.2	964,067	12.2
기타	1,944,160	24.6	2,508,994	31.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3

□ 업종별 기업규모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전산업		8,309,696 (100.0)	7,906,861 (95.2)	256,843 (3.1)	135,211 (1.6)	8,298,915 (99.9)	10,781 (0.1)
A	농업,임업 및 어업	117,194 (100.0)	112,291 (95.8)	4,470 (3.8)	366 (0.3)	117,127 (99.9)	67 (0.1)
B	광업	2,413 (100.0)	2,152 (89.2)	144 (6.0)	104 (4.3)	2,400 (99.5)	13 (0.5)
C	제조업	616,664 (100.0)	545,963 (88.5)	52,468 (8.5)	15,265 (2.5)	613,696 (99.5)	2,968 (0.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8,319 (100.0)	167,805 (99.7)	241 (0.1)	60 (0.0)	168,106 (99.9)	213 (0.1)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773 (100.0)	9,687 (70.3)	2,108 (15.3)	1,858 (13.5)	13,653 (99.1)	120 (0.9)
F	건설업	597,226 (100.0)	568,013 (95.1)	21,882 (3.7)	6,711 (1.1)	596,606 (99.9)	620 (0.1)
G	도매 및 소매업	2,200,504 (100.0)	2,107,254 (95.8)	51,819 (2.4)	39,739 (1.8)	2,198,812 (99.9)	1,692 (0.1)
H	운수 및 창고업	682,725 (100.0)	674,147 (98.7)	5,520 (0.8)	2,579 (0.4)	682,246 (99.9)	479 (0.1)
I	숙박 및 음식점업	894,060 (100.0)	846,531 (94.7)	31,037 (3.5)	16,328 (1.8)	893,896 (100.0)	164 (0.0)
J	정보통신업	218,040 (100.0)	198,332 (91.0)	15,316 (7.0)	3,500 (1.6)	217,148 (99.6)	892 (0.4)
K	금융 및 보험업	62,887 (100.0)	58,982 (93.8)	2,030 (3.2)	1035 (1.6)	62,047 (98.7)	840 (1.3)
L	부동산업	1,234,323 (100.0)	1,220,793 (98.9)	6,437 (0.5)	5,750 (0.5)	1,232,980 (99.9)	1,343 (0.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34,373 (100.0)	301,072 (90.0)	26,068 (7.8)	6,638 (2.0)	333,778 (99.8)	595 (0.2)
N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4,151 (100.0)	175,694 (90.5)	13,093 (6.7)	4,873 (2.5)	193,660 (99.7)	491 (0.3)
P	교육서비스	286,153 (100.0)	278,646 (97.4)	4,226 (1.5)	3,214 (1.1)	286,086 (100.0)	67 (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81 (100.0)	53,870 (62.0)	12,075 (13.9)	20,910 (24.1)	86,855 (100.0)	26 (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4,925 (100.0)	161,040 (97.6)	2,991 (1.8)	748 (0.5)	164,779 (99.9)	146 (0.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5,085 (100.0)	424,589 (97.6)	4,918 (1.1)	5,533 (1.3)	435,040 (100.0)	45 (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3

8. 전통시장 현황

□ 전국 1,403개 시장, 22.4만개 점포, 상인 19.4만명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자료('24)

○ 연도별 현황 : ('19) 1,413개→('20) 1,401개→('21) 1,408개→
('22) 1,388개→('23) 1,393개→('24) 1,403개

○ 점포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점
			빈점포	기타 점포 (창고, 사무실 등)	
점포 수	224,437 (100.0)	168,334 (75.0)	24,247 (10.8)	5,433 (2.4)	26,423 (1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상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점포상인	노점상인
상인 수	194,757 (100.0)	168,334 (86.4)	26,423 (1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별 매출액

(단위: 조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매출액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28.7	3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6.6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55,800	38.1	1,245,939	5,406	230
신성장기반자금	1,081,110	23.4	754,068	1,088	69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16,378	9.0	324,580	1,447	224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00	10.8	365,200	1,870	195
재도약지원자금	662,500	14.4	354,095	1,091	325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98,500	4.3	135,190	465	291
합계	4,614,288	100.0	3,179,071	11,367	2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신용	담보	시설	운전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008,811	237,128	829,848	416,091	443,776	802,163	1,245,939
신성장기반자금	414,852	339,216	279,991	474,077	560,880	193,188	754,06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24,580	-	324,580	-	4,775	319,805	324,580
긴급경영안정자금	365,200	-	365,200	-	-	365,200	365,200
재도약지원자금	289,599	64,496	252,220	101,875	120,255	233,840	354,095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35,190	-	135,190	-	-	135,190	135,190
합계	2,538,231	640,840	2,187,028	992,043	1,129,686	2,049,386	3,179,0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2,193	300,344	287,922	291,383	67,773	47,848	36,569	51,907	1,245,939
신성장기반자금	20,860	32,244	15,487	20,178	104,697	218,944	117,169	224,488	754,06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6,010	27,845	26,190	23,360	45,030	67,940	43,385	84,820	324,580
긴급경영안정자금	1,300	6,880	13,790	14,850	63,689	90,170	53,910	120,611	365,200
재도약지원자금	7,825	27,060	39,564	28,290	40,341	52,238	49,960	108,817	354,095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1,341	7,396	11,262	18,489	23,606	17,604	55,492	135,190
합계	198,188	395,714	390,349	389,323	340,019	500,746	318,597	646,135	3,179,0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6,576	82,280	55,116	63,843	44,419	33,104	32,730	292,413	32,033
신성장기반자금	101,025	55,396	38,274	25,065	28,212	17,190	16,098	175,967	14,174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2,575	22,800	12,100	16,250	11,450	6,660	8,385	80,890	11,700
긴급경영안정자금	34,620	24,750	18,000	15,900	13,500	7,700	11,050	73,600	14,600
재도약지원자금	40,508	29,000	16,387	12,275	9,700	12,037	11,850	72,896	15,079
밸류체인안정화자금	9,091	5,904	4,865	1,010	532	1,558	2,337	25,129	523
합계	384,394	220,131	144,743	134,343	107,813	78,249	82,451	720,896	88,109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56,531	63,651	44,306	42,932	95,037	133,138	11,874	5,956	1,245,939
신성장기반자금	40,455	26,954	30,792	31,959	72,900	69,130	6,750	3,726	754,06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4,550	15,160	12,660	11,550	20,980	32,480	2,500	1,890	324,580
긴급경영안정자금	17,760	18,050	15,580	18,610	31,150	46,230	2,900	1,200	365,200
재도약지원자금	14,477	15,695	14,215	11,765	26,082	47,019	2,310	2,800	354,095
밸류체인안정화자금	4,540	11,725	4,496	16,279	24,478	21,604	-	1,118	135,190
합계	148,313	151,235	122,048	133,094	270,627	349,601	26,334	16,690	3,179,0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총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424,823	285,200	286,857	193,936	45,723	9,400	-	1,245,939
신성장기반자금	75,159	104,089	175,874	251,889	86,318	51,275	9,464	754,06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72,015	58,590	70,885	76,240	30,660	14,290	1,900	324,580
긴급경영안정자금	62,960	79,974	97,526	83,940	27,050	13,750	-	365,200
재도약지원자금	43,732	45,270	81,304	103,109	60,751	19,779	150	354,095
밸류체인안정화자금	75,096	9,509	8,574	14,748	18,915	8,077	272	135,190
합계	753,784	582,632	721,020	723,862	269,416	116,570	11,786	3,179,0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공급 목표	공급 비중	공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	이차보전 예산	집행 예산
신성장기반자금	204,000	55.6	173,440	398	436	26,135	6,87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63,000	44.4	141,330	317	446	18,585	4,812
혁신창업사업화	-	-	-	-	-	11,164	2,399
합계	367,000	100.0	314,770	715	440	55,884	14,0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	800	3,300	3,150	13,100	47,700	34,350	71,040	173,44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800	2,850	4,650	7,500	12,450	28,970	15,500	68,610	141,330
합계	800	3,650	7,950	10,650	25,550	76,670	49,850	139,650	314,7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신성장기반자금	17,750	11,990	7,540	8,300	4,650	4,900	5,000	39,310	6,5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1,800	10,000	7,100	7,300	4,300	1,800	3,300	31,030	2,500
합계	39,550	21,990	14,640	15,600	8,950	6,700	8,300	70,340	9,000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8,300	8,900	7,100	9,200	13,400	18,100	1,500	1,000	173,44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7,100	9,400	4,050	5,300	10,300	14,450	1,400	200	141,330
합계	15,400	18,300	11,150	14,500	23,700	32,550	2,900	1,200	314,7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총합계
신성장기반자금	9,990	21,350	45,240	66,560	23,800	5,500	1,000	173,44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9,000	18,700	39,760	48,720	17,650	7,500	-	141,330
합계	18,990	40,050	85,000	115,280	41,450	13,000	1,000	314,7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억원)

변경 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사유
		변경전	증감	변경후	
'25.5.1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융자)	-	1,000	1,000	美 품목관세 조치에 따른 한시적 긴급자금 신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글로벌화)	1,825	1,000	2,825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	3,000	5,500	환율·보호무역 피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25.7.4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13,358	2,000	15,358	초격차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재도약촉진 (지역주도형AI대전환)	-	350	350	지역 특성에 맞는 AX 전환 촉진 및 지역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	3,000	8,000	AI 등 딥테크 분야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목적 모태펀드 출자
'25.12.18	기금운영비 (중진기금기본경비)	270	7	277	추가 융자집행을 위한 평가경비 및 채권발행 수수료 등 증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6년 6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성장기반자금	792,000	21.5	521,010	10,331	50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00	33.1	794,940	21,656	37
특별경영안정자금	1,670,000	45.4	989,886	34,938	28
합계	3,682,000	100	2,305,836	66,926	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직대		대리		합계
			시설	운전	보증서	신용/담보	
성장기반자금	410,319	110,691	-	410,319	76,791	33,900	521,010
일반경영안정자금	-	794,940	-	-	728,269	66,671	794,940
특별경영안정자금	565,244	424,642	-	565,244	240,819	183,823	989,886
합계	975,563	1,330,273	-	975,563	1,045,879	284,394	2,305,8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54,740	50,239	47,811	23,918	25,975	142,268	104,494	71,566	521,010
일반경영안정자금	116529	100189	59561	49764	49614	186760	126728	105796	794940
특별경영안정자금	79,153	67,708	181,153	33906	30,404	327,806	156,503	113,253	989,886
합계	250,422	218,136	288,525	107,588	105,993	656,834	387,725	290,615	2,305,8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성장기반자금	53,049	48,302	31,936	21,432	25,352	8,708	8,310	140,928	29,181
일반경영안정자금	28,258	28,588	45,510	28,341	35,771	6,715	9,255	315,930	29,145
특별경영안정자금	113,070	65,546	47,879	53,477	34,717	22,716	16,458	301,229	36,595
합계	194,377	142,435	125,325	103,249	95,840	38,139	34,023	758,087	94,92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성장기반자금	16,986	16,735	17,531	20,698	26,321	37,734	11,939	5,868	521,010
일반경영안정자금	28,766	27,289	57,553	44,010	30,332	55,084	8,907	15,486	794,940
특별경영안정자금	31,682	44,770	41,035	44,436	42,442	64,245	20,134	9,455	989,886
합계	77,434	88,794	116,119	109,144	99,095	157,063	40,980	30,810	2,305,8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5인 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493,550	26,418	952	90	-	-	-	521,010
일반경영안정자금	790,803	3,857	280	-	-	-	-	794,940
특별경영안정자금	983,107	6,205	574	-	-	-	-	989,886
합계	2,267,460	36,480	1,806	90	-	-	-	2,305,8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변경 시기	정책자금명	예산			사유
		변경전	증감	변경후	
'25.9.23.	일반경영안정자금	13,600	+4,370	17,970	집행부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은 감액하고, 일반경영안정자금, 재해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000	+480	1,48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3,500	△2,800	700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	+140	640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7,400	+1,010	8,410	
	재도전특별자금	2,000	△880	1,120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510	2,010	
	소공인특화자금	4,500	△2,090	2,410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	+200	5,000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	△940	60	
'25.12.29.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480	+330	1,810	자금별 잔여예산 조정을 위해 변경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700	+96	796	
	장애인기업지원자금	640	△13	627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8,410	△5	8,405	
	재도전특별자금	1,120	+205	1,325	
	청년고용연계자금	2,010	△23	1,987	
	대환대출	2,000	△295	1,705	
	소공인특화자금	2,410	△41	2,369	
	혁신성장촉진자금	5,000	△148	4,852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400	△90	310	
	상생성장지원자금	60	△16	44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2026.5월말 기준)

구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립시기		'96.3～'21.11	'76.6	'89.4
보증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수출 중소기업 등	혁신형기업
보증한도		8억원	30억원	30억원
건별 보증금액		0.23억원	2.98억원	2.23억원
점유율	금액	32.7%(45.3조)	45.3%(62.8조)	22.1%(30.6조)
	건수	85.0%(198.1만건)	9.1%(21.1만건)	5.9%(13.7만건)

* 지역신보 : 일반보증 기준 (햇살론 제외)　　** 신보·기보 : 일반보증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